

해외농업시리즈 9: 중국농업 2

중국의 농산물 무역정책과 수출입제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농업 시리즈는 한·중 FTA 협상이 개시된 상황에서 중국 농업에 대한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그동안 연구원이 발행한 중국농업 관련 보고서의 내용을 주제별로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중국 정부의 농업·농촌 정책 관련 주요 문건 및 자료도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2012년 중국농업시리즈는 중국의 농산물 수급과 교역 동향, 농산물 무역 정책과 제도, 농업구조(생산·경영·유통구조), 농식품 안전관리체계, 주요 농업·농촌정책과 관련된 주제를 중심으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내용 문의: 전형진 연구위원 02-3299-4324 hjchon@krei.re.kr

목 차

1. 농산물 무역정책의 변화	1
1.1. WTO 가입 이전	1
1.2. WTO 가입과 주요 정책 변화	3
1.3. FTA 정책 방향과 추진 현황	16
2. 농산물 수출정책 개요	20
2.1. ‘농산물수출 11·5 계획’	20
2.2. ‘농업무역촉진규획(2011~2020년)’	26
2.3. 주요 농산물수출 지원정책	27
3. 농산물 수출입 관리제도	29
3.1. 법률 및 행정체계	29
3.2. 수출입 제한 화물의 관리제도	30
3.3. 자동수입허가 관리제도	41
4. 관세 및 통관제도	43
4.1. 법률 및 행정체계	43
4.2. 관세제도 개요	46
4.3. 통관제도 및 절차	56
5. 수출입 농산물 검사검역제도	58
5.1. 법률 및 행정체계	58
5.2. 수출입 농식품 검사검역 절차 개요	61
6. 시사점	68

부록 1. 대외무역법	71
부록 2. 화물수출입관리조례	87
부록 3. 수출입관세조례	102
부록 4. 전국농업무역촉진규획(2011~2020년)	121
부록 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행 중국농업 관련 연구보고서 목록	135

표 목 차

표 1.	중국의 WTO 가입 시 상품분야 주요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평가 결과	4
표 2.	중국의 대외무역 주체에 관한 규정의 변화	6
표 3.	1994년 구 「대외무역법」과 2004년 개정 「대외무역법」의 비교	7
표 4.	WTO 가입의정서 부속서 2A에 명시된 국영무역 상품 목록	12
표 5.	중국의 FTA 추진 현황	18
표 6.	중국의 농산물 수출 목표 및 계획(2006~2010년)	22
표 7.	중국의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주요 정책 조치	24
표 8.	중국의 주요 농산물수출 지원정책 개요	28
표 9.	[화물수출입관리조례]의 구성	30
표 10.	2012년도 농산물 수입관세할당 내역	34
표 11.	2012년도 수출쿼터 품목 및 쿼터량	35
표 12.	2012년도 수출허가증 관리품목	39
표 13.	2012년도 변경소액무역 수출허가증 관리품목	41
표 14.	2010년도 자동수입허가 관리품목	42
표 15.	중국의 수입관세율 종류와 적용범위	48
표 16.	중국 농업부의 수출입 농산물 HS코드 분류체계	51
표 17.	중국의 농산물 수입관세율 구간별 분포	52
표 18.	중국의 농산물 품목군별 평균 수입관세율	53
표 19.	중국의 수입통관 절차	56
표 20.	중국의 수출입식품 검사검역관련 주요 법령	58
표 21.	중국의 출입국 검사검역관리 기관 및 업무	59
표 22.	수출입 식품 검사검역의 주요 절차	63
표 23.	수입동물의 검사검역 주요 절차	64
표 24.	수출 동물의 검사검역 주요 절차	65
표 25.	수입 육류 및 육류제품의 검사검역 절차	66

그림 목 차

그림 1. 중국의 농산물 품목군별(HS-2단위) 평균 수입관세율 비교	55
그림 2. 중국의 수출입 식품 검사·검역 절차	62

1. 농산물 무역정책의 변화

1.1. WTO 가입 이전

□ 계획관리 체제하 점진적 대외개방 단계(1979~1991년)

- 개혁개방 이전 중국의 농산물 무역은 엄격한 계획관리 체제하에 국영무역 기업이 독점하였음.
 - 특정 농산물의 수입량은 국내 수요과 공급 간 차이, 수출량은 수입을 위한 자금 수요에 근거하여 결정되었음.

- 중국은 1978년부터 시작된 경제 개혁·개방 과정에서 대외무역제도를 일률적인 지령성(지도성) 계획관리 체제에서 지령성 계획과 시장메커니즘이 상호 결합한 쌍층(雙層)관리체제로 전환하고 점차 시장화 개혁을 추진하였음.

- 주요 개혁 조치
 - 대외무역업 허가제 확립 및 수출입허가증제도 실시: 1982년 129종의 수입허가증 관리 품목을 발표하고, 이외 품목은 수입을 개방. 이중 신선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품은 각각 64종과 10종으로 각각 전체 수입허가증 관리 품목의 19.6%와 7.8%를 차지
 - 대외무역업의 도급경영책임제 실시: 국가에서 가격, 이윤, 세금 환급 및

- 수출신용대출 등 경제수단을 활용하여 대외무역 관리
- 농산물수출 직접보조정책 폐지 선언(1991.1월)

□ 대외개방 촉진 단계(1992~2001년)

- 중국은 WTO 가입을 목표로 대외무역 관리체제의 시장화 개혁을 추진하여 대외무역 관리 방식과 수단을 점차 WTO 규정과 관례에 맞게 조정하는데 주력하였음.
 - 대외무역체제의 개혁은 정책의 통일성 확보, 대외무역권의 개방, 공정경쟁체제 구축, 독립채산제 실시, 대외대리무역제도의 실시에 중점

- 주요 개혁 조치
 - 국가관리하의 변동환율제 실시(1994.1)
 - 수입관세율 대폭 인하: 1992~1997년 동안 4차례에 걸쳐 수입관세율을 대폭 인하하여 농산물의 평균 수입관세율이 1992년 51%에서 2001년 21%로 하향 조정.
 - 수출입 물량 제한 축소: 식용유 등 일부 품목을 수입쿼터관리 대상 품목에서 제외(1995.12월). 일부 농산물의 수출쿼터 입찰제도 실시
 - [밀수입 농산물 처리방법](1997.5.31) 제정을 계기로 농산물 밀수 행위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등 농산물 수출입 절차의 규범화 추진
 - 유전자변형(GMO) 농산물의 생산허가증 등록 및 표시제도 확립, 수출입 동식물 위생검사검역제도 구축
 - 도급경영책임제 폐지 및 대외무역기업 다원화, 수출세 환급제도 완비,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 수출보조 폐지 등

1.2. WTO 가입과 주요 정책변화

□ 개요

- 중국은 15년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01년 12월 WTO에 정식 가입하였으며¹⁾ WTO 가입 시 양허한 가입의정서(Protocol on the Access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²⁾를 준수할 의무가 부여되었음.
 - 가입의정서는 상품분야의 대외무역권 개방(5조), 관세 인하, 비관세조치의 철회(7조),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등 약속사항을 명시
 - 또한 무역관련 투자조치와 함께 서비스분야의 유통, 금융, 운송 및 물류, 통신, 기타서비스업, 기타분야의 투명성 제고, 지적재산권보호, 정부조달 및 시장개방, 기준·인증제도 등에 대해서도 약속 사항을 명시

- 중국은 가입의정서 2조(무역제도의 실시)의 약속과 무차별원칙, 자유무역원칙 및 공평경쟁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WTO의 제규정에 기초하여 무역관련 제도와 법규의 운영에 국제적으로 준용되는 규칙을 적용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는 조치를 점진적으로 시행하였음.

1) 2001년 11월 10일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열린 WTO 제4차 각료급 회의에서 142개국 가입국 대표들이 ‘중화인민공화국가입의정서’를 심의 후 채택함에 따라 중국은 12월 11일 WTO의 143번째 가입국이 되었음.

2) 제1부분 총칙, 제2부분 양허계획표, 제3부분 최후 조항으로 구성. 제1부분은 총체상황(1조), 무역제도의 실시(2조), 비차별(3조), 특수무역안배(4조), 무역권(5조), 국영무역(6조), 비관세조치(7조), 수출입허가절차(8조), 가격조절(9조), 보조(10조), 수출입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수수료(11조), 농업(12조),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13조),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14조), 보조 및 덤핑 확정시의 가격비교 가능성(15조), 특정상품의 과도적 세이프가드 메커니즘(16조), WTO 회원국의 보류(17조), 과도적 심의메커니즘(18조) 등 총 18조로 구성됨.

- 2001년 12월 이후 화물 수출입관리와 관련한 각종 규정을 제정하는 한편 2004년에 대외무역에 관한 기본법인 「대외무역법」을 개정하고 이를 최상위법으로 하는 수출입관리, 관세 및 통관, 검사·검역 등과 관련한 하위 법령(법률 및 행정법규)체계를 확립하였음.

○ 2006년 4월 개최된 WTO 제1차 중국무역정책검토회의(2006.4.19~21)에서는 중국이 WTO 가입 이후 WTO 규칙을 성실히 이행하여 대외무역체제를 전면적으로 조정하였다고 평가함.

- 상품분야 합의사항 뿐만 아니라 서비스분야, 기타분야의 합의사항도 대체적으로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하였음.

표 1. 중국의 WTO 가입 시 상품분야 주요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결과 평가

	합의사항	이행사항
대외무역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 후 3년 이내에 대외무역권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제5조 제1항) • 외국의 개인 및 기업에 대해 대외무역권 개방(제5조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무역경영자등록방법](2004.7) 제정 및 [대외무역법] 개정(2004.10.1) • 대외무역업 등록제 실시, '대외무역경영자'를 법인, 기타조직, 개인으로 규정하고 등록 의무 부여(「대외무역법」 제8조, 제9조)
관세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151개 전체 양허품목의 관세인하 -2001년 15.3%→2010년 9.8% • 977개 농산물 양허품목의 관세인하 -2001년 19.3%→2010년 1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품목 양허세율: '02년 12.0%→'08년 10.0% -실적: 가입전 15.3%→'02년 12.0%→'05년 9.9% • 농산물 양허세율: '02년 18.5%→'08년 15.1% -실적: 가입전 23.2%→'02년 18.1%→'06년 15.2%
비관세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쿼터, 수입허가 등 수입제한조치 철폐 및 신규도입 금지(7, 8조), 가입의정서 부속서3에서 비관세조치 철폐 시간표 제시 -HS-8단위 377품목(농산물11): 수입허가증, 수입쿼터, 수입입찰 관리제도 가입 즉시 또는 2005년까지 점진 폐지 -HS-8단위 47품목(농산물32): 수입허가증 관리제도 가입즉시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의정서 부속서3에서 정한 시간표에 따라 대상 품목의 수입제한조치 철폐 • 개정 「대외무역법」, [화물수출입관리조례] 등에서 국영무역 품목, 수출입제한 품목의 관리제도를 확립

자료: 관련 자료를 토대로 필자 작성

- WTO 가입 이후 중국의 무역정책 방향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행정수단보다는 시장조절 수단에 의한 무역관리 체제로 전환. 관세인하와 수입허가 및 쿼터 품목의 축소 등 비관세조치의 철폐로 무역관리에서 환율이 중요한 역할
 - 둘째, 국내산업과 대외무역 간 조화로운 발전을 대외무역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내수산업과 수출산업의 융합발전을 강조
 - 셋째, 국제기구 가입 및 주변국과의 FTA 체결 등 무역관리의 세계적 흐름에 편승

□ 「대외무역법」 개정과 대외무역권 개방

- 중국은 WTO 가입의정서에서 WTO 가입 후 3년 이내에 대외무역권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5조 1항)³⁾, 외국의 개인 및 기업에 대해서도 대외무역권을 개방한다고 약속하였음(5조 2항)⁴⁾.
- 대외무역 주체와 관련한 WTO 가입의정서의 약속 사항은 2004년 개정된 「대외무역법對外貿易法」(1994년 5월 최초 제정)에 의해 실현되었음.
 - 2004년 개정 「대외무역법」 8조는 대외무역의 주체를 “공상등록 또는 영업수속을 하였고 본법과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대외무역 사업 활동에 종사하는 법인, 기타 조직 또는 개인”으로 규정

3) “가입 후 3년 이내에 중국의 관세영역에서 상품무역에 종사하는 모든 중국 기업에 대외무역권을 전면 개방한다. 단 부속서 2A에 등록된 상품에 대해서는 국영무역을 계속 유지한다”

4) “중국에 아직 투자 또는 등록하지 않은 개인 및 기업을 포함한 모든 외국의 개인 및 기업에 중국의 기업에 대한 대우보다 낮지 않게 대외무역권을 부여한다”

표 2. 중국의 대외무역 주체에 관한 규정의 변화

일시	규정 및 내용
1979	국유대외무역회사가 대외무역권을 지닌 유일한 대외무역 주체
1985. 3	대외경제무역부, 《대외무역회사의 설립조건 및 허가 절차에 관한 임시규정》
1988. 7	대외경제무역부, 《대외무역기업의 허가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한 규정》
1992. 9	국무원, 《대외무역회사 설립허가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한 회답》
1992	대외경제무역부, 《제조기업에 수출입경영권의 부여와 관련한 문제점에 관한 의견》
1993	대외경제무역부·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연구원의 과학기술제품 수출입권 부여에 관한 임시규정》
1993	국가경제무역위원회·대외경제무역부·대내무역부, 《상업, 물자 기업의 수출입경영권 부여에 관한 시험적 의견》
1997. 1	대외경제무역부, 《경제특구 생산기업의 자체 수출입권 자동 등록에 관한 임시규정》
1998. 9	대외경제무역부, 《사영생산기업 및 과학기술연구원의 자체 수출입권에 관한 임시규정》
1999. 1	대외경제무역부, 《전국 대형공업기업 자체 수출입권 등록제도 실행에 관한 통지》
1999. 5	대외경제무역부, 《기업의 수출입경영권 신청 자격조건의 조정 및 사후관리 강화와 관련한 문제점의 통지》
2001. 7	대외경제무역부, 《수출입경영자격 관리와 관련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기업은 등록자본금 500만 위안 이상(중서부지역은 300만 위안 이상) • 생산기업, 개인독자기업, 공동기업은 300만 위안 이상(중서부지역과 소수민족지역은 200만 위안 이상) • 과학기술연구원, 첨단신기술기업, 전기기계제품 생산기업은 100만 위안 이상 • 사영기업도 위 조건을 충족하면 대외무역권 획득 가능
2001. 12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 발효, 가입 후 3년 이내에 대외무역권의 개방 약속
2003. 7	상무부, 《수출입경영자격 표준 및 허가절차 조정에 관한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기업의 대외무역권 신청자격 조건은 등록 자본금 100만 위안 이상 • 중서부지역의 내자기업 및 생산기업은 등록 자본금 50만 위안 이상
2004. 4	「대외무역법」 개정: 대외무역권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2004. 6	상무부, 《대외무역경영자 등록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거래자 자격조건 폐지

자료: 윤충원 외(2009)에서 인용

- 중국에서 법인은 기업법인과 비기업법인(기관법인, 사업단위법인, 사회단체법인)으로 구분함.
 - 관련 법률에 따라 기관법인은 기업경영활동에 참여할 수 없으며, 사회단체법인은 본질적으로 비생산적 사회조직임. 따라서 기관법인과 사회단체법인은 대외무역의 주체가 될 수 없음.

- 대외무역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기업법인과 사업단위법인임. 사업단위법인은 업무성격에 따라 일부 법인만이 무역주체가 될 수 있음.
- 기타 조직은 영리를 추구하는 비법인조직이 해당됨. 또한 개인의 경우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공상등록 및 영업수속을 완료해야 하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개인기업에 해당함.

표 3. 1994년 구 「대외무역법」과 2004년 개정 「대외무역법」의 비교

2004년 개정 「대외무역법」				1994년 구 「대외무역법」			
장	조항	내용	비고	장	조항	내용	비고
1장 총칙	1조	제정목적	개정	1장 총칙	1조	제정목적	
	2조	대외무역의 적용범위와 정의	개정		2조	대외무역의 적용범위와 정의	
	3조	주관 행정기관	유지		3조	주관 행정기관	
	4조	대외무역정책	개정		4조	대외무역정책	
	5조	평등호혜, FTA	개정		5조	평등호혜, FTA	
	6조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개정		6조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7조	금지, 제한 등의 대응조치	유지		7조	금지, 제한 등의 대응조치	
2장 대외무역 경영자	8조	대외무역경영자의 정의		2장 대외무역 경영자	8조	대외무역경영자의 정의	
	9조	상품기술무역경영자의 조건			9조	상품기술무역경영자의 조건	
	10조	서비스무역경영자의 조건			10조	서비스무역경영자의 조건	
	11조	국영무역관리			11조	무역경영자의 지위	폐지
	12조	무역대리제도			12조	무역경영자의 의무	폐지
	13조	무역경영자의 의무			13조	무역대리제도	일부 폐지
3장 화물, 기술 수출입	14조	화물, 수출입의 자유	유지	3장 화물, 기술 수출입무역	14조	서류, 자료의 제출	
	15조	수출입자동허가	개정		15조	화물, 수출입의 자유	
	16조	화물, 기술 수출입의 제한	개정		16조	화물, 기술 수출입의 제한	
	17조	화물, 기술 수출입의 금지	개정		17조	화물, 기술 수출입의 금지	
	18조	수출입제한 및 금지품목 공포	유지		18조	수출입 제한 및 금지품목 공포	
	19조	쿼터, 허가증 관리제도	개정		19조	쿼터, 허가증 관리제도	
	20조	쿼터 분배원칙, 방식	개정		20조	쿼터 분배원칙, 방식	
	21조	통일적 상품합격평가제도 실시	신설		21조	문물, 야생동식물의 수출입제한	
	22조	수출입상품 원산지관리규정	신설				
	23조	문물, 야생동식물의 수출입제한	개정				
4장 국제서비스 무역	24조	시장진입 및 내국민대우	유지	제4장 국제서비스 무역	22조	국제서비스무역정책	일부 폐지
	25조	국제서비스무역 관리	유지		23조	시장진입 및 내국민대우	
	26조	국제서비스무역의 제한	개정		24조	국제서비스 무역의 제한	
	27조	국제서비스무역의 금지	개정		25조	국제서비스 무역의 금지	
	28조	서비스무역시장진출허가리스트	신설		26조	국제서비스 무역의 관리	

표 3. 구 「대외무역법」과 2004년 개정 「대외무역법」의 비교(계속)

2004년 개정 「대외무역법」				구 「대외무역법」			
5장 지적재산권 보호	29조	지적재산권보호정책과 조치	신설				
	30조	지적재산권자 권리남용방지 조치	신설				
	31조	지적재산권 관련 보복 조치	신설				
6장 대외무역 질서	32조	대외무역질서위반에 대한 조치	개정	제5장 대외무역 질서	27조	대외무역사업자의 금지행위	
	33조	대외무역질서위반에 대한 처벌	개정		28조	외화결제 및 사용	
	34조	대외무역경영자의 금지행위	개정		29조	보호조치1	
	35조	외환관리준수의무	개정		30조	보호조치2	
7장 대외무역 조사	36조	대외무역질서위반자 공개	신설		31조	보호조치3	
	37조	대외무역 조사사항	신설		32조	처리	
	38조	대외무역 조사절차	신설				
	39조	협력과 비밀준수의무	신설				
	40조	대외무역구제조치 일반	신설				
	41조	반덤핑조치	신설				
	42조	제3국 반덤핑조치	신설				
	43조	반보조금조치	신설				
	44조	세이프가드조치	신설				
	45조	서비스무역분야 무역구제조치	신설				
	46조	제3국으로 인한 무역구제조치	신설				
	47조	구제조치요구 및 보복조치	신설				
	48조	협외 회담 분쟁해결	신설				
제9장 대외무역 촉진	49조	사전경보응급메커니즘 구축	신설				
	50조	반회피조치	신설				
	51조	대외무역발전전략메커니즘구축	신설	제6장 대외무역 촉진	33조	대외무역금융기구 기금	
	52조	대외무역금융기구 기금설립	개정		34조	신용대출, 보험, 수출환급세	
	53조	신용대출, 보험, 수출환급세	신설		35조	협회, 상회 설립	
	54조	무역공용정보서비스시스템구축	신설		36조	중국 국제무역촉진 조직	
	55조	해외시장개발 장려	신설		37조	민족자치 경제낙후지역 지원	
	56조	협회, 상회 설립	개정				
	57조	중국 국제무역촉진조직	유지				
	58조	중소기업의 대외무역 지원촉진	신설				
59조	민족자치구 경제낙후지역 지원	유지					
제10장 법률책임	60조	법적 책임	개정	제7장 법률책임	38조	밀수 책임	
	61조	상품, 기술 수출입 밀수	개정		39조	원산지증명, 허가증위조 변조	
	62조	서비스무역 밀수	신설		40조	기술의 부정 수출입	
	63조	제34조 위반 처벌	신설		41조	직원의 처벌	
	64조	통관 및 외한매매 수속 불허	개정				
	65조	직원의 처벌	개정				
제11장 부칙	66조	행정심판 행정소송	신설				
	67조	군수품, 문화재품 별도법규적용	신설	제8장 부칙	42조	국경무역관련	
	68조	국경무역관련	유지		43조	본법의 단독관세지역 비적용	
	69조	본 법률의 단독관세지역 비적용	유지		44조	시행시기	
	70조	시행시기	개정				

주: 음영 처리된 조항은 신설된 조항을 나타냄.

□ 대외무역대리제도의 유지 및 활용

- 중국에서는 WTO 가입 이후 대외무역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기 이전까지 일부 대외무역기업이 대외무역권을 독점하였음.
 - 대외무역권이 없는 기업들은 대외무역권을 가진 기업의 대리무역을 통해 수출과 수입에 참여하였음.
 - 대외대리무역제도는 대외무역권이 없는 기업(본인)이 대외무역권을 가진 기업(대리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본인이 대리인에게 위탁한 범위에 근거하여 대리인이 해외 수출입상과 무역계약을 체결하는 제도
- 2004년 개정 「대외무역법」은 대외대리무역에 관한 규정(12조)을 유지하면서도 기존의 대리인이 누렸던 독점적 권리를 배제하고 대리인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출입 중개·알선·보조자로서 재정립하여 계약단계에 계약대리인으로서 개입하도록 규정하였음.
- 대외대리무역제도 규정은 대외대리무역을 통해 국영무역과 같은 국가 독점적 영역의 무역이 WTO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서 국영무역의 한 유형으로 활용되고 있음.
 - 중국에서 국영무역 상품은 권한을 부여받은 기업만이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으나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기업도 국영무역 권한을 부여받은 기업을 통해서 대리무역이 가능함.

□ 수입관세를 인하

- 중국은 WTO 가입의정서의 양허 안에서 전체 양허품목의 평균 수입관세

율을 2001년 15.3%에서 2010년 9.8%, 농산물 양허품목의 평균 수입관세율을 같은 기간 19.3%에서 15.0%로 인하한다는 계획을 제시함.

- 2009년 기준 전체 양허품목의 평균 수입관세율은 9.8%, 공산품과 농산물 양허품목의 평균 수입관세율은 각각 8.9%, 15.2%로 관세인하 약속을 이행하였음.
 - 농산물 양허품목의 평균 수입관세율은 WTO 가입 이전 21%에서 2004년 15.8%, 2005년 15.5%, 2006년 15.2%로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
 - 수입관세할당관리 품목인 대두유, 종려나무기름, 유채씨기름의 TRQ 물량 이외의 수입관세율은 2004년 52.4%에서 2005년 19.9%로 인하

□ 비관세조치의 철폐

-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 7조는 부속서3에서 명시한 비관세조치의 철폐 계획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WTO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어떠한 새로운 형태의 비관세조치도 실시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음.
 - 부속서3에서 철폐를 약속한 비관세조치는 수입허가 및 수량제한(수입 쿼터)에 국한됨.
 - 먼저 HS-8단위 377개 품목에 대해서 수입허가증 관리, 수입쿼터 관리 및 수입입찰 관리제도 폐지를 약속. 이 중 HS 01~24류 품목가운데 17류 4개 품목과 24류 7개 품목 등 11개 농산물 품목에 대해서 WTO 가입 즉시 수입허가증 관리, 수입쿼터 관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약속
 - 다음으로 HS-8단위 47개 품목에 대해서 수입허가증 관리제도 폐지를 약속. 이 중 HS 01~24류 품목 가운데 밀, 옥수수, 벼, 백미, 현미 등

10류(곡물) 9개 품목과 15류(식용유) 14개 품목 그리고 22류 9개 품목 등 32개 농산물 품목에 대해서 WTO 가입 즉시 수입허가증 관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약속

- 중국은 WTO 가입의정서에서 각종 보조 조치의 철폐를 약속하였음.
 - ‘보조 및 반덤핑조치 협정(SCM협정)’ 제1조의 구체적 상품에 대한 보조와 제3조 범위내의 모든 보조를 폐지할 것을 약속(제10조).
 - 또한 농산물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의 수출보조도 유지하거나 도입하지 않으며(12조 1항), 농업분야의 국영무역기업(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소속)과 자신이 경영하는 농업분야의 기타기업 간 또는 어떠한 기업 간에 진행되는 재정 및 기타 이전에 대해 통지할 것을 약속(12조 2항).
 - 이외에도 무역권(5조), 국영무역(6조), 수출입허가 절차(8조), 가격통제(9조), 수출입상품에 대한 세금과 비용 징수(11조),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13조),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14조) 등에서 WTO 규정에 부합되게 해당 제도를 운영할 것을 약속

- 중국 정부는 각종 보조 조치 철폐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선진국이 보편적으로 거액의 수출보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간접적인 형태의 수출보조제도의 운용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⁵⁾
 - 국영무역기업들이 국영수매기업으로부터 원료를 구매하여 국내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됨.
 - 또한 수출세 환급제도, 철로 운송시 부과하던 철도건설기금 징수 면제,

5) 詹晶. 2006. 我國農產品貿易保護政策研究. 華中科技大學博士學位論文.

무역촉진자금 운용, 지방정부의 수출기업 장려금제도 등은 이러한 간접적이고 은폐된 형태의 대표적인 수출보조에 해당됨.

-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 명의의 지령성 문건에서 특정 기금을 수출보조에 사용토록 하거나 정부의 지원 강화를 명시하고 있어 중국이 WTO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은폐된 형태의 수출보조를 실시하고 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국영무역 관리제도 확립

- WTO 가입국이 일부 품목에 대해 국영무역을 운용하는 것은 WTO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며 ‘GATT 1994’ 17조와 ‘GATS’ 8조는 각각 국영무역을 규정하고 있음.
-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 5조(무역권)는 부속서2A에 명시한 수입 상품 및 수출 상품에 대해서 국영무역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상품별로 국영무역을 담당할 국영무역기업을 명시하였음.

표 4. WTO 가입의정서 부속서 2A에 명시된 국영무역 상품 목록

구분	상품 명칭	HS-8단위 품목 수	국영무역기업
부속서 2A1	밀	6	중국양유식품수출입총공사(中國糧油食品進出口總公司)
	옥수수	5	
	벼 및 쌀	7	
수입	식용 식물유	7	중국양유식품수출입총공사(中國糧油食品進出口總公司) 중국토산축산물수출입총공사(中國土產畜產進出口總公司) 중국화윤총공사(中國華潤總公司) 중국남광수출입총공사(中國南光進出口總公司) 중국양풍곡물수출입공사(中國良豐穀物進出口公司) 중국양유집단공사(中穀糧油集團公司)

표 4. WTO 가입의정서 부속서 2A에 명시된 국영무역 상품 목록(계속)

구분	상품 명칭	HS-8단위 품목 수	국영무역기업
부속서 2A1 수입	식용 당	6	중국양유식품수출입총공사(中國糧油食品進出口總公司) 중국수출상품기지건설총공사(中國出口商品基地建設總公司) 중국해외무역총공사(中國海外貿易總公司) 중국당업주류집단공사(中國糖業酒類集團公司) 중국상업대외무역총공사(中國商業對外貿易總公司)
	연초	18	중국연초수출입총공사(中國煙草進出口總公司)
	원유	1	중국화공수출입총공사(中國化工進出口總公司)
	정제유	7	중국국제석유화학연합총공사(中國國際石油化工聯合總公司) 중국연합석유유한책임공사(中國聯合石油有限責任公司) 주해진용공사(珠海振戎公司)
	화학비료	25	중국화공수출입총공사(中國化工進出口總公司) 중국농업생산자료집단공사(中國農業生產資料集團公司)
	면화	2	중국방직품수출입총공사(中國紡織品進出口總公司) 북경구달방직품집단공사(北京九達紡織品集團公司) 천진방직공업공소공사(天津紡織工業供銷公司) 상해방직원료공사(上海紡織原料公司)
	차(녹차)	4	중국토산축산물수출입총공사(中國土產畜產進出口總公司)
	쌀	5	
	옥수수	3	중국양유식품수출입총공사(中國糧油食品進出口總公司)
	대두	5	길림식량집단수출입공사(吉林糧食集團進出口公司)
부속서 2A2 수출	텡스텐 광석	3	중국오금광산수출입총공사(中國五金礦產進出口總公司)
	암모늄	2	중국유색금속수출입총공사(中國有色金屬進出口公司) 중국희토금속집단공사(中國稀土金屬集團公司)
	텡스텐제품	8	중국화공수출입총공사(中國化工進出口總公司)
	석탄	5	중국석탄공업수출입총공사(中國煤炭工業進出口總公司) 중국오금광산수출입총공사(中國五金礦產進出口總公司) 산서석탄수출입집단공사(山西煤炭進出口集團公司) 신화집단유한책임공사(神華集團有限責任公司)
	원유	1	중국화공수출입총공사(中國化工進出口總公司)
	정제유	13	중국국제석유화학연합총공사(中國國際石油化工聯合總公司) 중국연합석유유한책임공사(中國聯合石油有限責任公司)
	실크	13	
	미표백실크	4	중국실크수출입총공사(中國絲綢進出口總公司)
	면화	2	중국방직품수출입총공사(中國紡織品進出口總公司) 청도방직품연합수출입공사(青島紡織品聯合進出口公司) 북경제2면방창(北京第二棉紡廠), 북경제3면방창(北京第三棉紡廠) 천진제1면방창(天津第一棉紡廠), 상해신달유한공사(上海申達有限公司) 상해화생방직인염집단공사(上海華生紡織印染集團公司) 대련환구방직집단공사(大連環球紡織集團公司) 석가장상산방직집단(石家莊常山紡織集團) 하남성낙양면방직창(河南省洛陽棉紡織廠) 하남성송악방직공업집단(河南省嵩嶽紡織工業集團)

표 4. WTO 가입의정서 부속서 2A에 명시된 국영무역 상품 목록(계속)

구분	상품 명칭	HS-8단위 품목 수	국영무역기업
부속서 2A2 수출	면화	2	덕주면방창(德州棉紡廠), 무석시제1면방창(無錫市第一棉紡廠) 호북성보신방직창(湖北省普新紡織廠), 서북면방1창(西北棉紡一廠)
	면사(방적사) 면함량85% 이상	32	성도구신방직집단공사(成都久新紡織集團公司) 소주소룬방직연합공사(蘇州蘇輪紡織聯合公司) 서북면방7창(西北棉紡七廠), 호북상면집단공사(湖北襄棉集團公司) 한단이화방직집단공사(邯鄲利華紡織集團公司)
	면사(방적사) 면함량85%이하	11	신강방직공업집단공사(新疆紡織工業集團公司) 안경방직창(安慶紡織廠), 제남제2면방창(濟南第二棉紡廠) 천진제2면방창(天津第二棉紡廠), 산서성보화방직창(山西省晉華紡織廠) 절강성금위집단공사(浙江省金衛集團公司), 서북면방5창(西北棉紡五廠) 보정제1면방창(保定第一棉紡廠), 요양방직창(遼陽紡織廠) 장춘방직창(長春紡織廠), 하남성화신면방창(河南省華新棉紡廠) 포두방직창(包頭紡織廠), 영파화공방직집단공사(寧波和豐紡織集團公司) 서북면방4창(西北棉紡四廠), 신강석하자81면방창(新疆石河子八一棉紡廠)
	면직물 면함량85% 이상	7	
	면직물 면함량85% 이하	6	
	안티모니 광석	2	중국오금광산수출입총공사(中國五金礦產進出口總公司)
	안티모니 산화물	1	중국유색금속수출입총공사(中國有色金屬進出口公司)
	안티모니 제품	3	중국희토금속집단공사(中國稀土金屬集團公司)
	백은	3	중국인초조폐총공사(中國印鈔造幣總公司) 중국동연자집단공사(中國銅鉛鋅集團公司)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加入議定書 附件2A1 國營貿易產品(進口), 2A2 國營貿易產品(出口)

-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 6조(국영무역)는 국영무역제도 운용과 관련하여 ‘WTO협정’에 부합하도록 투명성 유지(1항), 국영무역기업이 구매하는 상품의 수량, 가격, 원산지 등에 대한 정부의 영향 및 지도 금지(1항), 국영무역기업의 수출 상품 가격결정 메커니즘에 관한 정보 공개(2항) 등을 규정하였음.

- 중국은 WTO 가입 후 대외무역에 관한 최상위법인 2004년 개정 「대외무역법」 11조와 행정법규인 [화물수출입관리조례 貨物進出口管理條例] 제4장(45조~52조)에서 국영무역 관리제도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국영무역 관리 품목의 목록과 수출입경영권을 획득한 무역기업의 목록은 상무부와 관련부서의 협조로 확정하여 공고하도록 하였음(「대외무역법」 11조, [화물수출입관리조례] 46조).
 - 국영무역 관리 품목의 수출입은 권한을 부여받은 국영무역기업만이 할 수 있지만 해당 품목의 일부 수량에 대해서는 비국영무역기업도 수출입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대외무역법」 11조, [화물수출입관리조례] 45조, 47조).

- 국영무역 관리제도와 유사한 화물 수입 지정경영(designated management) 관리제도를 운용하였으나 WTO 가입 시 약속에 따라 2004년 폐지하였음.
 - 지정경영 관리제도는 특정 상품의 수출입을 국가에서 지정한 국영무역기업만이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로 일부 수량에 대해서는 비국영무역기업도 수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한 국영무역 관리제도와 구별됨.
 - 중국은 WTO 가입의정서 부속서 2B에 제시된 품목(천연고무, 목재, 합판, 양모, 아크릴 섬유, 강재 등 HS-8단위 245개)에 대해 WTO 가입후 3년 이내에 대외무역권을 개방한다고 약속하였음.⁶⁾

6) 중국 상무부(商務部)는 2004년 12월 8일 ‘[화물수입지정경영관리방법 貨物進口指定經營管理辦法] 및 2001년 이후 비준한 수입지정경영기업 명단 동시 폐지’에 관한 공고(2004년 제88호)를 발표하였음.

□ 수출입제한 상품 관리제도 확립

- 중국은 2004년 개정 「대외무역법」 19조와 [화물수출입관리조례] 11조 및 36조에 근거하여 수출입 제한 화물에 대한 관리제도를 확립함.
 - 농산물의 경우 수입측면에서는 수입관세할당(TRQ), 수출측면에서는 수출쿼터 및 수출허가증 관리제도를 확립하였음.
 - 수출허가증 관리는 수출쿼터허가증 관리, 수출쿼터입찰 관리, 수출허가증 관리 등 3가지로 세분하여 운용함.

1.3. FTA 정책방향과 추진 현황

-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비교우위에 입각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전략하에 자국경제의 활성화에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외개방정책을 적극 추진하였음.
 - 결과적으로 2001년 11월 WTO 가입을 실현하였으며, WTO 체제가 중국경제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을 해결해주고 새로운 성장과 발전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였음.
- 그러나 WTO 가입 이후 처음 참가한 ‘칸쿰 각료회의’가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입장 차이로 결렬되고, WTO/DDA 협상이 정체되는 한편 지역주의가 급격히 부상하면서 다자간무역체제에서의 무역자유화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무역통상 전략의 변화를 모색함.
- 중국 정부는 WTO 가입 이후 FTA에는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였으나 15

년 동안의 준비과정을 거쳐 가입한 WTO 다자간무역체제의 위상이 점차 약화되는 것을 계기로 다자간무역체제를 유지하면서도 보다 긴밀한 양자간무역체제인 FTA를 적극 추진하는 새로운 통상전략을 수립하였음.

- 중국이 최근 추진한 FTA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경제적인 목적 이외에도 정치외교적인 목적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됨.
- 먼저 경제적으로는 중국경제의 세계화 전략과 개혁개방의 지속 추진, 지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고 경제협력을 통한 역내 경제의 안정화,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 자원·에너지확보, 국토의 균형발전전략을 위한 서부대개발 및 동북진흥사업과 연계(FDI 유입 확대) 등이 주요 추진 목적임.
- 한편 정치외교적으로는 WTO가입 이후 확대된 중국의 경제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아시아에서 경제이외에 정치외교분야에서도 주도권 장악(특히 아세안), 지역 FTA를 주도함으로써 뉴라운드 협상과정에서 개도국 대표로서의 영향력 행사, 주변국과의 신뢰관계 구축을 통한 전략적 안보 모색, 소위 ‘중화경제권(中華經濟圈)’의 결속 강화 등이 주요 추진 목적임.
- 2012년 5월 현재 중국은 홍콩, 마카오, 아세안(10개국), 칠레, 파키스탄, 뉴질랜드, 싱가포르, 페루, 코스타리카 등 9건, 18개 국가와 FTA를 타결하였음(코스타리카를 제외하고 협정 발효).
 - 한편, 대만, 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 5개국),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 호주,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와는 협상을 진행 중이며, 한·중·일, 인도 등과의 협상을 준비 중임.

- 한국과는 민간공동연구(2004.9~2006.11), 산관학 공동연구(2007.3~2010.5)를 거쳐 2012년 5월 협상을 개시하였으며 2단계로 추진될 예정임.

표 5. 중국의 FTA 추진 현황

구분	국가	추진경과
발효 8건 17국	홍콩	• '03.6 CEPA 체결, 총7차례의 보완협정 체결
	마카오	
	ASEAN (10개국)	• '03.7. 기본협정 발효, '04.1. 조기수확프로그램(EHP) 실시 • '05.7. 상품협정 발효, '07.7. 서비스협정 발효, '10.1. 투자협정 발효
	칠레	• '05.1. 협상 개시, '06.10. 상품협정 발효, '10.8. 서비스협정 발효
	파키스탄	• '05.2. 협상 개시, '06.1. 조기수확프로그램(EHP) 실시, '07.6. 상품협정 발효 • '09.5. 서비스협정 발효, '09.9. 투자협정 발효
	뉴질랜드	• '04.12. 협상 개시, '08.4. 협정 서명, '08.10. 협정 발효 • 선진국(OECD회원국)과의 최초의 FTA, 포괄적 FTA • 양허제의 품목: 중국 4%(일부 종이제품, 가공목제품, 밀, 설탕, 쌀), 비대칭적 구조
	싱가포르	• '06.10. 협상 개시, '08.10. 협정 서명, '09.1. 협정 발효 • 중국이 아시아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포괄적 FTA • 중-아세안 FTA가 체결된 상황에서 양자간 FTA 재차 체결(개방가속화 의도)
	페루	• '07.9. 협상 개시, '09.4. 협정 서명, '10.3. 협정 발효 • 포괄적 FTA • 상품무역협정에서 농업을 별도의 섹션으로 구분, 페루는 국내 농산품 보호를 위한 가격밴드제도(Price band system) 조항 삽입 관철
타결 1건 1국	코스타리카	• '09.1. 협상 개시, '10.4. 협정 서명 • 중미 국가와의 최초의 FTA, 포괄적 FTA(상품, 서비스, 투자 분야) • 양허제외 품목: 중국 74개(5.7%), 코스타리카 248개(22.6%)
협상 진행 8건 17국	대만	• '10.6. 기본협정 서명, '10.9. 기본협정 발효, '11년 상품 및 서비스협상 추진
	GCC (6개국)	• '05.4. 협상 개시, '09.6. 제5차 협상 • 걸프협력회의(GCC):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UAE
	호주	• '05.5. 협상 개시, '11.7. 제16차 협상
	아이슬란드	• '07.4. 협상 개시, '08.4. 제4차 협상
	노르웨이	• '08.9. 협상 개시, '10.9. 제8차 협상
	SACU (5개국)	• '04년 협상 개시 • 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 남아공, 나미비아, 보츠와나, 레소토, 스와질랜드
	스위스	• '11.1. 협상 개시, '12.2. 제4차 협상
	한국	• '12.5. 협상 개시 • 1단계(모델리티 협상), 2단계(본 협상)로 구분하여 진행
협상 준비	한-중-일	산관학 공동연구 완료('10.5.~'11.12., 7차례 회의)
	인도	RTA 공동연구 완료('03.6.~'07.10., 6차례 회의)

- 중국이 기체결한 FTA의 상품분야 양허는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이 있음.
 - 첫째, 조기수확프로그램(EHP) 실시로 상대국이 자유무역의 효과를 단기간에 체험토록 하여 본격적인 협상에서 추진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선택적으로 운용하였음(대만, 아세안).
 - 둘째, FTA 협상 상대국에 따라 정치외교적인 성과를 위해 경제적 실익을 양보하는 전략과 경제적인 성과를 위해 경제적 득실을 치밀하게 반영하는 이중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농업 강국인 칠레, 뉴질랜드와는 양허제외를 비롯해 10년 이상 장기에 걸친 관세철폐 등 신속적 양허안을 제시).
 - 셋째, 초기 FTA에서는 농산물 세이프가드(SG) 조치에 커다란 관심을 두지 않았으나 점차 무역구제조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협상에 반영하는 추세임(중·뉴질랜드 FTA에서 일반적 무역구제조치인 다자간 SG와 양자간 SG외에 특별농산물SG 도입).
 - 넷째, FTA협정의 범위가 상품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점차 투자, 서비스 분야로 확대되어 포괄적 FTA를 지향하는 추세임.

2. 농산물 수출정책 개요

2.1. ‘농산물수출 11·5 발전계획’

- 중국 상무부는 2006년 8월 24일 제11차 5개년(2006~2010년) 계획 기간을 맞아 농산물 수출 전략과 목표, 주요 정책 조치를 담은 ‘농산물수출 11·5발전계획(農產品出口“十一五”發展規劃)’(이하 ‘계획’)을 발표하였음.
 - ‘계획’은 중국이 처음으로 발표한 농산물 수출관련 5개년 계획이며 일본의 잔류농약 검사에 대한 ‘포지티브 방식 적용’, 유럽과 미국의 ‘품질이력’ 요구 등 일련의 무역장벽으로 중국의 농산물 무역 환경에 난관이 조성된 상황에서 발표되었음.
 - ‘계획’은 제11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연평균 7%의 수출 성장률을 유지하여 2010년에 380억 달러의 농산물 수출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음(2010년 중국의 농산물 수출액은 392억 달러로 목표는 초과 달성되었음).

- ‘계획’은 내용적으로 제11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최근 대내외적으로 조성된 농산물 무역환경에 기초하여 향후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과 목표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조치들이 망라되어 있음.

□ 농산물 수출 전략, 목표 및 계획

- 중국의 농산물 수출 전략은 노동집약형 농산물 수출확대, 품질 및 안전성 제고를 통한 국제경쟁력 향상, 수출시장 다변화 등 3대 전략으로 요약됨.
- 먼저 중국은 수산물, 축산물, 원예작물 그리고 가공품 등 노동집약형 농수산물이 향후 상당 기간 국제시장에서 비교우위를 발휘할 것으로 전망하고 노동집약형 농산물의 수출확대를 최우선적인 수출전략으로 제시하였음.
 - 중국 농산물의 비교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농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품목별 비교우위지역을 선정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치를 도모하고 있음.
 - 또한 농산물 수출이 ‘외화 획득’뿐만 아니라 ‘취업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함으로써 농업·농촌경제의 발전과 농민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있음.
- 중국은 농산물 수출이 품질·안전·위생상의 문제로 인한 수입국의 기술무역장벽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품질 및 안전성 제고를 통한 국제경쟁력 향상을 수출 전략으로 제시하였음.
 - 이를 위해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혁신과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선진국의 우량품종, 식품가공기술, 경영방식 등 선진적인 경험을 수용하고 연구개발 능력을 확대하여 국제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음.

표 6. 중국의 농산물 수출 목표 및 계획(2006~2010년)

구분	수출 목표	계획	
품목별	수산물 및 수산물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산물 양식 및 산지 관리 GAP, HACCP 등 국제인증 획득을 통한 상품의 품질 및 안전 수준 제고 	
	원예작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품종 개발, 고부가가치·고영양식품 연구개발 보건식품, 유기농 채소·과일의 생산확대 및 홍보 강화 유산균, 김치, 콩제품, 조미제품 등 동양전통음식의 구미시장 수출 확대 생산의 표준화를 추진하여 GAP, HACCP 국제인증 획득, 브랜드 상품 육성 	
	축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 위생 등록제도 시행, HACCP 국제인증 확대 가축질병 발생지역에 대한 관리·감독 규범화, GAP 인증제도에 부합하는 생산확대 및 수출등록제도 강화 	
	곡물·두류 및 그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식량 수출시장을 공고히 하고 심층가공과 고부가가치 곡물제품 수출 지원 	
수출시장별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공농산물 수출 확대 	
	홍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품질향상을 통한 시장점유율 회복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리적 인접성과 비교우위 활용 시장점유율 제고 	
	ASE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잠재시장 개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기수확프로그램 실시, FTA 발효 활용 지리적 인접성, 음식문화 유사성을 활용하여 축산물 및 가공제품 수출 확대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박람회 개최 통한 고품질·고부가가치 농산물 수출 확대, 심층가공 축산물, 원예작물, 수산물 및 유기농산물 수출 확대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교우위 농산물(생선·육류·과일·견과류·채소제품) 수출 확대
	러시아·중동·남미·중앙아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흥시장 개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정적 무역채널 및 기업의 수출리스크 예상체계 구축 가격우위 제품(쌀, 채소, 담배) 수출 확대
대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호 보완성 및 상호이익 추구 온대성 농산물 및 그 제품, 특산물 위주 수출 		
국내지역별	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재권 보유 농산물 개발, 우수기업 육성 가공식품 산업 발전, 브랜드 농산물 연구개발 중서부 지역에 수출기지 건설 유도 	
	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량생산 구조조정, 우수품종 육성 및 수출규모 확대 중부지역의 다양한 지리환경, 기후조건 활용하여 지역 간 비교우위 활용 산업화경역을 통한 농업생산 조직화수준 제고 농산물 생산기지조성을 통한 수출상품 생산 확대 우수 축산물 수출기지 건설 	
	서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특색을 살린 농산물 수출 확대 전통식품 및 기술의 계승발전을 통해 새로운 농산물 수출거점으로 육성 변경지역 국가들과의 농산물 무역확대 	

자료: <<農產品出口“十一五”發展規劃>>에서 요약 정리

- 중국의 농산물 수출은 일본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지역과 유럽지역 등 전통적인 수출시장에 집중되어 있음.
 - 농산물 무역은 국가 간 마찰이 빈번하기 때문에 수출시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으면 수입국의 기술장벽, 반덤핑 및 기타 비관세장벽 등의 제한조치로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중국은 전통적인 농산물 수출시장인 일본, 한국, 아세안 등에 대한 수출은 점진적으로 증대시키고, 유럽과 미국 등 잠재력이 큰 거대시장과 중동, 동유럽 등 신흥시장을 개척하는데 주력하고 있음.

- 중국은 3대 수출 전략하에 수산물, 원예작물, 축산물, 곡물 및 두류제품 등 품목별 수출 목표를 제시하였음. 또한 농산물 수출시장을 전통시장, 잠재시장, 개척시장으로 세분하여 각각 수출목표를 제시하고, 국내적으로 동부, 중부, 서부지역을 구분하여 각 지역별 수출목표도 제시하였음.

□ 주요 정책 조치

- 중국은 3대 수출전략 하에 품목별, 수출시장별, 국내지역별로 설정한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 수출농산물의 품질안전관리 강화, 수출상품구조의 최적화 및 브랜드화, 품목조직 설립 확대 및 농산물 수출 조직화수준 제고, 농산물수출 지원시스템 구축, 농산물수출의 대외환경 개선 등 5가지 정책 조치를 제시하였음.

표 7. 중국의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주요 정책 조치

구 분	주요 내용
<p>품질안전관리체계 강화 와 수출경쟁력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용 농산물의 생산단계 관리감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수출기업의 생산기지 조성 지원, “기업+생산기지” 유형의 농산물 수출경영방식 보급, 리콜시스템 확립 및 전 과정 품질관리 시행 - 수출농산물의 표준화 생산 추진, 농업투입재 사용의 엄격한 규제 및 관리감독 강화, 맹독성 및 잔류성 농약의 생산·판매·사용 엄격 통제 - 수출농산물 생산기지에서 생산기록파일 작성 시스템 확립, 동식물 전염병 관리감독 및 예방 능력 제고 • 농식품 가공수출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및 지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농식품 생산기업의 GAP, GMP, HACCP 인증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인증체계 구축 • 수출용 농식품에 대한 검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 출입국 검사검역 장비 및 기술 수준 제고, 전문인력 육성 - 수출기업의 자체검사 독려, 실험실 건설 지원 및 전문 검사요원 교육 지원, 검사기관의 국가인증 획득 지원 - 수출이 유망한 비교우위 농식품 및 투입재에 대한 검사 강화
<p>수출상품구조의 최적화와 브랜드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 수출기업의 해외 선진기술 및 우량 품종 도입을 통한 지적재산권이 있는 고유 제품 개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적인 생산 및 가공 기술 도입 지원, 신품종의 수입 지원, 농업생태환경개선에 도움이 되는 바이오 비료 및 농약 등 제품의 수입 지원 • 농산물 지리적 표시 등록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검사면제제도 실시, 유명한 지리적 표시 농식품 수출기업의 통관절차 간소화 • 제품품질 표준시스템을 수립하고, 해외 수출시장에서 수출농식품 업종표준 및 표지에 대한 홍보 강화 • 브랜드농식품의 해외마케팅계획을 수립하고, ‘수출브랜드 발전자금’ 조성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브랜드 발전자금은 농식품 수출기업의 브랜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비용, 국제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전개하는 광고 선전 및 전람회 참가, 전시판매 및 판촉활동 지원
<p>수출농산물 품목조직 설립 확대 및 농산물 수출조직화 수준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생산의 조직화 수준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수출중점지역에 전문협동조직 설립, 농민들의 표준화 생산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의 비용 절감 및 품질관리의 신뢰도 제고 - 생산조직의 활성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 및 농업산업화를 추진하여 생산효율성 증대 및 기술무역장벽 대처 능력 배양 • 수출 농식품의 품목조직 설립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농식품의 품목별 협회 및 중개조직의 발전을 지원하고, 자체적인 서비스 및 관리감독 능력 강화

구 분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화 수준을 제고하고 농식품의 수출질서 확립 및 국제무역분쟁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농산물 수출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 농업산업화 경영 발전 촉진 -농업산업화경영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이윤분배 방식을 통해 기업이 생산기지와 농가를 선도할 수 있도록 독려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농촌노동력을 흡수하여 농민들의 취업을 확대할 수 있는 농산물수출 용두기업을 육성하여 농업산업화경영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통해 농업의 종합적인 경쟁력 제고 -‘기업+생산기지’, ‘기업+생산기지+농가’, ‘기업+농가’ 유형의 농업산업화경영을 발전시켜 기업이나 농업협동조직이 주체가 되어 생산·가공·유통 등 전 영역을 통합하고 표준화하는 생산계열화 적극 추진
농산물 수출지원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식품 수출기업에 대한 중앙대외무역발전기금 지원 확대 -국제표준 인증, 수출기지의 조성, 품질이력추적시스템의 구축, 기술 연구개발 및 기술개선 추진 지원 •조건에 부합되는 농산물 수출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으로 자금난 해소 -정책성 금융 지원 확대, 농산물 수출기업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 -농업발전은행의 농산물 수출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확대 •농산물 수출보험제도 개선, 수출신용보험과 농업보험이 결합된 리스크방어 시스템 구축 등으로 농식품 수출기업의 보험가입율을 제고하여 농산물 수출기업의 리스크 대비 능력 강화 •세금 우대정책 실시 -농산물 수출환급세율의 구조를 조정하여 기업의 심가공(深加工) 농산물 수출 장려 -농식품 수출기업이 생산·가공 검사설비 및 기업의 통용설비를 수입할 때 국가의 관련 규정에 의해서 관세감면 등 우대 조치 실시 •수출 농산물의 검사·검역 비용 감면 등 수출비용 감소 및 신선농산물 수출의 통관절차 간소화
농산물 수출 대외환경여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WTO의 새로운 협상라운드에 적극 참여하여 농산물 무역의 3대 문제인 시장진입, 국내지원 및 수출보조 문제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중국산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공평하고 완화된 경쟁환경 조성 •FTA 협상을 적극 추진하여 농산물 수출시장 확대 도모 •외교교섭력을 강화하여 무역분쟁을 해결함으로써 농산물 수출에 유리한 국제시장 환경 조성, 각국과 긴밀한 민관협력 채널 구축

자료: 《農產品出口“十一五”發展規劃》에서 요약 정리

2.2. ‘농업무역촉진규획(2011~2020년)’⁷⁾

- 중국 농업부 판공청(辦公廳)은 2011년 12월 29일 농산물무역 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담은 ‘농업무역촉진규획(2011~2020년)農業貿易促進規畫(2011-2020年)’(農辦外[2011]6호)을 발표하였음.
 - 농산물무역을 강화하고 농산물무역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국내외 시장의 효과적인 이용, 국내 농산물의 수급 균형, 농민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농업안전보장수준의 제고 등에 있어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가짐.
 - 본 《규획》은 농산물무역 촉진의 중요성과 긴박성, 발전 현황, 지도 사상과 주요 목표, 주요 임무, 보장 조치 등으로 구성됨.

- 농산물무역의 발전 성과 및 문제점
 - 발전 성과: 농산물무역 촉진체계 확립, 농산물 마케팅분야 공공서비스 발전, 농산물무역관련 정보화사업 추진, 농산물무역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 확대
 - 문제점
 - 농산물무역 촉진기구가 불완전하고, 직무가 명확하지 않으며 조직 간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농산물무역 촉진을 위한 자금 투입이 부족하고 서비스 수단이 다양하지 못함.
 - 농산물무역의 불균형 발전과 지역 간 격차가 비교적 큼.

7)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3 참조

- 농산물무역관련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기초 업무가 취약함.
- 농산물무역 촉진을 위한 중장기 5대 목표
 - ①농산물무역 촉진체계 완비, ②농산물 브랜드개발 추진, ③농산물 수출시장의 다원화, ④농산물 수출량과 품질의 안정적인 제고, ⑤농업분야의 산업안전 보장능력 향상
- 중장기 목표 실현을 위한 주요 임무
 - 농산물의 대외마케팅 능력 향상: 농산물수출 시범기지 건설 지원, 수출 농산물의 브랜드 개발 지원, 농산물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장려 및 지원, 농산물수출 시범기업 육성, 국제농업박람회 개최, 농산물수출 기업과 협회의 국제박람회 참여 장려
 - 농산물무역의 조기경보 및 구제업무 추진: 농업분야 산업피해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강화, 중점 농산물에 대한 수출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강화, 다자·양자간 농업협상 강화
 - 농산물무역관련 정보화사업과 연구 강화: 농산물무역 정보 수집 및 DB 구축 강화, 농산물무역 정보 서비스 수준 제고, 농산물무역관련 연구 수준 제고

2.3. 주요 농산물수출 지원정책

- 중국이 농산물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농산물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요 지원정책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8. 중국의 주요 농산물수출 지원정책 개요

구분	지원 내용
무역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의 자금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국제시장개척자금’: 2001년 시작. 주로 농식품 수출기업의 박람회 참가 및 홍보 활동 지원. 2010년까지 10여만 개 중소기업에 50여억 위안 지원. 1위 안으로 38위안의 무역창출 효과 - ‘농(農)·경(經)·방(紡) 산품 무역촉진자금’: 2006년 시작. 주로 농식품 수출기업 이나 업종조직(협회 등)의 제품인증이나 체계인증 및 유기인증 획득 지원, 품질 이력추적시스템 구축, 수출농식품의 표시 및 원산지표기 등록 비용 지원 등 - ‘농산물영소촉소(營銷促銷)전용자금’: 2002년 시작. 주로 농식품기업의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전국규모의 직거래활동 지원, 농식품 전자상거래 지원 등 • 지방정부의 자금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수출을 선도하는 우수 수출기업에 재정지원(흑룡강성, 하남성, 호북성, 광서자치구 등), 자금용자 환경 개선(사천성, 절강성, 강서성 등), 농식품 수출에 대외무역발전기금을 충분히 활용하여 농산물수출 확대에 기여(광서자치구 등), 농식품수출 촉진사업 전용경비 편성(광서자치구, 안휘성, 복건성, 청도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신용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수출입은행이 2006년부터 농산물 수출기업에 신용대출 실시 • 수출신용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수출신용보험공사에서 2001년부터 신용보험과 관련서비스 제공 - 2009년 7월부터 상무부·재정부가 서부지역에서 농산물단기수출신용보험 가입 시 신용보험료 50%까지 지원(운남성은 2010년부터 보험료 전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가 국내외에서 농산물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훈련 실시 • 2008년부터 농업부 향진기업국이 CCPIT 농업분회와 농업과학원 연구생원(대학원)과 공동으로 ‘농산물무역 경리 및 관리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 및 지방정부, CCPIT에서 농산물수출기업에 법률자문제공 서비스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부의 전문 예산항목의 지원하에 농업부 농업무역촉진중심이 해외박람회 참가 조직 및 지원, 농산물수출 장애요인 해결을 위한 세미나 개최 지원(예, 2009년 3월 일본 동경에서 ‘중일 농산물무역 교류세미나’ 개최) • 농산물수출업체 조직화(품목별 협회 등) 및 활동 지원
무역정보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부, 상무부, 국가식량국, 해관총서, 국가통계국 등에서 정보 수집 및 분산체계 구축, 정보화 표준체계 구축, DB 구축, 정보서비스 플랫폼 건설 • 상무부와 농업부에서 국제농산물시장정보 서비스체계 구축 및 정보 분산 •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에서 수출대상국의 비관세장벽 실태 파악 및 정보 제공

자료: 農業部農產品貿易辦公室·農業貿易促進中心, 2010. 「2010中國農產品貿易發展報告」, 農業出版社.

3. 농산물 수출입 관리제도

3.1. 법률 및 행정체계

- 「대외무역법」은 중국의 대외무역에 관한 기본법으로 1994년 5월 12일 처음 제정되었으며, 중국의 WTO 가입을 계기로 개정을 추진하여 개정 「대외무역법」이 2004년 4월 공포되어 같은 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 개정 「대외무역법」은 제3장(화물, 기술 수출입)에서 화물 수출입의 자유(14조), 수출입 자동허가제(15조), 화물 수출입의 제한(16조), 화물 수출입의 금지(17조), 수출입 제한 및 금지 품목 공포(18조), 쿼터 및 허가증관리제도(19조), 쿼터 분배원칙 및 방식(20조), 상품합격 평가제도(21조), 수출입상품 원산지 관리규정(22조), 문물(文物) 및 야생동식물의 수출입 제한(23조) 등 화물 수출입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국무원은 WTO 가입을 계기로 2001년 12월 상품의 수출입관리를 규범화하고 수출입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정법규인 [화물수출입관리조례](국무원령 제332호, 2001.12.10 공포, 2002.1.1. 시행)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음.⁸⁾

8) 이 행정법규 제정으로 [進口貨物許可制度暫行條例](1984.1.10), [出口商品管理暫行辦法](1992.12.21 국무원 비준, 1992.12.29 대외경제무역부 공포), [一般商品進口配額管理暫行辦法](1993.12.22 국무원 비준, 1993.12.29 국가계획위원회·대외무역경제합작부

표 9. [화물수출입관리조례(貨物進出口管理條例)]의 구성

구분	내용	
제1장	총칙(1~7조)	
제2장	화물수입관리	1절 수입금지 화물(8~9조)
		2절 수입제한 화물(10~20조)
		3절 자동수입 화물(21~24조)
		4절 관세할당관리 화물(25~32조)
제3장	화물수출관리	1절 수출금지 화물(33~34조)
		2절 수출제한 화물(35~44조)
제4장	국영무역과 지정경영(45~52조)	
제5장	수출입 검사와 임시조치(53~58조)	
제6장	대외무역 촉진(59~63조)	
제7장	법률책임(64~70조)	
제8장	부칙(71~77조)	

- 상무부는 중국의 대외무역 관리를 총괄하는 주무기관으로서 「대외무역법」에 근거하여 대외무역사업을 관장하며(8조), 각 지방정부에서는 상무청(商務廳)이 대외무역관리를 담당함.
- 화물의 수출입관리는 「대외무역법」과 [화물수출입관리조례] 등 관련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상무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담당하며, 해당 사안에 따라 관련 부처와 연계하여 업무를 처리함.

3.2. 수출입 제한 화물의 관리제도

□ 화물의 수출입 금지 및 제한

공포), [進口商品經營管理暫行辦法](1994.6.13, 1994.7.19 대외무역경제합작부, 국가계획위원회 공포)을 폐지하였음.

- 「대외무역법」 16조에 근거하여 다음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화물의 수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음.
 - 국가 안전, 사회의 공공이익 또는 공중도덕을 수호하기 위하여 수출이나 수입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
 - 인류 건강이나 안전 보호, 동물·식물의 생명이나 건강 보호, 환경보호를 위하여 수입이나 수출을 제한 또는 금지해야 할 경우
 - 황금 또는 백은 수출입과 관련한 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입 또는 수출 제한이 필요한 경우
 - 국내공급이 부족하거나 국내자원의 고갈을 유효하게 방지하기 위해 수출제한이 필요한 경우
 - 수출대상 국가나 지역의 시장물량의 한계로 수출제한이 필요한 경우
 - 수출경영질서가 심각하게 혼란하여 수출제한이 필요한 경우
 - 국내 특정산업의 육성 또는 육성의 가속화를 위해 수입제한이 필요한 경우
 - 어떠한 형태의 농업, 목축업, 어업 제품이든 수입제한이 필요한 경우
 - 국가의 국제금융에서의 위상과 국제수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수입제한이 필요한 경우
 -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해 수출이나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를 해야 할 기타 경우
 -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 협정에 의해 수출이나 수입 제한이 필요한 기타 경우

- 수출입 금지 및 제한 화물의 목록은 상무부와 국무원 관련부처가 연계하여 제정, 조정 및 공포하되, 정식 시행일 21일 이전에 공포하도록 하고 있음(〔화물수출입관리조례〕 8조, 10조, 36조).

□ 쿼터 관리제도

- 「대외무역법」 19조와 [화물수출입관리조례] 11조 및 36조에 근거하여 수출입을 제한하는 화물 중 수량을 제한하는 화물에 대해서 쿼터 관리제도를 실시함.

가. 수입 쿼터

- 수입쿼터 관리품목은 상무부와 관련 부처가 매년 7월 31일 이전에 차년도 총 수입쿼터를 발표하고 국무원이 규정한 업무영역에 따라 관리함.
 - 수입쿼터 신청인은 매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상무부에 차년도 쿼터를 신청하고, 상무부는 매년 10월 31일 이전에 차년도 쿼터를 신청인에게 분배함.
 - 상무부는 연간 총 쿼터 수요에 근거해 쿼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최소한 실시 21일전에 공표함.
- 중국의 수입쿼터 관리품목은 기계, 전기제품(기계설비, 전기설비, 교통운송수단, 전자제품, 가전제품과 계기계량기 등과 그와 관련된 부품, 소자 포함)과 중요 공업제품(완제품 기름, 자동차 타이어 등 포함)임.

나. 수입관세할당(TRQ)

- 「대외무역법」 19조와 [화물수출입관리조례] 11조에 근거하여 수입을 제한하는 화물 중 일부 화물에 대해서 관세할당 관리를 실시함.

- 수입관세할당 관리 품목은 주로 농산물과 화학비료임.
- 수입관세할당 관리품목의 관리는 상무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대외무역법」, 「세관법」, [화물수출입관리조례], [수출입관세조례]에 근거하여 2003년 3월 27일 공포한 [농산물 수입관세할당관세 집행방법農產品進口關稅配額管理暫行辦法](상무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령 2003년 제4호)에 근거하여 실시함.
 - [집행방법]은 총칙(1장), 신청(2장), 분배(3장), 기한(4장), 집행(5장), 조정(6장), 벌칙(7장) 등 총 7장 40조로 구성됨.
- 농산물 중 수입관세할당 관리품목은 밀(밀가루 포함), 옥수수(옥수수가루 포함), 쌀(쌀가루 포함), 대두유, 유채씨유, 종려기름, 식용 당, 면화, 양모(wool), 섬수모(wool tops) 등 10개 품목임.
- 양모와 섬수모를 제외한 8개 품목의 수입관세할당은 국영무역할당과 비국영무역할당으로 구분됨.
 - 국영무역할당은 국영무역기업이 수입하고, 비국영무역할당은 대외무역권을 가진 기업이나 개인이 수입할 수 있음.
- 수입관세할당 농산물의 관리는 상무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분담함.
 - 상무부는 대두유, 유채씨유, 종려기름, 식용 당, 양모, 섬수모 등 6개 품목,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밀, 옥수수, 쌀, 면화 등 4개 품목을 관리함.
- 상무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수입관세할당 신청 1개월 전에 ‘국제상

보國家商報’, ‘중국경제도보中國經濟導報’ 등 언론매체와 상무부 및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홈페이지에 차년도의 쿼터 총량, 신청조건,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확정된 세번과 적용 세율을 공고함.

- 대외무역 기업이나 개인은 매년 10월 15일~30일 사이에 수입관세할당을 신청함.
- 상무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매년 1월 1일 이전에 선정 기업에 ‘농산물 수입관세할당증서’를 발급하며 유효기간은 1년임.

표 10. 2012년도 농산물 수입관세할당 내역

품목	쿼터 총량(만 톤)	국영무역 비율(%)
밀(밀가루)	963.6	90
옥수수(옥수수가루)	720.0	60
쌀(쌀가루)	532.0(장립종 50%, 중단립종 50%)	50
면화	89.4	33
설탕	194.5	70

다. 수출 쿼터

- 대외무역경제합작부(현 상무부)는 「대외무역법」, [화물수출입관리조례]에 근거하여 2001년 12월 20일 [수출상품 쿼터관리방법出口商品配額管理辦法](대외무역경제합작부령 2001년 제12호)을 공포하고,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 [관리방법]은 총 7장 33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출쿼터 상품 목록(2장), 수출쿼터 총량(3장), 수출쿼터의 신청(4장), 수출쿼터의 분배, 조정 및 관리(5장), 법률책임(6장)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관리방법]의 부속서는 쌀, 옥수수, 밀, 면화, 설탕 등 5개 농산물과 원유, 가공유, 석탄, 코크스, 희토 등 5개 공산품은 수출쿼터관리 품목이지만 본 방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음.
- 수출쿼터 관리품목은 상무부와 관련 부처가 매년 10월 31일 이전에 차년도 총 수출쿼터를 발표하고 국무원이 규정한 업무영역에 따라 관리함.
 - 수출쿼터 신청인은 매년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수출쿼터 관리부처에 차년도 쿼터를 신청하고, 수출쿼터 관리부처는 매년 12월 15일 이전에 차년도 쿼터를 신청인에게 배분함.

표 11. 2012년도 수출쿼터 품목 및 쿼터량

품목 명칭	쿼터 총량	품목 명칭	쿼터 총량
제재목	26만 입방미터	텡스텐 및 텡스텐제품	1,54만 톤
난초 및 난초제품	3,200만 kg	주석 및 주석제품	1.80만 톤
산 돼지(大)	180만 마리	안티몬 및 안티몬제품	5.94만 톤
	- 홍콩 165만 마리		
	- 마카오 15만 마리	몰리브덴	2.5만 톤
산 돼지(中)	8,24만 마리	인	2.31톤
	- 홍콩 8만 마리	산화알루미늄	70만 톤
- 마카오 0.24만 마리			
산 소	5.72만 마리	백은	5,387톤
	- 홍콩 5만 마리	인광석	120만 톤
	- 마카오 0.72만 마리	활석	68만 톤
산 닭	1,340만 마리	탄화규소	21.6만 톤
	- 홍콩 1,000만 마리	감초 및 감초제품	6,300톤
	- 마카오 340만 마리	산화마그네슘	180만 톤

- 상무부가 2011년 10월 31일 공고한 [2012년 농산품과 공업품 수출쿼터총량2012年農產品和工業品出口配額總量](상무부공고 2011년 제71호)은 18개 품목의 수출쿼터량을 공시하였음.

- 농산물은 난초 및 난초제품, 산 돼지(大), 산 돼지(中), 산 소, 산 닭 등 5개 품목임.

□ 허가증 관리제도

가. 수입허가증

- 「대외무역법」 19조와 [화물수출입관리조례] 11조에 근거하여 수입을 제한하는 화물 중 수량제한 화물 이외의 기타 화물에 대해서 수입허가증 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수입허가증 관리를 받는 화물은 반드시 수입허가증을 취득해야 세관에서 통관 신청을 접수하고 통관을 허용함.
- 수입허가증 관리는 상무부가 「대외무역법」과 [화물수출입관리조례]에 근거하여 2004년 12월 9일 공포한 [화물수입허가증관리방법 貨物進口許可證管理辦法](2005년 1월 1일 시행)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음.
 - [관리방법]은 총 7장 35조로 이루어졌으며, 수입허가증신청시 제출해야할 서류(2장), 수입허가증 발급 근거(3장), 수입허가증의 발급(4장), 수입허가증 유효기간(5장), 검사와 처벌(6장) 등의 내용을 규정함.
- 상무부는 수입허가증 관리 주무기관으로 세관총서,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과 협의하여 매년 [수입허가증관리화물목록進口許可證管理貨物目錄]을 발표하고, 독자적으로 [수입허가증관리화물 등급별 증서발급 목록進口許可證管理貨物分級發證目錄]을 발표함.

- 수입허가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오로지 하나의 세관에서만 등록이 가능함(一證一關).
- 상무부와 세관총서,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 2011년 12월 30일 공고한 [2012년 수입허가증관리화물목록2012年進口許可證管理貨物目錄](상무부·해관총서·질검총국 공고 2011년 제99호)은 HS-10단위 기준 131개 품목임.
 - 화공설비(3개), 금속제련 설비(2개), 기계류(17개), 기중기 및 운송 설비(6개), 제지 설비(3개), 전력 및 전기 설비(20개), 식품가공 및 포장 설비(8개), 농기계류(4개), 인쇄기계류(7개), 방직기계류(4개), 선박류(9개), 오존층 파괴물질(48개)
 - 농산물은 수입허가증 관리화물 목록에 포함되지 않음.

나. 수출허가증

- 「대외무역법」 19조와 [화물수출입관리조례] 36조에 근거하여 수출을 제한하는 화물 중 수량제한 화물 이외의 기타 화물에 대해서 수출허가증 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수출허가증 관리는 상무부가 「대외무역법」과 [화물수출입관리조례]에 근거하여 2008년 6월 7일 공포한 [화물수출허가증관리방법貨物出口許可證管理辦法](상무부령 2008년 제11호, 2008.7.1 시행)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음.⁹⁾
 - [관리방법]은 총 8장 47조로 이루어졌으며 수출허가증 신청·취득 시

제출 서류(2장), 수출허가증 발급 근거(3장), 수출허가증의 발급(4장), 예외 상황의 처리(5장), 수출허가증의 유효기간(6장), 검사와 처벌(7장) 등의 내용을 규정함.

- 상무부는 수출허가증 관리 주무기관으로 세관총서,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 총국과 협의하여 매년 [수출허가증관리화물목록出口許可證管理貨物目錄]을 발표하고, 독자적으로 [수출허가증관리화물 등급별 증서발급 목록 出口許可證管理貨物分級發證目錄]을 발표함.
 - 수출허가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오로지 하나의 세관에서만 등록가능 하며(一證一關), 유효기간 내 1회만 사용가능하나(一批一證), 외자기업 수출허가증관리 화물과 보상무역하의 허가증관리 화물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내 여러 차례 사용이 가능함(非一批一證).
 - 수출허가증 관리품목은 수출쿼터허가증 관리품목, 수출쿼터입찰 관리 품목, 수출허가증 관리품목 등 3가지 품목으로 세분됨.

- 상무부와 세관총서가 2011년 12월 30일 공고한 [2012년 수출허가증 관리 화물 목록2012年出口許可證管理貨物目錄](상무부·해관총서 공고 2011년 제98호)은 총 49개 실품목, HS-10단위 기준 677개 품목임.
 - 이 중 농산물은 산 소, 산 돼지, 산 닭, 저온신선 쇠고기, 냉동 쇠고기, 저온신선 돼지고기, 냉동 돼지고기, 저온신선 닭고기, 냉동 닭고기, 밀, 밀가루, 옥수수, 옥수수가루, 쌀, 쌀가루, 감초, 난초 등 17개 실품목 (HS-10단위 기준 116개 품목)임.

9) 2004년 12월 제정되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화물수출허가증관리방법](상무부령 2004년 제28호)는 폐지되었음.

- 수출허가증 관리품목 중 옥수수, 쌀, 면화, 석탄, 원유, 정제유, 안티몬 및 안티몬제품, 텅스텐 및 텅스텐제품, 백은은 국영무역기업이 수출입을 담당하는 국영무역 관리품목임.

표 12. 2012년도 수출허가증 관리 품목

관리 방식	HS-10 단위 기준 품목 수	
수출쿼터 허가증	농산물 (72개)	밀(8개), 옥수수(4개), 쌀(20개), 밀가루(6개), 옥수수가루(7개), 쌀가루(8개), 면화(5개), 산 소(홍콩, 마카오 수출, 5개), 산 돼지(홍콩, 마카오 수출, 6개), 산 닭(홍콩, 마카오 수출, 3개)
	비농산물 (191)	목재(30개), 석탄(5개), 코크스(1개), 원유(1개), 정제유(18개), 희토류(75개), 안티몬 및 안티몬제품(8개), 텅스텐 및 텅스텐제품(14개), 연광석(2개), 주석 및 주석제품(12개), 백은(8개), 인 및 인제품(4개), 몰리브덴(9개), 인광석(4개)
수출쿼터 입찰	농산물(3개)	난초(1개), 감초(2개)
	비농산물 (22개)	난초제품(3개), 감초제품(3개), 산화알루미늄(2개), 탄화규소(2개), 활석(4개), 산화마그네슘(8개)
수출허가증	농산물 (60개)	산 소(홍콩, 마카오 이외지역 수출, 5개), 산 돼지(홍콩, 마카오 이외지역 수출, 6개), 산 닭(홍콩, 마카오 이외지역 수출, 3개), 저온신선 쇠고기(7개), 냉동 쇠고기(9개), 저온신선 돼지고기(9개), 냉동 돼지고기(10개), 저온신선 닭고기(5개), 냉동 닭고기(6개)
	비농산물 (343개)	오존층 파괴물질(48개), 파라핀(2개), 아연 및 아연합금(4개), 일부 금속 및 금속제품(107개), 백금(2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154개), 오토바이 및 오토바이 부품(14개), 천연모래(3개), 몰리브덴제품(1개), 구연산(2개), 비타민C(4개), 페니실린 공업용소금(1개), 유산봉사(1개)

다. 변경소액무역 수출허가증

- 국무원이 1996년 1월 3일 하달한 문건 [변경무역 관련문제에 관한 통지 關於邊境貿易有關問題的通知](國發[1996]제2호)은 변경무역을 2가지 형

식으로 관리한다고 명시하였음.

- 첫째, 변민호시무역(邊民互市貿易). 변경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변경선 20km 이내의 정부가 비준한 개방지점 또는 지정 자유무역시장에서 규정한 금액 또는 수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하는 교역활동
 - 둘째, 변경소액무역(邊境小額貿易). 연해와 내륙지역의 국가의 비준을 거쳐 대외 개방한 변경지역 현(縣), 도시 내의 변경소액무역경영권을 획득한 기업이 국가가 지정한 지점을 통과하여 인접국가의 변경지역 기업 또는 기타 무역기구와 진행하는 교역 활동. 변민호시무역을 제외한 기타 변경무역은 모두 변경소액무역관리에 포함됨.
- 상무부와 세관총서는 매년 말 [수출허가증관리화물목록]을 공고할 때 [변경소액무역 수출허가증관리화물목록邊境小額貿易出口許可證管理貨物目錄]도 함께 공고함.
- [변경소액무역 수출허가증관리화물목록]은 대부분 [수출허가증관리화물목록]과 같고 농산물 품목에서 다소 차이가 있음.
- 상무부와 세관총서가 2011년 12월 30일 공고한 [2012년 변경소액무역 수출허가증관리화물목록]은 총 37개 실품목, HS-10단위 기준 608개 품목임.
- 이 중 농산물은 밀, 밀가루, 옥수수, 옥수수가루, 쌀, 쌀가루, 감초, 난초 등 8개 실품목(HS-10단위 기준 56개)임.

표 13. 2012년도 변경소액무역 수출허가증 관리품목

HS-10 단위 기준 품목 수	
농산물 (56개)	밀(8개), 밀가루(6개), 옥수수(4개), 옥수수가루(7개), 쌀(20개), 쌀가루(8개), 감초(2개), 난초(1개)
비농산물 (552개)	희토류(75개), 연광석(2개), 주석 및 주석제품(12개), 안티몬 및 안티몬제품(8개), 석탄(5개), 코크스(1개), 원유(1개), 정제유(18개), 텅스텐 및 텅스텐제품(14개), 목재(30개), 백은(8개), 아연 및 아연합금(4개), 일부 금속 및 금속제품(107개), 몰리브덴(9개), 몰리브덴제품(1개), 인 및 인제품(4개), 천연모래(3개), 구연산(2개), 페니실린 공업용소금(1개), 비타민C(4개), 유산붕사(1개), 인광석(4개), 탄화규소(2개), 감초제품(3개), 난초제품(3개), 산화알루미늄(2개), 산화마그네슘(8개), 활석(4개), 오존층 파괴물질(48개), 오토바이 및 오토바이 부품(14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154개)

3.3. 자동수입허가 관리제도

(Automatic Import Licensing System)

- 수입 금지 또는 제한 화물을 제외한 화물은 자유수입 화물로 분류되며, [화물수출입관리조례] 22조는 상무부와 관련부처의 연계하에 자유수입에 속한 일부 화물에 대해 자동수입허가 관리제도를 실시한다고 규정함.
- 자유수입 화물 중 자동수입허가 관리품목의 관리는 상무부가 「대외무역법」과 [화물수출입관리조례]에 근거하여 2004년 12월 9일 공포한 [화물 자동수입허가관리방법 貨物自動進口許可管理辦法](상무부·해관총서령 2004년 제26호, 2005.1.1 시행)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음.
- 자동수입허가 관리제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수입 신청에 대해 비준하는 수입허가제도임. 이러한 수입허가는 사실상 수입하기 전의 자동등록성격

의 허가제도이며, 이러한 허가의 성격은 자동 절차의 허가이지 타인에게 수권행위를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님.

- 이러한 점에서 자동수입허가 관리제도는 중국이 해당 농산물의 수입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음.

○ 상무부는 [화물자동수입허가관리방법] 3조에 근거하여 최소한 실시 21일 전에 ‘자동수입허가관리화물목록’을 공포함.

- 자동수입허가 관리에 속하는 화물을 수입할 때는 수입 기업이 세관에 신고하기 이전에 상무부나 관련부서에 자동수입허가를 신청하고, 신청서 접수 후 즉시 자동수입허가증명서를 발급하고, 기업은 이를 세관에 제출하여 통관수속을 밟음.

표 14. 2012년도 자동수입허가 관리품목

HS-10 단위 기준 품목 수		
전기·기계류 이외 상품 (270개)	농산물 (111개)	쇠고기(16개), 돼지고기 및 부산물(19개), 양고기(11개), 육계(12개), 신선 우유(4개), 분유(4개), 유장(1개), 대두(5개), 유채씨(4개), 식용 식물유(14개), 옥수수 주박(1개), 대두박(2개), 담배(18개)
	비농산물 (159개)	아세트산 섬유(1개), 구리광석(2개), 석탄(5개), 폐지(5개), 폐강(7개), 폐알루미늄(2개), 구리(58개), 철광석(5개), 보크사이트(1개), 원유(1개), 정제유(10개), 천연가스(2개), 산화알루미늄(1개), 화학비료(23개), 강재(36개)
전기·기계류 상품 (517개)		시디롬 생산설비(9개), 연초기계(3개), 이동통신제품(11개), 위성방송, TV설비 및 핵심 부품(11개), 자동차제품(152), 비행기(4개), 선박(15개), 게임기(5개)
		보일러(9개), 증기터빈발전기(4개), 발전기(16개), 수력발전기 및 기타 동력장치(7개), 화공장치(17개), 식품기계(5개), 엔지니어링기계(22개), 제지 및 인쇄기계(17개), 방직기계(29개), 금속제련 및 가공설비(13개), 금속가공선반(37개), 전기설비(43개), 철로기관차(4개), 자동차제품(52개), 비행기(5개), 선박(3개), 의료설비(12개)
		구형 오프셋인쇄기(12)

- 상무부와 세관총서가 2011년 12월 10일 공고한 [2012년 자동수입허가관리화물목록2012年自動進口許可管理貨物目錄](상무부·해관총서공고 2011년 제97호)은 HS-10단위 기준 787개 품목임.
 - 이 중 농산물은 쇠고기, 돼지고기 및 부산물, 양고기, 육계, 신선 우유, 분유, 유청, 대두, 유채씨, 식용 식물유, 옥수수 주박, 대두박, 담배 등 HS-10단위 기준 111개 품목임.

4. 관세 및 통관 제도

4.1. 법률 및 행정체계

- 중국의 관세 및 통관제도 관련 주요 법률·법규는 [세관법海關法], [수출입관세조례進出口關稅條例], [지적재산권세관보호조례知識產權海關保護條例], [수출입화물원산지조례進出口貨物原產地條例], [수출입화물 특혜원산지관리규정進出口貨物優惠原產地管理規定], [보장조치조례保障措施條例], [반보조조례反補貼條例], [반덤핑조례反傾銷條例] 등임.

- 「세관법」은 중국 세관이 출입국 운송수단, 화물, 물품을 감독관리하며 세금을 징수하는 법률로서 세관 관리감독의 법률적 근거임
 - 1987년 1월 22일 제6차 전인대에서 통과되어 1987년 7월 1일 시행되었으며, 2000년 7월 8일 제9차 전인대에서 한차례 수정되었음.
 - 출입국 운송수단(2장), 출입국 화물(3장), 출입국 물품(4장), 관세(5장), 세관사무 담보(6장), 법률집행 감독(7장), 법률책임(8장) 등 총 9장 102조로 구성됨.

- [수출입관세조례]는 「세관법」에 근거하여 수출입 허가 화물, 입국 물품의 수출입 관세 징수의 근거가 되는 법률임.
 - 1985년 3월 7일 국무원령 제96호로 공포된 후 1987년 9월 12일 제1차 수정, 1992년 3월 18일 제2차 수정을 거쳤으며, 제3차 수정을 거쳐

2003년 11월 23일 국무원령 제392호로 공포되어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수출입관세조례]는 수출입화물 관세율의 설정과 적용(2장), 수출입화물의 과세가격 확정(3장), 수출입화물 관세의 징수(4장), 입국 물품의 수입세 징수(5장) 등의 사항을 규정함.
 - [수출입관세조례] 제3조는 국무원이 [수출입세칙進出口稅則]과 [입국 물품 수입세 세율표進境物品進口稅稅率表]를 제정하여 관세의 세목과 세칙(稅則)번호와 세율을 규정하도록 하고 본 조례의 구성부분임을 명시하였음.
- [수출입화물 원산지조례]는 기존의 중국의 원산지규정이 수출¹⁰⁾과 수입¹¹⁾으로 나누어져 통합의 필요성이 있었고, 최종 생산 또는 가공공정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고 구체성도 결여되어 2004년 9월 새롭게 제정되었음.
- 총 27조로 구성된 [수출입화물원산지조례]는 2004년 9월 3일 국무원령 제416호로 공포되었으며,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원산지조례]는 최혜국대우, 반덤핑 및 반보조금, 셰이프가드, 원산지표기 관리, 국가별 수량제한, 관세쿼터 등 비특혜성 무역조치 및 정부조달, 무역통계 등 활동에서 수출입 원산지의 확정에 적용됨(제2조).
- [수출입화물특혜원산지관리규정進出口貨物優惠原產地管理規定]은 2009년 1월 8일 해관총서령 제181호로 공포되었으며,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10) [수출화물원산지규칙出口貨物原產地規則](국무원, 1992.3.8 공포)

11) [수입화물 원산지에 관한 잠행 규정關於進口貨物原產地的暫行規定](해관, 1986.12.6 공포)

- [관리규정]은 총 31조로 이루어졌으며, 해관의 특혜성 무역협정 수출입 화물 원산지관리에 적용됨(제2조).
-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關稅稅則委員會)는 [수출입관세조례] 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함.
 - [수출입세칙]과 [입국물품 수입세 세율표]의 세목, 세칙(稅則)번호, 세율의 조정 및 해석
 - 잠정세율을 적용할 대상 화물, 세율 및 적용 기간 결정
 - 할당관세 세율의 결정
 - 반덤핑관세, 반보조관세, 세이프가드관세, 보복성관세 징수 결정 및 기타 관세조치의 결정
 - 특수 상황에서 적용할 세율 결정 등
- 세관총서(海關總署)는 「세관법」과 관련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출입국 운송수단, 화물, 수화물, 운송물품과 기타 물품을 관리감독하고, 관세와 기타 세금, 비용을 징수하는 동시에 밀수행위 수사 등의 관세 및 통관관련 업무를 총괄함.
 - 세관총서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는 직속 세관은 해당구역 범위 내의 세관업무를 책임지는 기관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41개가 설치되어 있음.

4.2. 관세제도 개요

- 중국에서 관세는 개혁개방 이전에는 국가재정 수입 증대가 중요한 역할이

었으나 개혁개방 이후 대외무역 관리체제의 시장화 개혁이 진전됨에 따라 주요 재정수입원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수출입 조절 및 국내산업 보호라는 역할이 점차 중시되고 있음.

- 중국의 품목별 수입관세율은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책정됨.
 -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는 수입관세를 면제하거나 저율의 관세 부과
 - 원자재의 관세율은 반제품 또는 완제품보다 낮게 책정
 - 국내에서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품질경쟁력이 낮은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부품의 관세율은 완제품보다 낮게 책정
 - 국내 생산이 가능하고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필요성이 낮은 품목은 높은 관세율 적용
 - 국내 생산이 가능하고 보호가 필요한 품목은 높은 관세율 적용
 -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수출품에 대해서는 수출관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국제시장에서 수요가 제한되어 있고 경쟁이 치열한 상품과 수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원자재, 반제품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수출관세 부과

- WTO 가입 이전 중국의 수입관세는 우대세율과 보통세율 두 가지를 적용하였으나 WTO 가입 이후 [수출입관세조례] 10조에 근거하여 최혜국대우 조항을 토대로 우대세율을 세분화하여 최혜국세율(MFN세율), 협정세율(FTA세율), 특혜세율, 보통세율(기본세율), 잠정세율, 관세할당세율(TRQ세율), IT상품세율 등 7가지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수출관세는 수출세율과 잠정세율 등 2가지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표 15. 중국의 수입관세율 종류와 적용범위

세율 종류	적용 범위
최혜국세율 (양허세율)	• 최혜국대우조항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WTO 회원국 원산지의 수입화물, 중국과 최혜국대우조항을 포함한 양자협정에 서명한 국가(지역) 원산지의 수입화물, 중국 국경내 원산지의 수입화물에 적용
협정세율 (FTA세율)	• 중국과 관세우대조항을 포함한 지역무역협정에 서명한 국가(지역) 원산지의 수입화물에 적용(FTA체결 국가 원산지 수입화물에 적용하는 세율) • 아세안협정세율(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아태협정세율(한국,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인도, 라오스), 칠레협정세율, 파키스탄협정세율, 싱가포르협정세율, 뉴질랜드협정세율, 페루협정세율, 코스타리카협정세율, 홍콩-마카오협정세율
특혜세율	• 중국과 특혜관세우대조항을 포함한 무역협정에 서명한 국가(지역) 원산지의 수입화물에 적용 • 아태 2개국(방글라데시, 라오스), 아세안 3개국(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최빈국 37개국
보통세율 (기본세율)	• 최혜국세율, 협정세율, 특혜세율을 적용하는 국가 이외의 국가(지역) 원산지의 수입화물과 원산지가 불분명한 수입화물에 적용하는 세율
잠정세율	• 최혜국세율, 협정세율, 특혜세율, 관세할당세율을 적용하는 수입화물에 대해서 일정기간 동안 적용하는 세율
관세할당세율 (TRQ세율)	• 수입관세할당 관리를 받는 수입화물의 관세할당내 물량에 적용하는 세율
IT상품세율	• 정보산업부가 정보산업제품에 사용된다는 증명서를 발급한 IT상품(완제품이 아닌 것)에 적용하는 세율

자료: 中華人民共和國海關進出口稅則(2012年中英文版)

- 수입관세의 부과 순위는 최혜국세율을 적용하는 수입화물로서 잠정세율이 적용된 것은 잠정세율을 우선 적용하며, 협정세율, 특혜세율을 적용하는 수입화물로서 잠정세율이 적용된 것은 낮은 세율을 우선 적용하며, 보통세율을 적용하는 수입화물은 잠정세율을 적용하지 않음
 - 수출관세의 부과 순위는 수출세율을 적용하는 수출화물로서 잠정세율이 적용된 것은 잠정세율을 우선 적용함.

- 관련 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반덤핑, 반보조,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한 수입화물의 관세율은 [반덤핑조례], [반보조조례], [보장조치조례]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세율을 적용함.
 - 특정 지역, 특정 기업 또는 특정 용도의 수출입화물에 대한 관세감면 또는 관세면제, 임시 관세감면 또는 관세면제는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함.

- 수입화물에 대해서는 수입관세이외에도 내국세인 증치세(增值稅; 부가가치세)와 소비세가 부과되며, 수출화물에 대해서는 수출관세만 부과됨.
 - 증치세율은 모든 품목에 부과되며 품목에 따라 13%와 17%의 세율을 차등 적용.¹²⁾ 주로 가공품에 17%의 증치세율이 적용되는 경향이 있음.
 - 소비세는 일부 품목에 부과되는데 2012년 기준 농산물 가운데는 HS 2106.9020.00(음료제조용 주정제품), HS 22류 중 HS-10단위 25개 품목(주로 주류제품), HS 24류 중 HS-10단위 8개 품목(주로 담배제품) 등 총 34개 품목에 소비세가 부과됨.

12) 17%의 증치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HS 0401~0406, HS 0410(HS 0410.0041제외), HS 0501, HS 0506.1000, HS 0506.9011, HS 0506.9019, HS 0603.9000, HS 0604.9090, HS 0712.9050, HS 0712.9091, HS 0712.9099, HS 0901, HS 0910.9100, HS 0910.9900, HS 1104.1200, HS 1104.1910, HS 1104.1990, HS 1104.2200, HS 1104.3000, HS 1105~1109, HS 1208, HS 1210, HS 1302, HS 1501~1506, HS 1509.9000, HS 1510, HS 1511.9090, HS 1512.1900, HS 1512.2900, HS 1513.2900, HS 1514.9900, HS 1515.1900, HS 1515.2900, HS 1515.3000, HS 1515.9010, HS 1515.9020, HS 1515.9030, HS 1515.9090, HS 1516, HS 1517.1000, HS 1517.9010, HS 1518~1522, HS 16류~22류 전체, HS 2309.9010, HS 24류 전체, HS 2905.4300, HS 2905.4400, HS 3301, HS 3501~3505, HS 3809.1000, HS 3824.6000, HS 5001~5003, HS 5101.2100, HS 5101.2900, HS 5101.3000, HS 5102~5103, HS 5201~5203, HS 5301~5302.

- 수입화물은 CIF가격, 수출품은 FOB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 부과 형태는 종가세, 종량세, 복합세 등 3가지 종류임.
 - 2012년 기준 HS 01류~98류 전체 품목가운데 종량세, 복합세를 부과하는 품목은 HS-8단위 기준 각각 42개 품목, 10개 품목임.
 - 농산물 중 종량세를 부과하는 품목은 8개 품목(냉동 닭제품 7개, 맥주 제품 1개)¹³⁾이며 복합세 부과 품목은 없음.

- 중국은 수출상품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세무총국 명의의 문건¹⁴⁾에 의거하여 1994년부터 수출상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소비세 등 국내세법에 의해 부과된 세금을 환급해주는 세제혜택을 실시하고 있음.
 - [수출입세칙]에 근거하여 품목별로 0%, 5%, 13%, 15%의 수출환급세율(出口退稅稅率)를 차등 적용

- 중국의 수출입상품 HS코드 분류는 2012년 [수출입세칙]을 기준으로 총 22부, 98류로 구분되며 총 세목은 8,194개로 2011년 7,977개에 비해 217개가 증가하였음.
 - 2008년 7,758개, 2009년 7,868개, 2010년 7,923개로 지속 증가 추세

- 중국의 수출입상품 HS코드 분류상 농산물의 범위는 [수출입세칙]상의 HS 01류~24류 전부, HS 2905.4300, HS 2905.4400, HS 3301, HS 3501~3505, HS 3809.1000, HS 3824.6000, HS 4101~4102, HS 4103, HS 4301, HS

13) HS 0207.1200, HS 0207.1411, HS 0207.1419, HS 0207.1421, HS 0207.1422, HS 0207.1429, HS 0504.0021, HS 2203.0000

14) 《關於印發‘出口貨物退(免)稅’管理辦法的通知》(國稅發[1994]031號, 1994.2.18)

5001~5003, HS 5101~5103, HS 5201~5203, HS 5301~5302이며 2012년 기준 총 세목은 HS-10단위 1,909개임.

- HS 03류를 제외한 총 세목은 HS-10단위 1,552개, 종가세 부과 총 세목은 1,544개임(8개 세목은 종량세 부과 대상).

표 16. 중국 농업부의 수출입 농산물 HS코드 분류체계

농산물 분류	HS-4단위 세번 품목
1. 곡물	1001~1008, 1101~1104, 1904 밀 1001, 1101, 1103, 1904, 벼 1006, 1102~1103, 옥수수 1005, 1102~1104 보리 1003, 1104
2. 면·마·비단	1404, 5001~5003, 5201~5203, 5301~5305 면화 1404, 5201~5203, 마(麻)류 5301~5305, 누에·비단 5001~5003
3. 채종유(油籽)	1201~1202, 1204~1208, 2008 식용 채종유 1201~1202, 1204~1208, 2008, 비식용 채종유 1207~1208
4. 식물유	1507~1515; 식용 식물기름 1507~1512, 1514~1515, 비식용 식물기름 1513, 1515
5. 당 원료 및 당류	1209, 1212, 1701~1704; 식용 당 1701
6. 음료	0901~0903, 1801~1806, 2101, 2201~2206, 2208~2209 차 0902~0903, 2101, 식초 2209, 커피·커피제품 0901, 2101, 주정·주류 2203~2206, 2208
7. 채소	0701~0712, 0714, 0904, 0910, 1209, 1212, 2001~2005, 2009, 2103
8. 과일	0801, 0803~0814, 1203, 2006~2009, 2106, 2204
9. 견과(堅果)	0801~0802, 0811, 1212, 2008
10. 화훼	0601~0604
11. 오일케이크, 고풍유박	2304~2306
12. 건조한 채두류	0713, 1106
13. 수산물	0106, 0208, 0210, 0301~0307, 0508, 0511, 1212, 1504, 1603~1605, 2008, 2301, 2801, 3913, 7101
14. 축산물	0101~0106, 0201~0210, 0401~0410, 0502~0507, 0510~0511, 1501~1503, 1505~1506, 1601~1602, 2301, 4101~4103, 4301, 5101~5103
15. 조미향료	0905~0910
16. 정유(精油)	3301
17. 식량제품	1107~1109, 1902~1905
18. 서류	0714, 1105
19. 약재	1211
20. 기타 농산물	0501, 0511, 0602, 1106, 1108, 1209~1214, 1301~1302, 1401~1404, 1516~1522, 1901, 2008, 2101~2106, 2302~2303, 2307~2309, 2401~2403, 2905, 3501~3505, 3809, 3823, 3913

자료: 農業部農產品貿易辦公室·農業部農業貿易促進中心. [2010中國農產品貿易發展報告]

- 중국의 농산물 수출입 통계는 크게 나누어 대외무역 업무를 총괄하는 부처인 상무부(商務部)가 세관통계를 토대로 생산하는 통계와 농업관련 주무부처인 농업부(農業部)가 재분류하여 생산하는 통계로 구분됨.
 - 농업부의 농산물 수출입 통계는 농산물 종류를 20개로 대분류하고 각 종류별로 [수출입세칙]상의 HS-4단위 세번 품목을 정의한데 기초하여 세관 수출입 통계를 토대로 작성됨.

표 17. 중국의 농산물 수입관세율 구간별 분포

단위: 개, %

	0 ~ 10% 미 만	10 ~ 20% 미 만	20 ~ 50% 미 만	50 ~ 100% 미 만	100% 이 상	합 계
소 계	427 (27.7)	644 (41.7)	436 (28.2)	37 (2.4)	0 (0.0)	1,544 (100.0)

자료: 中華人民共和國海關進出口稅則(2012年中英文版)

- 2012년도 중국의 농산물 평균 수입관세율은 14.4%(중가세 부과 대상 1,544개 품목의 평균 수입관세율)로 WTO 가입 이후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는 추세임.
 - 수입관세율 10% 미만의 미소품목은 전체의 27.7%인 427개
 - 수입관세율 10~20% 미만이 644개로 전체의 41.7%, 20~50% 미만이 436개로 전체의 28.2% 차지. 수입관세율이 50% 미만인 품목의 비율이 97.6%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함.
 - 100% 이상의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농산물은 없고, 50~100% 미만의 고율관세가 부과되는 수입농산물은 전체의 2.4%인 37개 품목으로 곡물, 당류, 담배, 주류 등이 대표적인 품목임.

표 18. 중국의 농산물 품목군별 평균 수입관세율(단순평균)

단위: %

품목	평균 관세율	품목	평균 관세율	품목	평균 관세율			
0101류	5.56	01류 5.77	0505류	10.00	05류 12.22	0814류	25.00	09류 12.08
0102류	5.00		0506류	12.00		0901류	14.33	
0103류	7.50		0507류	9.14		0902류	15.00	
0104류	5.00		0508류	12.00		0903류	10.00	
0105류	5.88		0510류	5.25		0904류	20.00	
0106류	5.69		0511류	7.41		0905류	15.00	
0201류	14.67	02류 18.63	0601류	6.46	06류 9.90	0906류	8.33	
0202류	16.33		0602류	6.19		0907류	3.00	
0203류	16.00		0603류	12.60		0908류	6.33	
0204류	17.00		0604류	14.33		0909류	16.00	
0205류	20.00		0701류	13.00	07류 11.96	0910류	12.83	
0206류	16.00		0702류	13.00		1001류	33.00	
0207류	19.50		0703류	13.00		1002류	1.50	
0208류	21.75		0704류	12.14		1003류	1.50	
0209류	20.00		0705류	11.50		1004류	1.00	
0210류	25.00		0706류	13.00		1005류	21.75	
0301류	7.43	03류 10.23	0707류	13.00		1006류	33.00	
0302류	11.89		0708류	13.00		1007류	1.00	
0303류	10.76		0709류	12.88		1008류	1.67	
0304류	10.82		0710류	12.63		1101류	35.5	
0305류	13.67		0711류	13.00	1102류	21.7		
0306류	9.16		0712류	13.00	1103류	22.38		
0307류	9.80		0713류	3.55	1104류	27.27		
0308류	8.32		0714류	10.78	1105류	15.00		
0401류	15.00	04류 14.06	0801류	10.75	08류 17.88	1106류	16.67	11류 20.45
0402류	10.00		0802류	20.08		1107류	10.00	
0403류	15.00		0803류	10.00		1108류	17.50	
0404류	11.00		0804류	16.90		1109류	18.00	
0405류	10.00		0805류	14.00		1201류	2.40	
0406류	12.60		0806류	11.50		1202류	10.00	
0407류	12.73		0807류	17.20		1203류	15.00	
0408류	20.00		0808류	12.00		1204류	15.00	
0409류	15.00		0809류	12.50		1205류	4.50	
0410류	19.29		0810류	20.89		1206류	7.50	
0501류	15.00	05류 12.22	0811류	30.00	1207류	9.77		
0502류	20.00		0812류	25.63	1208류	12.00		
0504류	19.14		0813류	23.80	1209류	0.00		

자료: 中華人民共和國海關進出口稅則(2012年中英文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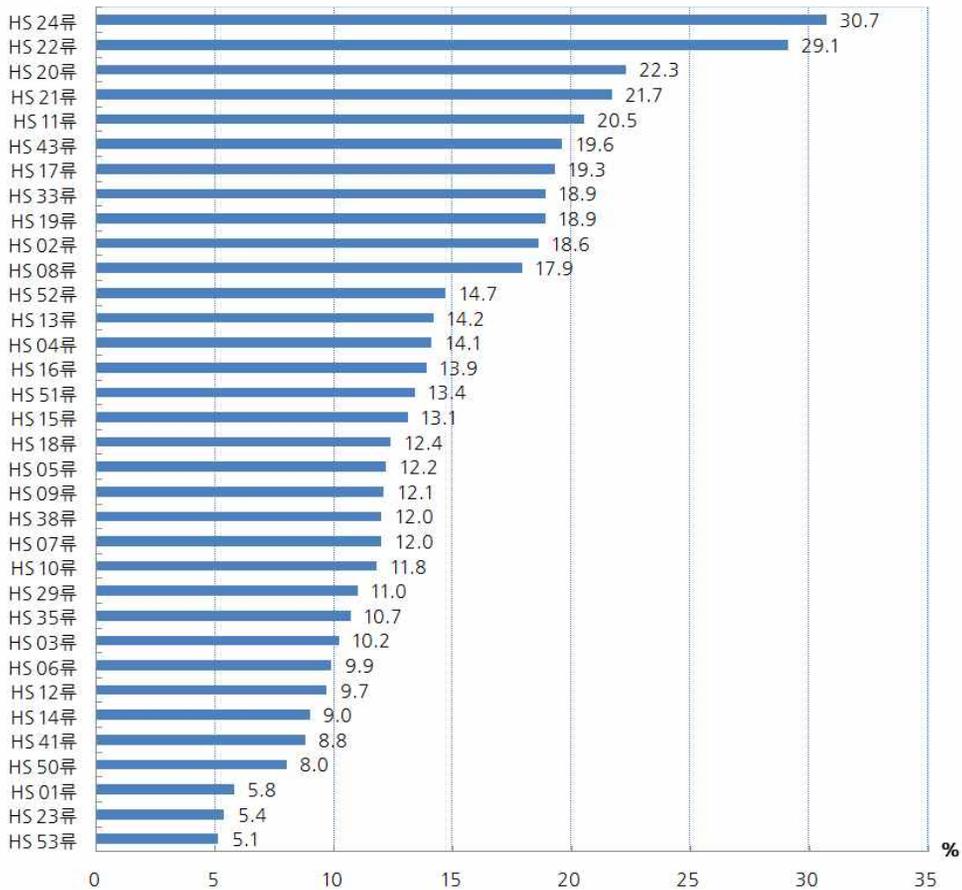
표 18. 중국의 농산물 품목군별 평균 수입관세율(계속)

품목	평균 관세율	품목	평균 관세율	품목	평균 관세율			
1210류	15.00	12류 9.70	1703류	8.00	17류	2302류	4.50	23류 5.38
1211류	7.26		1704류	11.00	19.27	2303류	5.00	
1212류	18.40		1801류	8.00	18류 12.37	2304류	5.00	
1213류	12.00		1802류	10.00		2305류	5.00	
1214류	7.00		1803류	10.00		2306류	5.00	
1301류	12.60		13류	1804류		22.00	2307류	
1302류	15.79	14.20	1805류	15.00		2308류	5.00	
1401류	10.00	14류	1806류	9.20	2309류	10.38		
1404류	8.00	9.00	1901류	16.25	19류 18.92	2401류	10.00	
1501류	1.000	15류 13.05	1902류	16.25		2402류	25.00	30.67
1502류	8.00		1903류	15.00		2403류	57.00	29류
1503류	10.00		1904류	28.75		2905류	11.00	33류
1504류	13.20		1905류	18.33		3301류	18.91	35류 10.70
1505류	20.00		2001류	25.00	3501류	10.00		
1506류	20.00		2002류	20.40	3502류	10.00		
1507류	9.00		2003류	25.00	3503류	12.00		
1508류	10.00		2004류	23.00	3504류	5.50		
1509류	10.00		20류 22.27	2005류	23.46	3505류	16.00	38류
1510류	10.00			2006류	30.00	3809류	10.00	12.00
1511류	8.60			2007류	17.50	3824류	14.00	41류
1512류	9.50			2008류	16.97	4101류	6.09	8.80
1513류	9.00			2009류	19.11	4102류	10.20	43류
1514류	9.00			2101류	27.75	4103류	10.11	
1515류	15.64			2102류	25.00	4301류	19.55	
1516류	15.00	21류 21.66		2103류	20.17	5001류	6.00	50류
1517류	26.00			2104류	23.50	5002류	9.00	8.00
1518류	10.00			2105류	19.00	5003류	9.00	51류 13.44
1520류	20.00		2106류	14.56	5101류	19.50		
1521류	20.00		2201류	15.00	5102류	9.00		
1522류	20.00	22류 29.10	2202류	30.00	5103류	11.83	52류 14.72	
1601류	15.00		2204류	19.50	5201류	13.67		
1602류	14.57		2205류	65.00	5202류	10.00		
1603류	23.00		2206류	40.00	5203류	20.50	53류 5.13	
1604류	11.48		2207류	33.33	5301류	4.25		
1605류	5.37		2208류	10.00	5302류	6.00		
1701류	32.5	전체 평균	2209류	20.00	14.35			
1702류	25.56		2301류	3.50				

자료: 中華人民共和國海關進出口稅則(2012年中英文版)

- 품목군별 평균 수입관세율을 보면 HS 24류(담배와 제조한 담배대용물)가 30.7%로 가장 높고, HS 53류(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와 지사 및 지사의 직물)이 5.1%로 가장 낮음.

그림 1. 중국의 농산물 품목군별(HS-2단위) 평균 수입관세율 비교



자료: 中華人民共和國海關進出口稅則(2012年中英文版)

4.3. 통관 제도 및 절차

- 통관은 수출입 운송수단의 경영자와 송수화인 및 그 대리인 그리고 화물소유자가 세관에 수출입내역을 신고한 후, 세관이 신고서류 심사 및 수출입화물과 운송수단의 검사, 관세징수 및 수출입 승인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함.
- 중국은 「세관법」에 근거하여 대외개방 항구 및 세관의 감독관리가 집중된 지역에 세관을 설치하고, 수출입 운송수단 및 화물은 반드시 세관설립지에서 수입 또는 수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특수상황의 발생 시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세관의 미설립지역에서 임시로 수입 혹은 수출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세관 수속을 거쳐야 함.
- 중국의 수입화물 통관 기본절차는 ①출고증 교환 → ②검역신고 → ③통관신고 → ④화물검사 → ⑤관세징수 → ⑥통관으로 구분됨.

표 19. 중국의 수입통관 절차

구분	주요 내용
출고증 교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화물 수화인은 수입화물운반회사에 수입화물에 대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수입화물 출고증 교부 - 제출 서류는 선하증권 원본 혹은 팩스로 받은 전송본, 선적서류, 영수증, 계약서(일반무역) 등 포함
검역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입상품검사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출입상품 검사종류표에 규정되어 있거나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 의해 상품검사기구의 검사를 거쳐야 하는 수출입상품에 대해서 출입국검사검역국에서 수입상품 검사 실시 • 수출입상품검사종류표에 포함된 상품은 모두 18종(HS-8단위 2,000여개 품목)이며, 종류표에 포함된 모든 수출입상품은 수출입통관 수속전에 검사기구에 검사 신청 - 일시 수출입 물품, 비매용 전시품, 진열품, 보세물품, 수출용원자재, 샘플 또는 선물용, 면세품 및 기타 비교역성 물품은 별도로 규정한 검사 이외에 법정 상품검사는 면제

구분	주요 내용
통관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는 수입화물 통관의 첫 단계로 반드시 해관의 허가를 받아 등록된 전문 통관기업, 대리통관기업 및 자가통관기업의 보관원(報關員)이 실시. 수입화물의 경우 운송수단이 입국 신고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세관에 신고해야 함. • 통관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수입화물 통관신고서, 계약서, 선하증권, 영수증, 포장명세서, 수입운송회사가 날인한 출고증, 대리통관기업일 경우 위탁서, 관련허가증서 등이 포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서류로는 수입허가증(쿼터증명서 등) 및 상품검사, 검역증명서 등이 있으며, 추가로 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원산지증명, 위생증, 수입업체의 영업허가증, 기타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통관신고서의 내용에는 수입업체, 수화업체, 신고업체, 운송방식, 무역방식, 무역거래실제현황(상품명칭, 규격, 수량 또는 중량, 가격 등)을 포함함.
화물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검사는 세관원이 통관신고 접수 후 출입국검사검역국의 통관허가증에 근거하여 실제 화물이 신고서 상에 표기된 내용과 부합되는지를 확인하여, 신고서 심사만으로는 발견이 불가능한 허위신고, 밀수 등 법규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관세부과, 통계관리 등 후속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 • 검사장소는 일반적으로 신고 세관 관할의 항구, 정거장, 공항, 우체국 또는 기타 감독 장소에서 진행. 특별한 경우 신고자의 요청에 의해 세관이 동의하면 세관원이 조사신청 장소로 출장하여 검사 • 검사가 필요한 수입화물에 대해 신고를 접수한 후 1일 내에 검사통지서를 발행. 검사는 1~2일 소요되며 경우에 따라 외관조사, 샘플조사, 철저조사 진행 • 세관원이 수입화물 조사시 수화인 혹은 대리통관기업 보관원은 반드시 현장에 있어야 하며, 세관원의 요구에 따라 화물의 이동, 개봉, 재포장 등을 담당 • 세관원은 검사를 진행한 후 검사기록부를 작성하고 수행인원이 서명 날인함. 검사기록부는 시간, 장소, 수출입화물의 수화인, 발행인 혹은 대리인 명칭, 신고화물 상황, 조사화물의 운송포장상황, 화물명칭, 규격 등 기재
관세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에서 국가의 「세관법」에 근거하여 수출입화물에 대해 관세 및 세금징수
통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관은 수입신고 접수후 신고서류 심의, 화물조사, 관세징수 절차를 거쳐 수입화물에 대해 세관의 관리감독 종결. 세관은 수입화물명세서 또는 통관허가증에 통관허가인장을 날인함으로써 통관절차를 마무리하고 화주는 이 인장을 근거로 화물 반출 • 검사가 완료된 후 관세징수가 확인되면 4시간 내에 통관수속 진행

5. 수출입 농산물 검사검역제도

5.1. 법률 및 행정체계

- 중국에서 검사·검역은 일반적으로 수출입 상품 검사(檢驗), 출입국 동식물 검역, 국경 위생검역(檢疫)을 의미함.
- 수출입 농산물의 검사·검역 관련 주요 법령은 「식품안전법」, 「수출입상품검사법」, [수출입상품검사법실시조례], 「출입국동식물검역법」, [국외인종검역심비관리방법(國外引種檢疫審批管理辦法)], [출입국동식물검역법실시조례]임.

표 20. 중국의 수출입 식품 검사·검역 관련 주요 법령

관련 법령	주요 내용
「식품안전법」 食品安全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 및 평가, 식품안전표준, 식품생산경영, 식품검사, 식품수출입, 식품안전사고처리, 감독관리 등의 내용 포함
「수출입상품검사법」 進出口商品檢驗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상품의 검사, 수출상품의 검사, 감독관리, 법률책임 등 규정 • 1989년 2월 21일 제7차 전인대에서 통과되어 1989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02년 4월 28일 제9차 전인대에서 1차 수정안이 통과되어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총칙(1장), 수입상품의 검사(2장), 수출상품의 검사(3장), 관리감독(4장), 법률책임(5장) 등 총 5장 41조로 구성
[수출입상품검사법실시조례] 實施條例進出口商品檢驗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입상품검사법」의 시행규칙 및 시행령에 해당하며, 2005년 8월 10일 국무원령 제447호로 공포되어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 • 총칙(1장), 수입상품의 검사(2장), 수출상품의 검사(3장), 관리감독(4장), 법률책임(5장), 부칙(6장) 등 총 6장 63조로 구성

관련 법령	주요 내용
「출입국동식물검역법」 進出境動植物檢疫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구의 검사·검역 법규에 속하며, 입법 목적은 동물전염병, 기생충병, 식물 위험성병균, 해충, 잡초 및 기타 유해 생물의 전염 방지 • 1991년 10월 30일 제7차 전인대에서 통과되어 주석령 제53호로 공포되었으며, 1992년 4월 1일부터 시행 • 총칙(1장), 입국검역(2장), 출국검역(3장), 국경통과검역(4장), 휴대 및 탁송물검역(5장), 운송수단검역(6장), 법률책임(7장), 부칙(8장) 등 총 8장 50조로 구성
[출입국동식물검역법실시조례] 進出境動植物檢疫法實施條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국동식물검역법」의 시행규칙 및 시행령에 해당하며, 1996년 12월 2일 국무원령 제206호로 공포되어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 • 총칙(1장), 검역 심사 및 비준(2장), 입국검역(3장), 출국검역(4장), 국경통과검역(5장), 휴대 및 탁송물검역(6장), 운송수단검역(7장), 검역감독(8장), 법률책임(9장), 부칙(10장) 등 총 10장 68조로 구성
[국외인종검역심비관리방법] 國外引種檢疫審批管理辦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로부터 들어오는 종자, 묘목 및 기타 번식재료의 검역관리를 강화할 목적으로 [식물검역조례] 제23조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하였으며 1993년 11월 10일 공포([1993]農(農)字第18號)

- 국내 동식물 검사·검역과 관련해서는 [식물검역조례植物檢疫條例], [식물검역조례실시세칙(농업부분)植物檢疫條例實施細則(農業部分)], 「동물방역법動物防疫法」, [동물검역관리방법動物檢疫管理辦法]이 있음

표 21. 중국의 출입국 검사·검역관련 주요 기관 및 업무

행정기관	주요 업무	
국가 품질 감독 검사 검역 총국	검사감독 관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입상품검사법」에 의거 수출입상품(동식물제품 포함) 및 그 포장, 운반도구 검사 및 관리감독 • “출입국검사검역기구 실시 검사검역 출입국상품 목록”에 포함된 상품에 대한 법정검사 및 관리감독
	동식물 검역감독 관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국동식물검역법」에 의거 ①출입국 및 휴대·탁송 동식물과 그 산품, 기타 검역물, ②포장운반동식물 및 그 산품, 기타 검역물의 포장운반 용기, 포장물, ③전염병지역에 온 운송도구, ④법률, 법규, 국제조약, WTO협약규정 또는 무역계약에서 검역을 실시하기로 한 기타 화물과 물품에 대한 검역 및 관리감독
	위생검역 감독관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경위생검역법」에 의거하여 출입국인원, 교통수단, 상차, 화물, 짐, 우편물 등에 대한 위생검역, 전염병모니터링, 위생감독 및 위생처리, 전염병의 유입과 유출 방지

행정기관	주요 업무
수출입식품 안전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안전법」, 「수출입상품검사법」 등에 의거 수출입식품 및 화장품의 안전, 위생, 품질에 대한 검사 및 관리감독, 수출입식품 및 화장품, 그 생산단위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감독 업무 실시 • 수입식품(음료, 주류 포함), 식품첨가제, 식품용기, 포장재료, 식품용 공구 및 설비 검사검역과 관리감독
지방출입국 검사검역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국 검사검역 직능을 이행하기 위해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 전국 31개 성(자치구, 직할시)에 총 35개의 직속 출입국검사검역국 설치 •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 수직적 관리
중국국가인증인가 감독관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1년 인증인가업무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와 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무원에 설립하였으며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 관리하는 사업기관 • 국무원의 수권을 받은 행정관리기관으로서 인증인가업무를 통일적으로 관리감독 • 수출입 인증인가와 수출입 안전품질 허가 및 출입국 검사검역 실험실 등록인증, 수출입식품 위생등록등기, 석외 검사검역, 감정과 인증기구(중외 합자, 합작기구를 포함)의 기술 능력 심사, 수출입 식품과 화장품 생산, 가공업체의 위생 등록등기의 심사과 등록 등 업무 책임
중국국가표준화 관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 관리하는 사업기관 • 국무원의 수권을 받아 표준화업무를 통일적으로 관리감독 • 국가표준화 법률, 법규, 규정과 관련 제도의 초안 작성, 수정과 시행을 책임지며,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의 협조하에 WTO/TBT 협정의 집행에서 관련 표준의 통보와 자문 책임

○ 공무원 직속기관인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AQSIQ)¹⁵⁾이 검사·검역 업무를 총괄하며 각 지방에 설립한 출입국검사검역국이 지역의 수출입 상품의 검사·검역 업무를 수행하는 단일한 행정체계를 가짐.

- 지방 출입국검사검역국은 전국 31개 성(자치구, 직할시)에 35개의 부서가 설치되어 관할구역의 출입국 위생검역, 동식물 검역과 수출입 상품 검사를 책임짐.

15)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AQSIQ)의 설립 과정을 보면 1998년 공무원 행정기관 개혁 과정에서 국가수출입상품검사국과 농업부 동식물검역국, 위생부 위생검역국을 통합하여 국가출입국검사검역국이 설립된 후 2001년 4월 국가품질기술감독국과 국가출입국 검사검역국을 통합하여 수출입상품 검사, 동식물 검역, 출입국 위생검역을 담당하는 중앙정부 행정기관인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을 설립하였음.

- 이외에도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등이 수출입 검사·검역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는 수출입 식의약품 관련 인증·인가 업무를 관리하며,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는 국가 표준화 업무를 통일적으로 관리·감독하고, 무역기술장벽협정(WTO/TBT agreement)의 집행에서 관련 표준의 통보와 자문을 책임짐.

5.2. 수출입 농식품 검사검역 절차 개요

□ 수출입 식품

- 수출입 식품의 검사·검역은 「수출입상품검사법」, [수출입상품검사법실시조례]에 근거하여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과 지방 출입국검사검역국이 주관함.
 - 검사·검역은 신청 및 접수 → 샘플링 또는 표본 추출 → 검사·검역 → 위생 위해처리 → 증서 발급 및 통관 허가 등의 절차로 진행됨.
- 수출입 식품의 검사·검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됨.
 - 첫째, 식품의 영양, 화학 성분 및 특성 등 각종 품질 특성 및 안전, 위생 요구와 조건 등을 검사하는 방법으로 대부분 표본 추출 후 실험실에서 검사를 진행함.
 - 둘째, 저장운송, 하역과정의 상황 및 포장, 운송수단의 적재, 위생조건 등을 검사하는 방법으로 현장에서 주로 진행되며, 일부 항목은 실험실

검사를 병행함.

- 허가증 발급과 통관 허가는 검사·검역기관의 수출입 식품에 대한 검사·검역의 최종 업무로서 주로 허가증 내용 및 증빙서류 심사, 허가증제작, 대조검사, 허가증발급, 통관허가 등의 절차를 포함함

그림 2. 중국의 수출입 식품 검사·검역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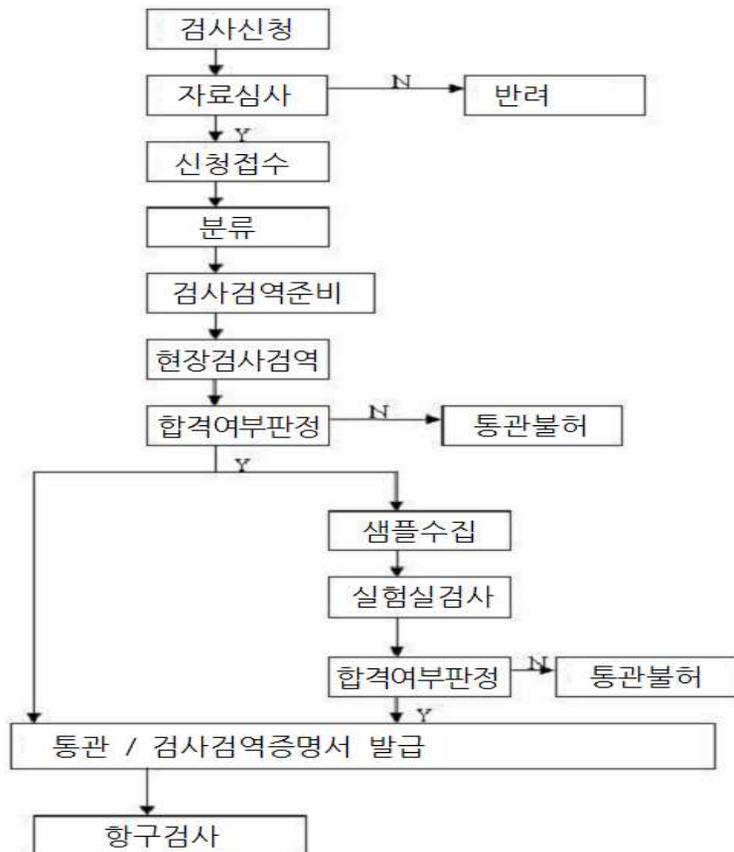


표 22. 수출입 식품 검사·검역의 주요 절차

구분	주요 내용
현장 검사 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식품을 운송하는 선박, 차량, 비행기가 항구(정류장)에 도착한 후, 검사검역인원은 화주 또는 대리인의 검사신청서에 의해 하역하기 이전에 현장에서 식품 및 운송, 하역의 수단과 부두에 대해 검사검역 실시 화물상황을 1차적으로 판단한 후에 샘플링을 진행하며, 현장검사검역 기록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사검역인력을 파견하여 위생등기업체의 위생품질관리체계의 운영 상황을 검사하고, 수출식품 생산가공과정의 위생품질관리현황 검사 핵심가공공정의 위생품질기록 및 제품을 검사하여 안전위생 검증 검사검역인원은 등기업체의 식품위생관리감독에서 위생요구와 위생규범을 위반한 상황을 발견하면 해당 공장에 경고, 생산중지 및 수출검사 신청을 한시적으로 중지하거나 위생등기증서 취소 가능 식품수출 이전에 검사검역인원은 무역계약, 국가표준 또는 수입국가의 요구에 의해 수출식품에 대한 관능검사, 물리화학검사, 안전위생검사와 내외부 포장물감을 진행하며, 합격한 경우 검사검역증서 또는 통관서류 발급하여 수출식품 통관
실험실 검사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입식품에 대해 감각, 물리, 화학, 미생물 등 방법으로 검사검역 진행 수출입식품의 각종 검사검역지표가 중국 또는 계약서 및 구매업체 소재국 정부기관의 관련규정에 부합하는지 판정 실험실 검사검역은 샘플 접수 후 6일 내에 결과 제출. 검사검역 결과는 반드시 검사인원, 교정인원과 실험실 책임자가 각각 날인한 후 현장 검사검역인원에게 인도 실험실 검사원이 검사 진행시 검사방법, 검사자료, 공식 및 계산결과 등을 실험실 검사검역기록서에 기록
검사 검역 결과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 검사검역인원은 위생감독과 실험실 검사결과에 따라 수입식품위생허가증 발급 식품위생표준과 위생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검사결과와 위해정도를 판별해 관련규정에 따라 현장 검사검역인원이 반품, 소각, 기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가공 처리 후 식용 등의 처리의견 제출 수입식품의 검사검역은 마지막 샘플을 수집한 후 7일 이내에 식품위생허가증을 화주, 대리인 또는 검사신청인원에게 발급. 검사검역증서 발급과 함께 화주 또는 검사신청인원에게 검사검역비용 납부통지서를 발급하고 납부시 영수증 발급 중국 위생표준을 위반하거나 계약의 규정 외에 유독유해물질을 발견하거나, 위험성 유해생물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과 수출입식품안전국에 보고해야 하며, 관련 항구의 출입국검사검역국에도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사검역 결과, 관련 법률법규 또는 계약서, 신용장 및 수입국의 관련요구에 부합되는 수출식품에 대해 식품품질증서, 수의위생증서 또는 품질증서를 발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수출 불허 단, 수량, 규격 등이 불합격된 수출식품은 재작업후 검사 허용

□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

-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 검역은 「출입국동식물검역법」, [출입국동식물검역법실시조례]에 근거하여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과 지방 출입국검사검역국이 주관함.
- 수입 동물의 검역은 검사신청 → 현장검역 → 격리검역의 절차를 거치며, 수출 동물의 검역은 검사신청 → 검역 → 증서발급 → 출국의 절차를 거쳐 검역이 진행됨.

표 23. 수입 동물의 검사·검역 주요 절차

구분	주요 내용
검사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은 동물이 항구에 도착하기 이전에 항구소재지 출입국검사검역국에 검사 신청, 동물입국검역허가증 등 관련서류 제출하고 검사신고서 작성
현장 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동물, 동물유전물질이 항구 도착시 동물검역원이 동행하여 현장검역 실시 • 주요 업무: 증빙서류 검사와 동물에 대한 임상검사 및 운송수단과 동물에 의한 오염장소 방역소독 • 현장검역 합격 시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하고, 수입동물 또는 동물유전물질을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격리검역진행
격리 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동물은 반드시 입국 항구에서 격리검역 실시 • 말, 소, 양, 돼지 등 종축 또는 사육동물은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 설립한 수입동물 격리장소에서 격리검역 실시하고, 기타 수입동물은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 비준한 수입동물임시격리장소에서 격리검역 실시 • 격리검역 기간 동안 항구소재지 출입국검사검역국에서 수입동물에 대한 감독관리를 책임지며, 화주 또는 대리인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인원 파견 • 대·중동물의 격리기간은 45일, 소동물은 30일, 격리기간 연장은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의 비준 필요
검역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역처리가 완료된 후 항구소재지 출입국검사검역국에서 검역에 합격한 수입동물이나 동물유전물질에 대해 '동물검역증서'와 관련 증빙서류 발급하여 입국 허용 • “수입동물의 1류, 2류 전염병 및 기생충병 목록” 중 1류 전염병 양성반응을 보인 동물의 경우, 전체 동물 또는 동물유전물질의 입국 금지하고 반송하거나 소각 처리

구분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동물의 1류, 2류 전염병 및 기생충병 목록” 중 2류 전염병 양성반응을 보인 동물의 경우 입국 금지하고 반송하거나 소각처리하며, 동일한 운송수단을 이용한 기타 동물은 우선 입국을 허용하고, 격리 관찰 진행 양성 동물유전물질은 입국을 금지하며 반송하거나 소각 처리 검역결과 검역목록 외의 전염병, 기생충이 발견되었지만 국무원 농업부의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 규정에 따라 반송하거나 소각 처리

표 24. 수출 동물의 검사·검역 주요 절차

구분	주요 내용
검사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은 동물, 동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이 출국하기 전에 반드시 항구소재지 출입국검사검역국에 검사 신청 수출동물은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이 동물 출국 60일 이전에 출국 항구소재지 출입국검사검역국에 사전 통보하고 항구 격리검역 1주일 이전에 검사 신청 수출동물제품은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이 검역상황에 따라 항구소재지 출입국검사검역국에 이보다 앞서 검사신청 가능 검사신청시 화주 또는 대리인은 반드시 무역계약서 또는 관련협약서, 신용장 및 기타 관련증빙서류 제출 필요. 관련 증빙서류가 부족하거나 전염병 발생구역의 동물, 동물제품이거나, 원산지의 전염병 발생상황이 명확하지 않거나 수출제품의 생산, 가공, 저장의 수의 위생조건이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항구소재지 출입국검사검역국에서 검사 신청 미 접수
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구소재지 출입국검사검역국이 검사 신고 접수 후 격리 검역이 필요한 동물에 대해 반드시 격리장소를 확인해야 하며, 동물검역원을 파견하여 수출동물의 임상검사, 실험실검사 진행 수출동물제품의 생산, 가공과정에 대해 검역 감독 실시. 필요한 경우 실험실검사를 진행하거나 혹은 수출동물, 수출동물제품 생산지역의 전염병 발생상황을 조사하여 수출동물의 건강상태, 수출동물제품의 생산, 가공 등의 수의위생조건이 수입국의 요구를 만족하는지 확인 육류 내장류, 조란류, 유제품, 동물, 수산물을 적재한 동물공구, 컨테이너는 반드시 적정한 냉동 및 냉장기능이 있어야 하며, 항구소재지 출입국검사검역국 또는 그 위탁한 검역인원의 감독 하에 비준 또는 인가를 받은 약물을 이용해 소독
증서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국의 수의 주관부서 및 검사검역기관의 관련 규정과 요구에 부합할 경우 항구소재지 출입국검사검역국에서 관련 증서 발급 증서는 동물, 동물제품의 운송수단을 소독한 후 운송하기 이전에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에서 발급

구분	주요 내용
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역에 합격된 수출동물, 동물제품은 반드시 항구소재지 출입국검사검역국 또는 권한을 받은 인원의 감독하에 적재, 운송해야 하며, 규정된 기간 내에 출국 •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은 항구소재지 출입국검사검역국에서 발급한 수출증서 또는 세관에서 인가한 증빙서류를 갖고 세관에 통관 신청 • 수출동물, 동물제품이 검역에 불합격한 경우 출국 불허
검역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운송수단으로 적재, 운송하여 출국할 경우 항구소재지 출입국검사검역국에서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통관 • 운송수단을 변경할 경우, 증빙서류 역시 변경해야 통관 허용 • 유효한 검역증서가 없거나 화물증명이 부합되지 않을 경우 항구소재지 출입국검사검역국에서 상황에 따라 검역 진행

○ 수입 육류 및 육류제품의 검역은 검사신청 → 현장검역(박스검사, 외부포장검사, 화물검사, 소독처리, 입국통관서 발급) → 샘플링 → 실험실 검사·검역 → 증명 발급과 처리 등의 순서로 진행됨.

○ 수출 육류 및 육류제품 검역은 검사신청 → 샘플링 → 실험실 검사·검역 → 증명발급 순서로 진행됨.

- 수출 육류와 육류제품의 사유장과 가공업체는 반드시 검사검역기구에 등록해야함.

표 25. 수입 육류 및 육류제품의 검사·검역 주요 절차

구분	주요 내용
현장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스검사, 외부포장검사, 화물검사 - 화물검사는 1개 컨테이너에 최소 5개 이상의 감각검사포인트를 임의추출하여 부식, 변질, 냄새, 털, 피, 분뇨 등의 불순물과 기타 유해 불순물 검사. 입국금지 화물 여부, 동물사체, 기생충, 이물질 여부 검사 • 소독처리 • 입국통관서 발급

구분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검사검역에 합격한 수입육류와 육류제품에 대해 '입국화물검사검역증명' 발급후 항구소재지 출입국검사검역국에서 지정한 냉장시설에 저장한 후 실험실 검사 진행 • 현장 검사검역에 불합격한 수입육류와 육류제품은 '불합격식품의 처리방법과 그 원칙'에 의거 처리
샘플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국 육류제품 검사검역 관리방법]에 의거 샘플 수집
실험실 검사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생물항목 및 물리화학항목 • '입국동식물검역허가증'과 수입식품안전리스크 경고 통보에 의해 규정되어진 항목 • 수입되는 소시지는 주로 현장 검사검역을 진행하고, 검역허가증과 리스크경고 통보의 요구와 결합하여 측정항목 확정 • 모니터링항목은 돼지고기, 쇠고기, 양고기의 경우 구제역, 가금육제품의 경우 조류독감과 뉴캐슬병으로 구성
증명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검역에 합격할 경우 '입국화물검사검역증명'을 발급하고 생산, 가공, 판매, 사용 허가 • 불합격한 경우 '검사검역처리통지서'를 발급하여 화주 또는 대리인이 규정에 따라 가공처리, 용도 변화, 반품 또는 소각 처리 • 화주가 위생항목의 측정결과를 요구할 경우, '위생증서'를 발급하며, 대외손해배상을 할 경우 '수의 위생증서'를 발급

6. 시사점

- 중국은 WTO 가입을 계기로 대외무역체제를 WTO 규정과 가입의정서에 기초하여 전면적으로 개혁하였음. 무차별원칙, 자유무역원칙 및 공정경쟁 원칙에 기초하여 WTO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 및 법령을 조정 또는 수정하였음. 중국의 대외무역에 관한 기본법인 「대외무역법」도 WTO 가입을 계기로 개정을 추진하여 2004년 4월 개정하였음.

- 「대외무역법」에 근거한 중국의 대외무역제도는 대외무역관리기관에 대한 권한 위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 특징임.
 -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과 그 시행령 및 관리규정에서 대외무역관리의 권한 위임에 대한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중국의 개정 「대외무역법」에서는 대외무역관리에 대한 권한 위임이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아 지방정부나 기타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개입의 여지가 있음.
 - 또한 개정 「대외무역법」 시행을 위한 일괄적인 시행규정이 없고, 무역업, 품목, 세이프가드 조치 등 분야별로 규칙을 제정하는 형식을 위하여 시행규정이 없는 분야가 존재함. 이러한 법률상의 모호성은 비관세장벽으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

- 개정 「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의 주체에 대한 관리에서 대외무역권에 대한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대외무역의 주체를 법인, 기타조직, 개인

으로 규정하였음. 대외무역권에 대한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대외 무역의 주체를 개인으로까지 확대한 것은 그만큼 대외무역의 확대를 의미 하며 WTO 이전 중국 대외무역의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지적되었던 무역권이 개방되었음을 의미함. 특히 대외무역의 주체에 개인이 포함됨에 따라 우리나라 상품의 중국시장 진출기회도 확대되었음을 의미함

- 대외무역 객체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대외무역법」에서 무역의 범위에 물품 및 용역 그리고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포함하여 관 리하고 있으며, 시행령 및 관리규정을 통해 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반면 중국은 대외무역의 객체를 상품, 기술 외에 서비스부문까지 무역 의 범위에 수용함으로써 수용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됨.
 - 그러나 구체적인 하위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서비스무역 규정의 실체성에는 의구심이 존재함.

- 중국은 WTO 가입의정서 제10조에서 ‘보조 및 반덤핑조치 협정(SCM협 정)’ 제1조의 구체적 상품에 대한 보조와 제3조 범위내의 모든 보조를 폐 지할 것을 약속하였음. 또한 제12조(농업) 1항에서 중국은 농산물에 대해 서 어떠한 형태의 수출보조도 유지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였 음. 제12조 2항에서는 농업분야의 국영무역기업(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소 속)과 자신이 경영하는 농업분야의 기타 기업 간 또는 어떠한 기업 간에 진행되는 재정 및 기타 이전에 대해 통지할 것을 약속하였음.

- 중국은 현재 대외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금을 조성하여 수출

입 신용대출, 수출신용보험, 수출세환급 및 대외무역촉진의 기타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지원제도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자칫 수출보조금의 성격으로 지원될 가능성이 높음. WTO에서 수출지원제도로 용인되는 것은 수출보험뿐이므로 다른 지원제도의 운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제시를 요구받고 있음.

- 중국의 농산물 수출입제도도 WTO 가입을 계기로 WTO 규정과 가입의정서에 기초하여 조정 또는 수정되었음. 중국의 농산물 수출입은 대외무역의 기본법인 「대외무역법」을 상위법으로 하여 수출입관리, 관세 및 통관, 검사·검역 등과 관련한 하위 법령(법률 및 행정법규)체계를 갖추었음.
- 중국의 농산물 수출입제도는 전반적으로 WTO 규정에 부합하는 제도적 틀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다만 법률 또는 법규의 모호성과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합리성과 투명하지 않은 절차 등에 대해서는 다수의 대 중국 농산물 수출국들이 비관세장벽으로 지목하고 있음.
 - 특히 중국이 WTO 가입 이후 농식품의 수출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유럽, 미국 등 주요 중국산 농식품 수입국가의 중국산 수입농식품에 잔류농약이 검출되는 등 사회문제가 야기되면서 국가신인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하에 식품안전 관련 법률이나 기준, 인증제도 등을 강화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SPS 조치 및 TBT 조치들이 주요한 비관세장벽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예를 들어 2009년 2월 제정된 「식품안전법」(2009.2 공포)이 식품수출입과 관련하여 제66조의 수입포장식품에 대한 중문 라벨 및 중문 설명서 첨부 규정은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인식되고 있음.

〈부록 1〉

대외무역법 (주석령 제15호)

1994년 5월 12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 통과
2004년 4월 6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8차 회의 수정

제1장 총 칙

- 제1조 대외개방의 확대, 대외무역의 발전과 대외무역질서의 수호, 대외무역 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 및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본 법률을 제정한다.
- 제2조 본 법률은 대외무역 및 대외무역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용된다. 본 법률에서 대외무역이라 함은 상품 수출입, 기술 수출입과 국제서비스 무역을 말한다.
- 제3조 국무원의 대외무역 주관부처는 본 법률에 의거 전국의 대외무역사업을 관장한다.
- 제4조 국가는 통일적인 대외무역제도를 실행하고 대외무역의 발전을 권장하며 공평하고 자유로운 무역질서를 수호한다.
- 제5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호혜평등의 원칙에 의거하여 기타 국가 및 지역과의 무역관계를 촉진·발전시키며 관세동맹협정, 자유무역협정 등 지역경제무역협정을 체결하거나 가입하여 지역경제조직에 참여한다.
- 제6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대외무역 관련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 협정

에 근거하여 타 체결국이나 참가국에게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등 대우를 부여하거나 호혜, 대등 원칙에 의해 상대방에게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등 대우를 부여한다.

제7조 어떤 국가나 지역이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해 무역관련 차별적인 금지·제한 및 기타 유사조치를 취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은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 상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장 대외무역사업자

제8조 본 법률에서 대외무역 사업자라 함은 법에 따라 공상등록 또는 영업수속을 하였고 본 법률과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대외무역 사업활동에 종사하는 법인,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9조 상품수출입 또는 기술수출입에 종사하는 대외무역사업자는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처 또는 주관부처가 위탁한 기구에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처가 규정한 등록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록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처가 규정한다. 대외무역사업자가 규정대로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세관은 수출입상품의 통관신고 및 통과수속을 해주지 않는다.

제10조 국제서비스무역의 종사는 본 법률과 기타 관련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대외공사하청과 대외노무협력에 종사하는 기관은 상응한 자질(資質) 또는 자격을 가져야 한다. 구체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11조 국가는 일부 상품의 수출입에 대해 국영무역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국영무역관리를 실시하는 상품의 수출입업무는 권한을 부여받은 기업만이 경영할 수 있지만 국가가 허용한 일부 수량의 국영무역관리 상품의 수출입업무는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기업이 경영할 수 있는 것은 제외한다. 국영무역관리를 실시하는 상품과 권한을 부여받은 경영기업의 리스트는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처가 국무원 기타 관련 부서와 확정, 조정 및 공표한다.

본 조항 제1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사사로이 국영무역관리를 실시하는 상품을 수출입했을 경우 세관은 통과시키지 않는다.

제12조 대외무역 사업자는 타인의 위탁을 받고 경영범위 내에서 대외무역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

제13조 대외무역사업자는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처 또는 국무원 기타 관련 부처가 법에 의해 제정한 규정에 따라 관련 부처에 자신의 대외무역 사업활동 관련문서 및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부처는 제공자의 상업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3장 상품수출입과 기술수출입

제14조 국가는 상품 및 기술의 자유로운 수출입을 허가한다. 단, 법률, 행정법규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5조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처는 수출입모니터링의 수요에 기초하여 수출입이 자유로운 일부 상품에 대해서 수출입자동허가를 실시하고 리스트를 공표한다.

자동허가를 실시하는 수출입상품 관련 바이어, 납품자는 세관의 통관수속을 할때 사전에 자동허가신청을 하였을 경우, 국무원 대외무

역 주관부처 또는 위탁한 기구는 허가를 해야 한다. 자동허가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세관은 통과시키지 않는다.

자유로운 수출입에 속하는 기술은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처 또는 위탁한 기구에 계약등록을 해야 한다.

제16조 국가는 아래 원인에 근거해 관련 상품, 기술의 수입 또는 수출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1. 국가 안전, 사회의 공공이익 또는 공중도덕을 수호하기 위하여 수출이나 수입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
2. 인류 건강이나 안전 보호, 동물·식물의 생명이나 건강 보호, 환경 보호를 위하여 수입이나 수출을 제한 또는 금지해야 할 경우
3. 황금 또는 백은 수출입과 관련한 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입 또는 수출 제한이 필요한 경우
4. 국내공급이 부족하거나 국내자원의 고갈을 유효하게 방지하기 위해 수출제한이 필요한 경우
5. 수출대상 국가나 지역의 시장물량의 한계로 수출제한이 필요한 경우
6. 수출경영질서가 심각하게 혼란하여 수출제한이 필요한 경우
7. 국내 특정산업의 육성 또는 육성의 가속화를 위해 수입제한이 필요한 경우
8. 어떠한 형태의 농업, 목축업, 어업 제품이든 수입제한이 필요한 경우
9. 국가의 국제금융에서의 위상과 국제수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수입제한이 필요한 경우
10.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해 수출이나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해야 할 기타 경우

11.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 협정에 의해 수출이나 수입 제한이 필요한 기타 경우

제17조 국가는 핵분열, 핵반응물질 또는 이런 물질을 파생하는 물질과 관련된 상품, 기술의 수출입 및 무기, 탄약 또는 기타 군용 물자와 관련된 수출입에 대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국가안전을 수호할 수 있다. 전쟁시기 또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는 상품, 기술 수출입 분야에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처는 국무원 관련 부처와 협동하여 본 법률 제16조와 제17조가 규정한 범위내에서 앞 조항이 규정한 리스트 이외의 특정 상품, 기술의 수입이나 수출을 임시로 제한 또는 금지할 수 한다.

제19조 국가는 수입이나 수출을 제한하는 상품에 대해 쿼터, 허가증 등 방식을 실시하여 관리한다. 수입이나 수출을 제한하는 기술에 대해 허가증관리를 실시한다.

쿼터, 허가증 관리를 실시하는 상품, 기술은 국무원 규정에 따라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처 또는 동 부처와 국무원 관련부처의 허가를 받은 뒤에야 수입이나 수출이 가능하다.

국가는 일부 상품에 대해 관세쿼터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 수출입상품의 쿼터, 관세쿼터는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처 또는 국무원 관련 부처가 각자의 직책범위 내에서 공정·공개·공평 및 효율의 경쟁의 원칙에 따라 분배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21조 국가는 통일적인 상품합격평가제도를 실시하며, 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상품에 대해 인증, 검사, 검역을 실시한다.

제22조 국가는 수출입상품에 대해 원산지관리를 한다. 구체방법은 국무원이

따로 제정한다.

제23조 문화재, 야생동물, 식물 및 그 상품 등은 기타 법률이나 행정법규에 수출입의 제한이나 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 관련 법률이나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장 국제서비스무역

제24조 중화인민공화국이 국제서비스분야에서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조약, 협정에서 한 약속에 의해 조약체결 상대방이나 참가국에게 시장진입을 허락하거나 내국민대우를 부여한다.

제25조 공무원 대외무역 주관 부처와 공무원 관련 부처는 본 법률과 기타 관련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국제서비스무역을 관리한다.

제26조 국가는 아래 원인에 근거해 관련 국제서비스무역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1. 국가안전, 사회공공이익, 공중도덕의 수호를 위하여 제한 또는 금지해야 할 경우
2. 인류 건강 또는 안전을 보호, 동물,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 환경보호를 위하여 제한 또는 금지해야 할 경우
3. 국내 특정 서비스산업의 육성 또는 육성의 가속화를 위하여 제한 또는 금지해야 할 경우
4. 국가의 외환수지 균형 유지를 위하여 제한 또는 금지해야 할 경우
5.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해 제한 또는 금지해야 할 기타 경우
6. 우리나라가 체결하거나 참가한 국제조약, 협정의 규정에 근거해 제한 또는 금지해야 할 기타 경우

제27조 국가는 군사와 관련된 국제서비스무역 및 핵분열, 핵반응 물질 또는 이런 물질을 파생하는 물질과 관련된 국제서비스무역에 대하여 모든 필요조치를 취하여 국가의 안전을 수호할 수 있다.

전쟁시기 또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는 국제서비스 무역분야에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8조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처는 국무원 기타 관련 부처와 함께 본 법률 제26조, 제27조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국제서비스무역 시장진출 허가리스트를 제정, 조정 및 공표한다.

제5장 대외무역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보호

제29조 국가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법률, 행정법규에 의해 대외무역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

수입한 상품이 지적재산권을 침해 및 대외무역질서에 해를 끼칠 경우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처는 일정기간 동안 침해자가 생산, 판매한 관련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0조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피 허가자가 허가계약에 있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유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제지, 강제적으로 일괄적인 허가를 하는 것, 허가계약서에 배타적인 반환조건을 규정하는 등 한 가지 행위가 있으면서 대외무역의 공정한 경쟁질서에 해를 끼칠 경우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피해를 해소할 수 있다.

제31조 기타 국가 또는 지역이 지적재산권 보호분야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법인, 기타 조직 또는 개인에게 내국민대우를 부여하지 않거나 중화

인민공화국에서 온 상품, 기술 또는 서비스 및 그 제공자에게 충분하고 유효한 지적재산권보호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처는 본 법률 및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참가한 국제조약, 협정에 근거하여 그 국가나 지역의 무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장 대외무역질서

제32조 대외무역활동과정에 반독점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대외무역활동에서 독점행위로 시장의 공평한 경쟁에 피해를 줄 경우 반독점법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앞 조항의 위법행위가 있고 대외무역질서에 피해를 줄 경우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그 피해를 해소할 수 있다.

제33조 대외무역활동과정에 부정당한 저가로 상품판매, 내통하여 응찰, 허위 광고 발표, 상업적인 수뢰 등 부정당한 경쟁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대외무역활동과정에 부정당한 경쟁행위가 있을 경우, 반부정당경쟁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앞 조항의 위법행위가 있고 대외무역질서에 피해를 줄 경우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처는 동 사업자의 관련 상품, 기술 수출입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피해를 해소할 수 있다.

제34조 대외무역과정에 아래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수출입 원산지표기의 위조·변조, 원산지 증명서, 수출입 허가증과 쿼터증명 또는 기타 수출입증명서류의 위조, 변조 또는 매매

2. 수출환급세 사취
3. 밀수
4.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인증, 검사, 검역 회피
5.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하는 기타 행위

제35조 대외무역사업자는 대외무역 사업활동에서 국가의 외환관리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36조 본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대외무역질서에 피해를 줄 경우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처는 사회에 공고할 수 있다.

제7장 대외무역조사

제37조 대외무역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처는 단독 또는 국무원 관련 부처와 협동하여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아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상품수출입, 기술수출입, 국제서비스무역이 국내산업 및 그 경쟁력에 대한 영향
2. 관련 국가 또는 지역의 무역장벽
3. 법에 따라 반덤핑, 반보조 또는 세이프가드 등 대외무역구제조치의 실시를 확정하기 전에 조사해야 할 사항
4. 무역구제조치를 회피한 행위
5. 대외무역중의 국가안전이익과 관련된 사항
6. 본 법률 제7조, 제29조 제2항,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항, 제33조 제3항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조사해야 할 사항
7. 대외무역질서에 영향을 주어 조사해야 할 기타 사항

제38조 대외무역조사를 가동하면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처가 공고를 낸다. 조사는 서면설문, 청문회개최, 현지조사, 위탁조사 등 방식으로 진행한다.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처는 조사결과에 따라 보고를 제출하거나 판정을 내림과 동시에 공고를 발표한다.

제39조 관련 기관과 개인은 응당 대외무역조사에 호응, 협조해야 한다.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처와 국무원 관련 부처 및 직원은 대외무역 조사를 할 경우 자기가 알고 있는 국가비밀과 상업비밀을 고수할 의무가 있다.

제8장 대외무역구제

제40조 국가는 대외무역조사결과에 따라 적당한 무역구제조치를 취하여 국가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제41조 기타 국가나 지역의 상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덤핑방식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유입하여 이미 육성된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손해를 초래하거나 실질적인 손해의 위협 혹은 이미 육성된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장애를 야기할 경우, 국가는 반덤핑조치를 통해 이런 손해, 손해위협, 장애를 제거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제42조 기타 국가나 지역의 제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제3시장에 수출되어 우리나라에 이미 육성된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손해나 실질적인 손해의 위협을 초래하거나 국내산업 육성에 실질적인 장애를 야기할 경우, 국내산업의 신청에 의해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처는 동 제3국 정부와 함께 협상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3조 수입상품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어떤 형식이든지 수출국이나 지역의 전문보조를 받고 이미 육성된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손해나 실질적인 손해의 위협을 초래 혹은 이미 육성된 관련 산업에 실질적인 장애를 야기할 경우, 국가는 반(反)보조조치를 취하여 이런 손해, 손해위협, 장애를 제거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 제44조 수입제품 수량의 대폭적인 증가로 동종의 제품 생산 또는 직접경쟁 제품의 국내산업에 심각한 손해 또는 심각한 손해의 위협을 초래할 경우 국가는 필요한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하여 이런 손해 또는 손해의 위협을 해소 또는 경감함과 아울러 동 산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5조 중화인민공화국경내에 기타 국가나 지역의 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 증가로 국내의 동종 또는 직접경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에 손해 또는 손해의 위협을 초래할 경우 국가는 필요한 구제조치를 취하여 이런 손해 또는 손해의 위협을 해소 또는 경감할 수 있다.
- 제46조 제3국의 수입규제로 모 종의 제품이 중화인민공화국으로의 유입이 대량 증가하여 기존의 국내산업에 손해 또는 손해의 위협을 초래하거나 기존의 산업에 장애를 줄 경우 국가는 필요한 구제조치를 취하여 동제품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 제47조 중화인민공화국과 경제무역조약, 협정을 체결한 국가나 지역이 조약이나 협정을 위반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이 동 조약, 협정에 따라 향유하는 이익이 상실 또는 피해를 보게 하거나 조약 또는 협정의 목표 실현을 저해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해당 국가나 또는 지역의 정부가 적당한 구제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함과 아울러 관련 조약, 협정에 따라 관련 의무를 중지할 수 있다.

제48조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처는 본 법률 및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외무역의 양자 또는 다자간 협의, 회담 및 분쟁을 해결한다.

제49조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처와 국무원 관련 부처는 상품수출입, 기술수출입, 국제서비스무역의 사전정보 응급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대외무역과정의 돌발 및 이상 상황에 대응하고 국가의 경제안전을 수호해야 한다.

제50조 국가는 본 법률 규정을 회피한 무역구제조치행위에 대해 필요한 반(反)회피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장 대외무역촉진

제51조 국가는 대외무역발전전략을 제정하고 대외무역촉진메커니즘을 구축·개선한다.

제52조 국가는 대외무역 발전 수요에 따라 대외무역서비스를 위한 금융기구를 구축·개선하며, 대외무역 발전기금, 위험기금을 설립한다.

제53조 국가는 수출입 신용대출, 수출신용보험, 수출환급세금 및 대외무역촉진의 기타 방식을 통해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제54조 국가는 대외무역 공용정보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외무역사업자와 기타 사회대중에게 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제55조 국가는 조치를 취해 대외무역사업자의 국제시장개발을 장려하며, 대외투자, 대외공사청부 및 노무협력 등 다양한 형식으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제56조 대외무역사업자는 법에 따라 관련 협회, 상회를 설립하거나 참여할 수 있다.

관련 협회, 상회는 법률과 행정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정관에 따라 그 회원에게 대외무역관련 생산, 판매, 정보, 교육 등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율과 자율역할을 발휘하며, 법에 따라 대외무역 구제조치관련 신청을 하며, 회원과 업계의 이익을 수호하며, 정부 관련부처에 대외무역 관련 건의를 하며 적극적으로 대외무역 촉진활동을 수행한다.

제57조 중국 국제무역 촉진조직은 정관에 의해 대외연락, 전람회 개최, 정보 제공, 자문서비스 및 기타 대외무역촉진활동을 한다.

제58조 국가는 중소기업의 대외무역을 지원 및 촉진한다.

제59조 국가는 민족자치구나 경제가 발달하지 못한 지역의 대외무역발전을 지원, 촉진한다.

제10장 법률책임

제60조 본 법률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권 없이 사사로이 국영무역관리를 실시하는 상품을 수입할 경우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처 또는 국무원 기타 관련 부처는 5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행정처벌결정의 발효일부터 3년내에 위법행위자의 국영무역관리상품의 수출입업무종사 신청을 수리하지 않거나, 이미 취득한 기타 국영무역관리상품 수출입종사의 수권을 취소할 수 있다.

제61조 수출입 금지 상품을 수출입하였거나, 수출입이 제한되는 상품을 무허가로 사사로이 수출입하였을 경우 세관이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 처벌한다. 범죄가 성립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수출입이 금지된 기술 또는 수출입이 제한되는 기술을 무허가로 사사로이 수출입하였을 경우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 처벌한다. 행정법규의 규정이 없는 경우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처가 시정토록 명령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함과 아울러 불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1만 원 이하일 경우 1만 원 이상 5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가 성립될 경우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앞 두 조항이 규정한 행정처벌결정 발효일이나 형사처벌결정 발효일 부터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처나 국무원 기타 관련 부처는 3년내에 불법행위자가 제출한 수출입쿼터 또는 허가증의 신청을 수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자가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한 내에 관련 상품 또는 기술의 수출입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제62조 금지된 국제서비스무역에 종사하거나 무허가로 사사로이 제한된 국제서비스무역에 종사할 경우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이 없는 경우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처가 시정토록 명령하며 불법소득을 몰수함과 아울러 불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1만 원 이하일 경우 1만 원 이상 5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가 성립될 경우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처는 불법행위자가 앞 조항이 규정한 행정처벌결정 발효일이나 형사처벌 판결 발효일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한 내에 관련된 국제서비스무역의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제63조 본률 법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면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

라 처벌한다. 범죄가 성립될 경우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처는 불법행위자가 앞 조항이 규정한 행정처
벌결정 발효일이나 형사처벌판결 발효일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한내에 관련된 대외무역의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제64조 본 법률 제61조부터 제63조의 규정에 의해 관련 대외무역활동종사가
금지된 경우, 금지기한내 세관은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처가 내린
금지결정에 근거하여 동 대외무역사업자의 상품수출입 관련 통관신
고 및 통과수속을 해주지 않으며, 외환관리부문이나 외환지정은행은
결재, 외환매매수속을 해주지 않는다.

제65조 본 법률에 의해 대외무역관리업무를 하는 부처의 직원이 직무태만,
부정행위 혹은 직권 남용으로 범죄가 성립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
임을 추궁하며,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시에는 행정처분을 한다.

본 법률에 의해 대외무역관리업무를 하는 부처의 직원이 직무상의
이점을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수수하거나 불법적으로 타인의 이익
을 도모할 목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수취하여 범죄가 성립되었을 시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시에는 법에 의해 행정
처분을 한다.

제66조 대외무역경영의 당사자는 본 법률에 의해 대외무역관리사업부처가
내린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할 경우 법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
하거나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1장 부 칙

제67조 균수품, 핵분열과 핵반응 물질이나 이런 물질을 파생하는 물질과 관

련된 대외무역관리 및 문화제품의 수출입 관리는 법률, 행정법규의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

제68조 국가는 국경도시와 인접국가의 국경도시간의 무역, 민간국경 시장거래에 대해서는 신축성 있는 조치를 취하며 우대와 편의를 제공한다. 구체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69조 중화인민공화국 단독관세지역은 본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70조 본 법률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록 2〉

화물수출입관리조례
(국무원령 제332호)

(2001년 10월 31일 국무원 제46차 상무위원회 통과)

제1장 총 칙

- 제1조 화물 수출입관리를 규범화하고 화물 수출입질서를 수호하고 대외무역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법」(이하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 제2조 화물을 중화인민공화국 세관경내로 수입하거나 화물을 중화인민공화국 세관경외로 수출하는 활동에 종사할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3조 국가는 화물 수출입에 대하여 통일적 관리제도를 실시한다.
- 제4조 국가는 화물의 자유로운 수출입을 허가하고 법으로 화물 수출입무역의 공정성과 질서를 수호한다.
법률, 행정법규가 수출입을 명확히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외에는 어떤 단위나 개인은 화물 수출입의 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설정, 유지하지 못한다.
- 제5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화물 수출입무역에서 체결했거나 참가한 국제조약이나 협정에 근거하여 기타 체결측 또는 참가측에 최혜국대우나 국민대우를 부여 또는 호혜·대등원칙에 따라 상대측에 최혜국대우나

국민대우를 준다.

제6조 화물 수출입무역에서 어떤 국가나 지구가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하여 차별시하는 금지, 제한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은 실제 상황에 따라 당해 국가나 지구에 대하여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국무원 대외경제무역주관부서(이하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라 함)는 대외무역법 및 이 조례 규정에 따라 전국의 화물 수출입무역업무를 주관한다.

국무원 관련부서는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과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화물 수출입무역관리 관련업무를 책임진다.

제2장 화물 수출입관리

제1절 수입금지 화물

제8조 대외무역법 제17조가 규정한 상황중의 하나에 속하는 화물의 수입을 금지한다. 기타 법률, 행정법규가 수입을 금지한다고 규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른다.

수입금지 화물목록은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가 국무원 관련부서와 회동하여 제정, 조정하고 공시한다.

제9조 수입금지에 속하는 화물은 수입하지 못한다.

제2절 수입제한 화물

제10조 대외무역법 제16조 제(1),(4),(5),(6),(7)호가 규정한 상황중 하나에 속하는 화물은 수입을 제한한다. 기타 법률, 행정법규가 수입을 제한한다고 규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른다.

수입제한 화물목록은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가 국무원 관련부서와 회동하여 제정, 조정하고 공시한다.

수입제한 화물목록은 적어도 실시일 21일전에 공시하여야 한다. 긴급상황에서도 실시일 전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11조 국가규정에 수량을 제한하는 수입제한 화물은 쿼터관리를 실시하고 기타 수입제한 화물은 허가증관리를 실시한다.

관세쿼터관리를 실시하는 수입화물은 이 장 제4절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2조 쿼터관리를 실시하는 수입제한 화물은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와 국무원 경제관리 관련부서(이하 수입쿼터 관리부서라 통칭함)가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구분에 따라 관리한다.

제13조 쿼터관리를 실시하는 수입제한 화물에 대하여 수입쿼터 관리부서는 매년 7월 31일 전에 차연도 수입쿼터 총량을 공시하여야 한다.

쿼터신청인은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 기간에 수입쿼터 관리부서에 차연도 수입쿼터를 신청하여야 한다.

수입쿼터 관리부서는 매년 10월 31일 전에 차연도 쿼터액을 쿼터신청인에게 분배해 주어야 한다.

수입쿼터 관리부서는 수요에 따라 연도 쿼터총량을 조정하고 실시일 21일 전에 공시할 수 있다.

제14조 쿼터는 모든 신청을 통일처리하는 방법으로 분배할 수 있다.

제15조 모든 신청을 통일처리하는 방법으로 쿼터를 분배할 경우 수입쿼터 관리부서는 규정된 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내에 쿼터방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 수입쿼터 관리부서가 쿼터 분배시에는 아래의 요인들을 감안하여야

한다.

- (1) 신청인의 수입실적
- (2) 이전에 배당된 쿼터의 이용여부
- (3) 신청인의 생산능력, 경영규모, 판매상황
- (4) 신규 수입경여자의 신청상황
- (5) 쿼터수량 신청상황
- (6) 감안하여야 할 기타 요인

제17조 수입경영자는 수입쿼터 관리부서가 발급한 쿼터증명서에 의하여 세관에서 통관수속을 한다.

국무원 경제관리 관련부서는 연도 쿼터총량, 분배방안, 쿼터증명서 실제 발급상황을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8조 연도쿼터를 다 사용하지 못한 쿼터 소지자는 사용하지 못한 쿼터를 당해 9월 1일 전에 수입쿼터 관리부서에 반환하여야 한다. 기간내에 반환하지 않고 당해 연말까지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입쿼터 관리부서는 그의 차연도 쿼터를 공제할 수 있다.

제19조 허가증관리를 실시하는 수입제한 화물의 수입경영자는 국무원 대외 무역 주관부서 또는 국무원 관련부서(이하 수입허가증관리부서라 통칭함)에 신청하여야 한다. 수입허가증관리부서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수입경영자는 수입허가증관리부서가 발급한 수입허가증에 의하여 세관에서 통관수속을 한다.

전 항에서 지칭한 수입허가증에는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수입허가성격을 갖는 각종 증명서, 서류가 망라된다.

제20조 수입쿼터 관리부서와 수입허가증관리부서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구

체적 관리방법을 제정하고 신청인의 자격, 신청수리부서, 심사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함과 아울러 실시전에 공시하여야 한다.

신청수리부서는 일반적으로 한 개 부서이다.

수입쿼터 관리부서와 수입허가증관리부서가 신청인에게 요구하는 제출서류는 관리에 필수적인 서류와 자료에 국한하여야 하며 미세하고 비실질적인 오류를 이유로 신청수리를 거절하지 말아야 한다.

제3절 자유수입 화물

제21조 자유수입 화물수입은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22조 화물수입상황 감독의 필요로 하여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와 국무원 경제관리 관련부서는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구분에 따라 일부분 자유수입화물에 대하여 자동수입허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자동수입허가관리를 실시하는 화물목록은 실시일 21일 전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23조 자동수입허가관리를 실시하는 화물 수입은 모두 허용된다.

제24조 자동수입허가관리를 실시하는 화물 수입시, 수입경영자는 세관에 통관신고를 하기 전에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 또는 국무원 경제관리 관련부서에 자동수입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 또는 국무원 경제관리 관련부서는 신청을 접수한 즉시 자동수입허가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특수상황에서도 최고 1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수입경영자는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 또는 국무원 경제관리 관련부서가 발급한 자동수입허가증명에 의하여 세관에서 통관수속을 한다.

제4절 관세쿼터관리 화물

제25조 관세쿼터관리를 실시하는 화물목록은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가 국

무원 경제관리 관련부서와 회동하여 제정, 조정하고 공시한다.

제26조 관세쿼터내에서 수입하는 화물은 쿼터내 세율에 따라 관세를 납부하고 관세쿼터외로 수입하는 화물은 쿼터외 세율에 따라 관세를 납부한다.

제27조 수입쿼터 관리부서는 매년 9월 15일부터 10월 14일 기간에 차연도 관세쿼터총량을 공시하여야 한다.

쿼터신청인은 매년 10월 15일부터 10월 30일 기간에 수입쿼터 관리부서에 관세쿼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8조 관세쿼터는 모든 신청을 통일처리하는 방법으로 분배할 수 있다.

제29조 모든 신청을 통일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관세쿼터를 분배할 경우 수입쿼터 관리부서는 매년 12월 31일 전에 쿼터 발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0조 수입경영자는 수입쿼터 관리부서가 발급한 세관쿼터증명에 의하여 세관에서 관세쿼터내 화물의 통관수속을 한다.

국무원 경제관리 관련부서는 적시에 연도 관세쿼터총량, 분배방안 및 관세쿼터증명 실제 발급상황을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1조 관세쿼터 소지자는 당 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쿼터를 당해 9월 15일 전으로 수입쿼터 관리부서에 반환하여야 한다. 기한내에 반환하지 않았고 당해 연말까지 다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수입쿼터 관리부서는 차연도 쿼터에서 상응하게 공제할 수 있다.

제32조 수입쿼터 관리부서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관세쿼터 관련 구체 관리방법을 제정하고 신청인의 자격, 신청수리부서, 심사원칙 및 절차 등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과 아울러 실시전에 공시하여야 한다.

신청수리부서는 일반적으로 한 개 부서이다.

수입쿼터 관리부서가 신청인에게 요구하는 제출서류는 관세쿼터관리 보장에 필수적인 서류와 자료에 국한하여야 하며 미세하고 비실질적인 오류를 이유로 신청수리를 거절하지 말아야 한다.

제3장 화물 수출관리

제1절 수출금지 화물

제33조 대외무역법 제17조가 규정한 상증중 하나에 속하는 화물은 수출금지이다. 기타 법률, 행정법규가 수출금지를 규정한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수출금지 화물목록은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가 국무원 관련부서와 회동하여 제정, 조정하고 공시한다.

제34조 수출금지 화물은 수출하지 못한다.

제2절 수입제한 화물

제35조 대외무역법 제16조 제(1), (2), (3), (7)호가 규정한 상황중 하나에 속하는 화물은 수출을 제한한다. 기타 법률, 행정법규가 수출을 제한한다고 규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른다.

수출제한 화물목록은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가 국무원 관련부서와 회동하여 제정, 조정하고 공시한다.

수출제한 화물목록은 적어도 실시 21일 전에 공시하여야 한다. 긴급 상황에서도 실시일 전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36조 국가규정에 수량을 제한하는 수출제한 화물은 쿼터관리를 실시하고 기타 수출제한 화물은 허가증관리를 실시한다.

- 제37조 쿼터관리를 실시하는 수출제한 화물은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와 국무원 경제관리 관련부서(이하 수출쿼터 관리부서라 통칭함)가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구분에 따라 관리한다.
- 제38조 쿼터관리를 실시하는 수출제한 화물에 대하여 수출쿼터 관리부서는 매년 10월 31일 전에 차연도 수출쿼터총량을 공시한다.
 쿼터신청인은 매년 11월 1일부터 11월 15일 기간에 수출쿼터 관리부서에 차연도 수출쿼터를 신청하여야 한다.
 수출쿼터 관리부서는 매년 12월 15일 전에 차연도 쿼터를 신청인에게 분배해 주어야 한다.
- 제39조 쿼터는 직접 분배하는 방식으로 분배할 수도 있고 입찰 등 방법으로 분배할 수도 있다.
- 제40조 수출쿼터 관리부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내, 12월 15일 전으로 쿼터발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41조 수출경영자는 수출쿼터 관리부서가 발급한 쿼터증명에 의하여 세관에서 통관수속을 한다.
 국무원 경제관리 관련부서는 적시에 연도 쿼터총량, 분배방안 및 쿼터증명 실제 발급상황을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42조 쿼터소지자는 그 연도 쿼터를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 당해 10월 31일 전으로 사용하지 못한 쿼터를 수출쿼터 관리부서에 반환하여야 한다. 규정기간에 반환하지 않고 연말까지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출쿼터 관리부서는 차연도 그의 쿼터에서 상응하게 공제할 수 있다.
- 제43조 허가증관리를 실시하는 수출제한 화물 수출경영자는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 또는 국무원 경제관리 관련부서(이하 수출허가증관리부서라 통칭함)에 신청하여야 한다. 수출허가증관리부서는 신청 접수일

로부터 30일 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수출경영자는 수출허가증관리부서가 발급한 수출허가증에 의하여 세관에서 통관수속을 한다.

전 항에서 수출허가증이라 함은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수출허가성격을 갖는 각종 증명, 서류를 포함한다.

제44조 수출쿼터 관리부서와 수출허가증관리부서는 이 조례 규정에 근거하여 구체 관리방법을 제정하고 신청인의 자격, 신청수리부서, 심사원칙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과 아울러 실시 전에 공시하여야 한다.

신청수리부서는 일반적으로 한 개 부서이다.

수출쿼터 관리부서와 수출허가증관리부서가 신청인에게 요구하는 제출서류는 관리보장에 필수적인 서류와 자료에 국한하여야 하며 미세하고 비실질적인 오류를 이유로 신청수리를 거절하지 말아야 한다.

제4장 국영무역과 지정경영

제45조 국가는 일부분 화물에 대하여 국영무역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국영무역관리 화물목록은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가 국무원 경제관리 관련부서와 회동하여 제정, 조정하고 공시한다.

제46조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와 국무원 경제관리 관련부서는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구분에 따라 국영무역기업 명부를 확정하고 공시한다.

제47조 국영무역관리를 실시하는 화물에 대하여 국가는 비국영무역기업이 일부 수량을 수출입하도록 허용한다.

제48조 국영무역기업은 매 반년에 1회씩 국영무역관리 화물의 매입가격, 매출가격 등 관련 정보를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에 제공하여야 한다.

- 제49조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는 수출입경영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일부분 화물에 대하여 지정경영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지정경영관리를 실시하는 수출입 화물목록은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가 제정, 조정하고 공시한다.
- 제50조 지정경영기업을 확정하는 구체기준과 절차는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가 제정하고 실시전에 공시한다.
지정경영기업 명부는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가 공시한다.
- 제51조 이 조례 제47조가 규정한 상황을 제외하고 국영무역기업 명부와 지정경영기업 명부에 없는 기업이나 기타 조직은 국영무역관리와 지정경영관리를 실시하는 화물의 수출입무역에 종사하지 못한다.
- 제52조 국영무역기업과 지정경영기업은 정상적 상업조건에 의거하여 경영활동에 종사하여야 하며 비상업적 요인으로 공급상을 선택하거나 비상업적 요인으로 기타 기업 또는 조직의 위탁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장 수출입 감독과 임시조치

- 제53조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는 화물 수출입상황의 감독, 평가를 책임지고 정기적으로 국무원에 화물 수출입상황을 보고하며 건의를 제출한다.
- 제54조 국가는 국제수지의 균형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제수지가 엄중히 실조되거나 엄중한 실조위험을 받는 경우, 또는 경제발전계획 실시에 수용한 외환비축수준을 수호하기 위하여 수입화물의 가격 또는 수량에 대한 임시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55조 국가는 국내 특정산업의 구축 또는 그 구축을 가속화하 위하여 현유 조치로는 실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수입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임

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6조 국가는 하기 조치중 1개 또는 몇 개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시에는 임의의 형태의 농산물, 수산물에 대하여 수입제한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동일제품 또는 직접경쟁제품의 국내생산 또는 판매 제한조치
- (2) 소비보조형식을 통하여 국내 과잉을 제거하는 동일제품 또는 직접경쟁제품
- (3) 전적으로 또는 주요하게 당해 수입농산물, 수산물에 의하여 조성한 동물제품의 생산 제한조치.

제57조 하기 상황중 하나가 발생할 경우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는 특정화물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엄중한 자연재해 등 이상 상황이 발생하여 수출을 제한 또는 금지해야 할 경우
- (2) 수출경영질서가 엄중하게 혼란하여 수출을 제한해야 할 경우
- (3) 대외무역법 제16조, 제17조 규정에 따라 수출을 제한 또는 금지해야 할 경우.

제58조 수출화물에 대하여 제한 또는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는 실시전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6장 대외무역 촉진

제59조 국가는 수출신용보험, 수출신용대부, 수출세금 환급, 무열발전기금 설정 등 조치를 취하여 대외무역의 발전을 촉진한다.

제60조 국가는 효과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기업의 기술혁신과 기술진보를 촉

진하고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킨다.

제61조 국가는 정보자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국제시장 개척을 협조한다.

제62조 화물 수출입경영자는 수출입상회를 결성하고 거기에 가입하여 자기 단속하고 조율한다.

제63조 국가는 기업이 국외의 차별시 반덤핑, 반보조, 보장조치 및 기타 제한 조치에 적극 대처하고 기업의 정당한 무역권을 수호하도록 권장한다.

제7장 법률책임

제64조 수출입 금지화물을 수입 또는 수출하거나 수출입 제한화물을 비준, 인가없이 자의로 수입 또는 수출한 경우 형법의 밀수죄 관련 규정에 따라 의법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형사처벌에 이르지 않을 경우에는 세관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는 동시에 그 대외무역경영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65조 비준, 인가한 범위를 초월하여 자의로 수출입제한 화물을 수입 또는 수출한 경우 형법의 밀수죄 또는 불법경영죄 관련 규정에 따라 의법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형사처벌에 이르지 않을 경우 세관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는 동시에 그 대외무역경영허가를 잠시 중지시키거나 나아가서는 취소할 수 있다.

제66조 수출입 쿼터증명, 비준서류, 허가증 또는 자동수입허가증명을 위조, 변조 또는 매매한 경우 형법의 불법경영죄 또는 국가기관 공문, 증서, 인장 위조, 변조, 매매죄 관련 규정에 따라 의법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형사처벌에 이르지 않을 경우 세관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

다.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는 동시에 그 대외무역경영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67조 수출입경영자가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하물수출입 쿼터, 비준서류, 허가증 또는 자동수입허가증명을 취득한 경우 법에 따라 그 화물수출입 쿼터, 비준서류, 허가증 또는 자동수입허가증명을 몰수하고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는 그 대외무역경영허가를 잠시 중지시키거나 나아가서 취소할 수 있다.

제68조 이 조례 제51조 규정을 위반하고 자의로 국영무역관리 또는 지정경영관리를 실시하는 화물 수출입무역에 종사함으로써 시장질서를 교란하였고 그 정상이 엄중할 경우 형법의 불법경영죄 관련 규정에 따라 의법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형사처벌에 이르지 않을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한다.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는 동시에 그 대외무역경영허가를 잠시 중지시키거나 나아가서 취소할 수 있다.

제69조 국영무역기업 또는 지정경영기업이 이 조례 제48조, 제52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가 경고한다. 정상이 엄중할 경우에는 그 국영무역기업 또는 지정경영기업 자격을 잠시 중지시키거나 나아가서 취소할 수 있다.

제70조 화물수출입 관리직원이 화물수출입 관리직책을 이행함에 있어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에 타만하거나 또는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수수, 착복한 경우 형법의 직권남용죄, 직무태만죄, 수뢰죄 또는 기타 죄 관련 규정에 따라 의법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형사처벌에 이르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준다.

제8장 부 칙

제71조 이 조례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쿼터, 관세쿼터, 허가증 또는 자동 허가증명 발급 결정에 불복할 경우, 국영무역기업 또는 지정경영기업 자격 결정에 불복할 경우, 또는 행정처벌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에 따라 행정재의를 신청할 수 있고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제72조 이 조례 규정은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수출입화물에 대해 관세, 검사검역, 안전, 환경, 지적소유권 보호 등 조치를 취하는데 방해로 되지 아니한다.

제73조 핵용품, 핵 군·민용품, 통제 화학품, 군수품 등 관제화물을 수출한 경우 관련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74조 수입화물에 대해 반덤핑조치, 반보조조치, 보장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대외무역법과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75조 법률, 행정법규가 보세구 수출가공구 등 특수경제구역 화물 수출입 관리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였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76조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는 화물 수출입무역 관련 쌍무 또는 다각적 상담, 담판을 책임지고 무역분쟁 해결을 책임진다.

제77조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84년 1월 10일 국무원이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 허가제도 잠정조례], 1992년 12월 21일 국무원의 비준을 받고 1992년 12월 29일에 대외무역경제 합작부가 반포한 [수출상품관리 잠정조례], 1993년 9월 22일 국무원의 비준을 받고 1993년 10월 7일에 국가경제무역위원회와 대외무역

경제합작부가 반포한 [기전제품 수출입관리 잠정방법], 1993년 12월 22일 국무원의 비준을 받고 1993년 12월 29일에 국가계획위원회와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반포한 [일반상품 수입쿼터관리 잠정방법], 1994년 6월 13일 국무원의 비준을 받고 1994년 7월 19일에 대외무역경제합작부와 국가계획위원회가 반포한 [수입상품 경영관리 잠정방법]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부록 3〉

수출입관세조례 (국무원령 제392호)

(2003년 10월 29일 국무원 제26차 상무위원회 통과)

제1장 총 칙

- 제1조 대외개방정책을 관철하고 대외경제무역과 국민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세관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수출입을 승인한 화물과 국경유입 물품은 법률 및 행정법규 별도 규정을 제외하고 세관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 관세를 징수한다.
- 제3조 국무원은 [수출입세칙(稅則)](이하 [세칙]으로 약칭), [입국물품 수입세 세율표]를 제정하고 관세의 세목과 세칙(稅則)번호, 세율을 규정하여 본 조례의 구성 부분으로 한다.
- 제4조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세칙(稅則)]과 [입국물품 수입세 세율표]의 세목, 세칙 번호, 세율의 조정과 해석을 책임지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토록 하며, 잠정세율을 적용할 대상 화물, 세율 및 적용 기간을 결정하며, 할당관세 세율을 결정하고, 반덤핑관세, 반보조관세, 세이프가드관세, 보복성관세 징수 및 기타 관세조치를 결정하고, 특수 상황에서 적용할 세율을 결정하며,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직무를 수행한다.

- 제5조 수입화물의 인수인, 수출화물의 발송인, 국경유입물품의 소유자는 관세 납세의무자이다.
- 제6조 세관 및 해당 업무 담당직원은 법이 정한 직무권한과 법정절차에 따라 관세 징수관리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국가이익을 보호유지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법에 의거 감독을 받는다.
- 제7조 납세의무자는 세관에 관련 상업상 비밀을 보호해줄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세관은 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비밀을 보호해야한다.
- 제8조 세관은 본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는 기관과 개인에 대해 규정에 따라 포상하고 비밀을 보장한다.

제2장 수출입화물 관세세율의 설정과 적용

- 제9조 수입관세는 최혜국세율, 협정세율, 특혜세율, 보통세율, 할당관세세율 등의 세율로 설정한다. 수입화물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잠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수출관세는 수출세율을 설정한다. 수출화물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는 잠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 제10조 원산지가 최혜국대우조항을 공동으로 적용하는 WTO 회원국인 수입화물, 원산지가 중국과 양자협정을 체결하여 상호 최혜국대우조항을 적용하기로 한 국가나 지역의 수입화물, 원산지가 중국 국경 내인 수입화물은 최혜국세율을 적용한다.
원산지가 중국과 관세우대조항을 포함하는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나 지역의 수입화물은 협정세율을 적용한다.
원산지가 중국과 특혜관세우대조항을 포함하는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나 지역의 수입화물은 특혜세율을 적용한다.

원산지가 본 조 제1항, 제2항과 제3항 이외의 국가나 지역의 수입화물이거나 원산지가 불분명한 수입화물은 보통세율을 적용한다.

제11조 최혜국세율을 적용하는 수입화물로서 잠정세율이 적용된 것은 잠정세율을 적용해야하며, 협정세율, 특혜세율을 적용하는 수입화물로서 잠정세율이 적용된 것은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하고 보통세율을 적용하는 수입화물은 잠정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출세율을 적용하는 수출화물로 잠정세율에 적용받는 것은 잠정세율을 적용해야한다.

제12조 국가의 규정에 따라 관세 쿼터 관리를 하는 수입화물로 관세쿼터 내의 것은 관세쿼터 세율을 적용하고 관세쿼터 이외의 것은 본 조 제10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 관련 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 수입화물에 대한 반덤핑·반보조·보장조치를 취하는 것은 그 세율 적용을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조례》, 《중화인민공화국 반보조조례》 및 《중화인민공화국 보장조치조례》의 관련규정에 의거 시행한다.

제14조 어떤 국가나 지역이 중화인민공화국과 체결 혹은 공동 참여한 무역협정 및 관련협정을 위반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무역부문에 대한 금지·제한·과징(加徵)관세나 기타 정상적인 무역에 영향을 주는 대책을 취하면 해당 원산지 국가나 지역의 수입화물에 대해 보복관세를 징수할 수 있으며 보복성 관세 세율을 적용할수 있다.

보복성 관세를 징수하는 화물·적용 국가·세율·기한·징수방법은 국무원 관세세칙(稅則)위원회가 결정 공포한다.

제15조 수출입화물은 반드시 세관이 해당 화물 수입이나 수출신고를 접수받

은 날의 세율을 적용한다.

수입화물 도착 전에 세관에 신고하여 심사승인을 받은 것은 해당 화물을 적재한 운송기구가 국경 통과를 신고한 날의 세율을 적용한다. 세관 경우 운수 화물의 세율 적용일은 해관총서가 별도로 규정한다.

제16조 아래 예 중의 하나에 해당되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세관이 납세수속 신고를 접수한 날의 세율을 적용해야한다.

- (1) 보세화물이 승인을 거쳐 다시 국외로 운송되지 않는 것
- (2) 감면세(減稅)화물이 승인을 거쳐 전매나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
- (3) 임시허가를 받은 국경유입화물이 승인을 받아 국외로 운송하지 않기로 한 것과 임시허가를 받은 국경유출화물이 승인을 거쳐 다시 국경유입을 않기로 한 것
- (4) 임차 수입화물로 세금 납부를 분기로 하는 것

제17조 수출입 화물 관세의 추징과 환급은 본 조례 제15조나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적용 세율을 확정해야한다.

납세의무자의 규정위반으로 세금 추징을 해야 하는 경우는 반드시 해당 행위 발생일의 세율을 적용해야하고 행위 발생일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세관이 해당 행위를 발견한 날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3장 수출입화물의 세금완납 가격 확정

제18조 수출입화물의 세금 완납 가격은 세관이 본 조 제3항의 조건에 부합하는 거래 성립 가격 및 해당 화물이 중화인민공화국내의 수입지점에 운송되어 하역되기 전의 운수 및 관련 비용, 보험료를 기초로 심사 확정한다.

수입화물의 거래 가격은 판매자가 중화인민공화국 내에 해당 화물을 판매 할 때 구매자가 해당 화물의 수입을 위해 판매자에게 실제로 마땅히 지불해야하는 것으로 본 조 제19조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조정 후의 가격총액을 말하며 직접 지불한 대금과 간접 지불한 대금을 포함한다.

수입화물의 거래가격은 아래의 조건에 부합해야한다.

- (1) 판매자가 해당 화물을 처분하거나 사용하는 것에 제한을 두지 않지만 법률과 행정법규에 규정된 제한으로 화물의 판매지역 변경에 대한 제한, 화물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제한은 제외
- (2) 해당 화물의 거래가격이 끼워 팔기나 기타요인으로 인한 영향으로 결정에 영향이 없는 경우
- (3) 판매자는 구매자로부터 직접 혹은 간접으로 이 화물 수입 후에 판매전환·처분·사용으로 인한 수익을 얻어서는 안 되며 수익이 있다 해도 본 조 제19조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을 할 수 있을 것
- (4) 구매자와 판매자 쌍방은 특수 관계가 아니어야 하고 혹은 특수 관계가 있다 해도 거래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제19조 아래 예시된 수입화물의 비용은 세금완납 가격의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

- (1) 구매자가 부담하는 물건 구입비 이외의 수수료와 섭외비용
- (2) 세금완납가격 심사확정시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해당 화물과 일체로 간주되는 용기의 비용
- (3) 구매자가 부담하는 포장 재료와 포장 인건비 비용
- (4) 해당 화물의 생산과 중화인민공화국 내의 판매와 유관한 것으로

구매자가 무료나 최저원가 방식으로 제공하여 적당한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 재료·공구·모형·소모품 및 유사화물의 대금, 국외에서 개발·설계 등에 사용된 관련서비스 비용

- (5) 해당 화물이 중화인민공화국 내에 판매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구매자가 지불해야 하는 것 및 해당 화물과 관계있는 특허권 사용 비용
- (6) 판매자가 직접 혹은 간접으로 구매자로부터 취득한 해당 화물 수입 후의 판매 전환·처분·사용한 수익

제20조 수입 시 화물의 대금 중에 명시된 아래의 세수(稅收)와 비용은 해당 화물의 세금완납가격에 계산하지 않는다.

- (1) 공장·기계·설비 등의 화물 수입 후 진행된 건설·장치·조립·보수와 기술서비스 비용
- (2) 수입화물을 국내 수입지점에 운송하여 하역한 후의 운송관련비용과 보험료
- (3) 수입관세 및 국내세수

제21조 수입화물의 거래 가격이 본 조례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세관이 관련 정황을 참작하여 납세의무자와 가격을 절충한 후 순서에 따라 아래의 가격으로 해당 화물의 세금완납가격을 산출한다.

- (1) 해당 화물과 동시 혹은 비슷한 시기에 중화인민공화국 내에 판매된 같은 화물의 거래가격
- (2) 해당 화물과 동시 혹은 비슷한 시기에 중화인민공화국 내에 판매된 유사한 화물의 거래가격
- (3) 해당 화물의 수입과 동시 혹은 비슷한 시기에 해당 수입화물·서

로 같은 화물이나 유사한 화물이 일급 판매처에서 특수 관계가 아닌 구매자에게 최대로 판매한 총량의 판매 단위가격, 그러나 본 조례 제22조에 규정된 항목은 제외

- (4) 해당 화물의 생산에 사용된 부품원가와 가공비용, 중화인민공화국 내에 판매되는 동급이나 동 종류화물의 통상적인 이윤과 일반 비용, 해당 화물이 국내 수입지점에 운송되어 하역하기 전의 운송관련비용과 보험료의 각 항목 총계에 따라 계산된 가격
- (5)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한 가격.

납세의무자는 세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전항 (3)과 (4)항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제22조 본 조례 제21조 (3)항목의 규정에 따라 세금완납가격을 추정할 때 공제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1) 동급 혹은 동 종류화물이 중화인민공화국 내 일급판매처에서 판매 할 때의 통상적인 이윤과 일반비용 및 통상적인 지급 수수료
- (2) 수입화물을 국내 수입지점에 운송하여 하역한 후의 운송관련비용과 보험료
- (3) 수입관세 및 국내세수

제23조 임차방식으로 수입하는 화물은 세관이 심사 확정된 해당 화물의 임대료를 세금완납가격으로 한다.

납세의무자가 1회성 세금납부를 요청하는 것은 납세의무자가 본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세금완납가격을 추정하는 방식을 선택하거나 혹은 세관이 심사 확정된 임대료 총액을 세금완납가격으로 할 수 있다.

제24조 국외로 운송되어 가공되는 화물은 국경을 통과할 때 미리 세관에 분

명하게 보고하고 세관이 규정한 기한 내에 다시 국내로 재수출되어 오는 것은 국외 가공비와 부품비 및 국내에 재수출되어 오는 운송관련비용과 보험료로 세금완납가격을 심사 확정해야한다.

제25조 국외로 운송되어 수리하는 기계류·운수관련 용구나 기타화물은 국경을 통과 할 때 미리 세관에 신고하고 세관이 규정한 기한 내에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 국외 수리비와 부품비를 심의하여 세금완납가격을 확정 한다.

제26조 수출화물의 세금완납가격은 세관이 해당 화물의 거래가격 및 해당 화물이 중화인민공화국 내 수출지점에 적재되기 전의 운송관련비용과 보험료를 기초로 심사 확정한다.

수출화물의 거래가격은 해당 화물 수출 시 판매자가 해당 화물의 수출을 위해 구매자에게 직접 간접으로 수취하는 대금총액을 말한다. 수출관세는 세금완납가격에 계산하지 않는다.

제27조 수출화물의 거래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것은 세관이 정황을 참작하여 납세의무자와 가격 협의를 한 후 순서에 따라 아래의 가격으로 해당 화물의 세금완납가격을 추정한다.

- (1) 해당 화물과 동시 혹은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국가나 지역으로 수출된 동일한 화물의 거래가격
- (2) 해당 화물과 동시 혹은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국가나 지역으로 수출된 유사한 화물의 거래가격
- (3) 다음 예의 각 항 총계에 따라 계산된 가격: 국내 생산이 서로 같거나 유사한 화물의 부품원가와 가공비용, 통상의 이윤과 일반비용, 국내에서 발생한 운송관련비용 및 보험료
- (4)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한 가격

제28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계산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않는 세금완납 가격의 원가·비용·세금 징수는 객관적이며 계량화 할 수 있는 수치를 근거로 해야 한다.

제4장 수출입화물 관세의 징수

제29조 수입화물의 납세의무자는 운송기구의 국내 입항 일부터 14일 내에 신고하고 수출화물의 납세의무자는 세관이 특별히 허가한 것을 제외하고 화물이 세관의 감독구역에 도착한 후 적재되기 24시간 전에 화물의 수출입지 역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세관을 경유하여 운송되는 수출입화물은 해관총서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수입화물의 도착 전에 납세의무자는 세관의 승인을 거쳐 신고를 먼저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해관총서가 별도로 규정한다.

제30조 납세의무자는 법에 따라 세관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되며 세관의 규정에 따라 관련 세금완납가격의 확정·상품분류·원산지 및 반 덤핑·반 보조 혹은 보장조치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 시 세관은 납세의무자에게 보충신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 납세의무자는 《세칙(稅則)》에 규정된 조문목록과 분류 총 규칙·분류 주석·규칙 주석·세목 주석 및 기타 분류주석에 따라 신고한 수출입 화물의 상품을 분류하여 해당하는 세칙(稅則) 조항에 포함시키고 세관은 법에 따라 해당 화물의 상품분류를 심사 확정해야 한다.

제32조 세관은 납세의무자에게 상품을 분류 확정하는데 필요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 시 세관은 화학분석·검증을 할 수 있으며 세관이 인정한 화학분석·검증결과를 상품분류의 근거로 한다.

제33조 세관은 신고가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심사하기 위해 수입화물과 관련 있는 계약서·발급 영수증·장부·지불 환 증명·영수증·업무관련 서신과 전보·녹음녹화제품과 기타 쌍방 관계를 반영하는 교역활동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세관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의심스럽고 관련된 관세액수가 비교적 큰 것에 대해 직속세관장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관할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해관총서의 동일 서식에 따라 수입 지출의 명세 및 관련업무 담당직원의 업무증거를 조회하고 납세의무자가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개설한 회사계좌의 자금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은행 감독관리기관에 관련 상황을 통보한다.

제34조 세관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에 의심이 있으면 의심되는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규정된 기한 내에 납세의무자가 서면으로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해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설명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세관이 신고가격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여전히 의심을 가질만한 이유가 있는 것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을 접수하지 않고 본 조 제3장의 규정에 따라 세금완납가격을 추정 결정할 수 있다.

제35조 세관이 수출입화물의 세금완납가격을 심사 확정된 후 납세의무자는 서면으로 세관이 어떻게 해당 수출입화물의 세금완납가격을 결정했는가에 대한 서면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세관은 반드시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제36조 수출입화물 관세는 총 가격계산 징수·총량계산 징수나 국가가 규정한 기타 방식으로 징수한다.

가격 합산 징수 계산공식: 납부할 세액 = 세금완납가격×관세세율

중량 합산 징수 계산공식 : 납부할 세액 = 화물수량×단위세액

제37조 납세의무자는 세관이 세금 납부서를 교부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지정은행에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 납세의무자가 정해진 기일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세금 체납일부터 일수에 따라 체납세액의 5/10,000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세관은 납세의무자의 체납세금 상황에 대한 공고를 할 수 있다.

세관의 관세·체납금 징수 등은 납입 증빙서를 제정 발표해야 하며 납입증빙 양식은 해관총서가 규정한다.

제38조 세관의 관세·체납금 징수 등은 인민폐로 계산 징수해야 한다.

수출입화물의 거래 가격 및 관련비용이 외화가격으로 계산된 것은 중국인민은행이 공포한 기준 환율로 환산하여 인민폐로 세금완납가격을 계산한다. 기준환율 화폐종류 이외의 외화로 가격이 계산된 것은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인민폐로 세금완납가격을 계산한다. 환율 적용일은 해관총서가 규정한다.

제39조 납세의무자가 불가항력이나 국가의 세수정책 조정상황 때문에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은 해관총서의 승인을 받아 세금납부 기한을 연기할 수 있지만 최장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40조 수출입화물의 납세의무자는 규정된 납세기한 내에 과세화물 및 기타 재산을 이동시키거나 은닉한 흔적이 분명하게 있는 것은 세관이 납세의무자에게 담보제공의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고 납세의무자가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은 세관이 《세관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세수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와 담보인이 세금납부 기한 만기일 이후 3개월을 초과하여 여전히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세관이 《세관법》 제61조의 규

정에 따라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1조 가공무역 수입부품이 국가가 규정한 보세 수입인 것으로 해당 완제품 제작이나 수입부품이 규정된 기한 내에 수출되지 않은 것은 세관이 규정에 따라 수입관세를 징수한다.

가공무역의 수입부품이 국경을 넘어올 때 국가 규정에 따라 수입관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해당 완제품이나 수입부품이 규정된 시간 내에 수출되는 것은 세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국경통과 시 이미 징수한 관세대금을 환불한다.

제42조 세관의 승인을 받아 임시로 국경을 넘어가거나 들어오는 아래의 화물이 국경을 넘어가거나 들어올 때 납세의무자가 세관에 납부할 세액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기타 담보를 제공한 것은 임시로 관세납부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국경을 넘어오거나 나간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운송되어 오거나 나가야 하며 세관은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관총서의 규정에 근거 국경을 통하여 다시 운송되어 나가거나 들어오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1) 전시회·교역회의 및 유사활동 중 전시되거나 사용된 화물
- (2) 문화·체육교류 활동 중 사용된 연출·경기용품
- (3) 뉴스 보도진행이나 영화·텔레비전 촬영제작에 사용된 측정기구·설비 및 용품
- (4) 과학연구·의학·교학 활동에 전시 사용된 설비 및 용품
- (5) 본 항 (1)~(4)에서 열거한 활동 중 사용한 교통도구 및 특수한 종류의 차량
- (6) 견본품
- (7) 설치·성능시험·검사측량설비 제공 시 사용된 측정기구 및 공구

(8) 화물을 담은 용기

(9) 기타 비 상업목적에 사용하는 화물

위에서 예를 든 임시 승인을 받아 국경을 넘어온 화물이 규정된 기한 내에 다시 국외로 운송되지 않거나 임시 승인을 받은 국외반출화물이 규정된 기한 내에 다시 운송되어 오지 않는 것은 세관이 법에 따라 관세를 징수해야 된다.

위에서 예를 든 임시로 관세를 면세하는 범위 밖의 기타 국경을 넘어오는 화물의 임시 승인은 해당 화물의 세금완납가격과 국내체류기간 및 감가상각 기간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국경유입관세를 징수해야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해관총서가 규정한다.

제43조 품질이나 규격 때문에 수출화물이 수출일로부터 1년 내에 국경으로 다시 운송되어 들어오는 것은 수출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제44조 파손·부족·품질불량이나 규격에 부합하지 않아 수출입 화물의 발송인·운송업자나 보험회사가 무료보상이나 교환하는 같은 화물은 수출입시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무료로 교환되는 원래의 수입화물이 국경유출시 운송 불량이나 원래의 수출화물이 국경유입 시 운송 불량인 것은 세관이 원래의 수출입화물에 대해 다시 규정을 적용하여 관세를 징수한다.

제45조 아래의 수출입 화물은 관세를 면제한다.

- (1) 관세 세액이 1종류로서 인민폐 50위안 이하의 화물
- (2) 상업가치가 없는 광고제품과 견본품
- (3) 외국정부·국제기구가 무상으로 증여한 물자
- (4) 세관의 통관허가 전에 손실을 입은 화물
- (5) 국경 진출입 운송기구에 적재하는 도중에 필요한 연료·자재와 식

음료 용품

세관의 통관허가 전에 손실을 입은 화물은 세관이 인정하는 손실정도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법률에 규정된 기타 면세 혹은 관세가 감면되는 화물은 세관이 규정에 따라 면세나 관세감면을 한다.

제46조 특정지역·특정기업이나 특정한 용도가 있는 수출입화물의 면세 혹은 관세감면 및 임시 감면이나 면세하는 관세는 국무원의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47조 수입화물의 면세 혹은 감면은 수입중심세관이 대리하여 징수하며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48조 납세의무자가 세금감면 화물을 수출입하는 것은 별도의 규정을 둔 것을 제외하고 해당 화물의 수출입 전에 규정에 따라 관련문서를 세관에 제출하여 세금감면 심사 승인 수속을 한다. 세관의 심사를 거쳐 규정에 적합한 것은 관세 면제나 감액을 한다.

제49조 세관의 관리감독에 사용되는 감면세 적용이 필요한 수입화물이 관리감독 연한 안에 전매나 타 용도로 바꾸어 사용되어 추가징수가 필요한 것은 세관이 해당 화물의 수입시간에 따라 추정가격을 공제하여 수입관세를 추가 징수해야 한다.

수출입화물의 특정 감면세 관리감독 연한은 해관총서가 규정한다.

제50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것은 납세의무자가 세금납부일로부터 1년 내에 관세 반환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세관에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해야하며 반드시 원래의 납부증빙과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이미 수입관세를 징수한 화물이 품질이나 규격 때문에 원상 반품

되어 다시 국외로 운송되는 경우

(2) 이미 수출관세를 징수한 화물이 품질이나 규격 때문에 원상 반품되어 국외로 운송되거나 또는 수출과 반환으로 국내부분의 관련 세수를 새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

(3) 수출관세를 이미 징수한 화물이 사정으로 수출하지 못하여 수출 철회를 신고한 것

세관은 세금반환 신청을 수리한 날부터 30일 내에 납세의무자에게 반환처리 내역을 심사하여 통지해야 한다.

기타 관련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반환해야 되는 관세는 세관이 유관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반환한다.

제51조 수출입화물 통관허가 후 세관이 세금을 적게 징수했거나 누락이 발견되면 세금납부나 화물통관 일부터 1년 내에 납세의무자에게 세금을 추가 징수해야 한다. 그러나 납세의무자의 규정위반으로 세금을 적게 징수했거나 누락된 것은 세관이 세금납부나 화물 통관 일부터 3년 내에 세금을 추징할 수 있고 세금납부나 화물 통관 일부터 적게 징수되거나 누락된 세금은 일수에 따라 5/10,000에 해당하는 체납금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세관이 세관의 화물 관리감독에서 발견한 납세의무자의 규정위반으로 세금이 적게 징수되거나 누락시킨 것은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 일로부터 3년 내에 세금을 추징해야 되며 납세의무 일부터 일수에 따라 적게 내거나 누락된 세금 5/10,000에 해당하는 체납금을 가산해서 추징해야한다.

제52조 세관이 발견한 과다납부 된 세금은 납세의무자에게 반환수속을 하도록 통지해야한다.

납세의무자가 과다납부 된 세금을 발견한 것은 세금납부 일부터 1년 내에 과다 납부된 세금과 같은 기간 은행 일반예금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세관은 반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내에 심사하며 납세의무자에게 반환수속 처리를 통지해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관련 반환수속을 처리해야한다.

제53조 본 조례 제50조·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세금·관련이자의 반환은 국고에서 나온 것으로 법률·행정법규의 관련 국고관리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54조 기업이 납세의무자의 위탁을 받아 하는 통관수속은 납세의무자의 명의로 납세수속 통관을 하며 기업이 규정을 위반하여 세관이 세금을 적게 징수하거나 탈루시킨 것은 통관기업이 적게 징수하거나 탈루된 세금·체납금에 대해 납세의무자와 납세부담의 연대책임을 진다.

통관기업이 납세의무자의 위탁을 받아 기업의 명의로 납세 통관수속을 하는 것은 통관기업이 납세의무자와 납세 연대책임을 진다.

불가항력을 제외하고 세관이 화물을 관리감독 화물을 보관하는 기간에 세관의 관리감독 화물이 훼손되거나 멸실 된 것은 세관의 화물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보관의무자가 상응하는 납세책임을 부담해야한다.

제55조 납세 체납자가 합병·분리설립 상황에 있는 것은 합병·분리설립 이전에 세관에 보고해야 되며 법에 따라 세금을 완납한다. 납세의무자가 합병 시에 완납하지 않은 세금은 합병 후의 법인이나 기타 조직이 계속하여 미 이행한 납부의무를 이행하며 납세의무자가 분리 설립 시 완납하지 않은 세금은 분리설립 후의 법인이나 기타조직이 미 이

행한 납세의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진다.

납세의무자는 화물·보세화물의 세금 감면 관리감독 기간에 합병·분리설립 혹은 기타 자산이 다시 구성되는 상황을 세관에 보고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납세해야 하는 것은 법에 따라 완납해야 되며 규정에 따라 감면세·보세대우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은 세관에 납세의무자 변경 수속을 해야 된다.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빌리거나 감면세 화물·보세화물 관리감독 기간에 철회·해산·파산이나 기타 법에 따라 경영이 정지된 것은 반드시 청산 전에 세관에 보고해야 한다. 세관은 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완납토록 하여야 한다.

제5장 국경유입 물품의 수입세 징수

제56조 경유입 물품의 관세 및 수입중심 세관이 대리하여 징수하는 세금을 합하여 수입세로 하며 세관이 법에 따라 징수한다.

제57조 해관총서가 규정된 액수 이내의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유입하는 물품에는 수입세를 면제한다.

세관총국이 규정한 액수지만 합리적인 수량 이내의 것으로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유입하는 물품은 국경유입물품의 납세의무자가 통관 전에 규정에 따라 수입세를 납부한다.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한 수량의 국경유입물품은 수입화물의 적법 절차에 따라 관련 수속을 해야 한다.

국무원 관세세칙(稅則)위원회는 화물 세금징수에 따라 국경유입 물품을 규정하고 본 조례 제2장에서 제4장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징수한다.

제58조 국경유입 물품의 납세의무자는 물품을 휴대하고 국내로 들어오는 사람, 국외에서 우송된 물품의 수취인 및 기타 방식으로 유입되는 물품의 수취인을 말한다.

제59조 국경유입 물품의 납세의무자는 납세수속을 스스로 할 수 있고 타인에게 위탁하여 할 수도 있다. 위탁을 받은 사람은 본 장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각 항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제60조 수입세의 물건값에 따라 계산 징수한다.

수입세의 계산방식은 수입세 세액=세금완납가격×수입세 세율로 한다.

제61조 세관은 《국경유입물품 수입세세율표》 및 세관총국이 제정한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유입물품 분류표》·《중화인민공화국 국경유입물품 세금완납가격표》에 따라 국경유입물품에 대한 분류·세금완납가격의 확정·적용세율 확정을 한다.

제62조 국경유입물품은 세관이 세금 납부서를 발부한 날의 세율과 세금완납가격을 적용한다.

제63조 수입세의 감세·면세·보충징수·추징·반환 및 임시로 허가한 국경유입물품에 대한 수입세 징수는 본 조례의 수입관세를 징수하는 화물에 대한 관련규정을 참조하여 시행한다.

제6장 부 칙

제64조 납세의무자·담보인은 세관의 납세의무인 확정·세금완납가격확정·상품분류·원산지 확정·세율이나 환율적용·세금감액이나 면제·보충징수·반환·체납금징수·징수 계산방식 확정 및 납세지 확정에 대해 이

의가 있으면 세금을 납부하고 법에 따라 직속 상급 세관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65조 수입과 관련한 세관이 세금징수를 대행하는 징수관리는 관세징수관리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6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 한 것은 《세관법》·《중화인민공화국세관법 행정처벌실시세칙》과 기타 관련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67조 본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동시에 1992년 3월 18일 국무원이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관세조례》는 폐지한다.

〈부록 4〉

전국농업무역촉진규획(2011~2020년)

※ 농업부가 제정하였으며 농업부 판공청이 2011년 12월 29일 각 성(자치구, 직할시) 농업관련 부문에 하달

농업무역을 강화하고 농업무역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국내외 자원과 시장의 효과적인 이용, 국내 농산물 수급의 균형, 농민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농업의 산업안전 보장수준 제고 등에 있어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가진다.

중국의 농업무역촉진작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국농업제12차5개년규획 全國農業第十二個五年規畫》, 《국가식량안전중장기규획강요(2008~2020년) 國家糧食安全中長期規畫綱要(2008-2020年)》, 《농업국제협력발전“12·5”규획 農業國際合作發展“十二五”規畫》 등에 근거하여 《전국 농업무역 촉진 규획(2011~2020년) 全國農業貿易促進規畫(2011-2020年)》을 특별히 작성하여 하달한다.

1. 농업무역의 중요성과 긴박성

(1) 농업무역의 강화는 국제 농산물시장의 극심한 가격파동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사안이다.

농업과 거시경제의 관계가 갈수록 긴밀해지고 기후변화, 투기자본, 바이오매스에너지 등 비전통적 요소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갈수록 커짐에 따

라, 세계 농산물시장의 변동성·위험성·불확실성 또한 점점 심화되고 있다. 시장이 점차 개방화 추세로 나아가면서 국제 농산물시장의 리스크는 정보, 무역, 투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국내로 유입되고 있으며, 중국 농업 발전과 농산물 시장에 대한 영향도 더욱 직접적이고 강렬해지고 있다.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압력과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농업무역의 강화가 시급히 요구되며 국제농업정보서비스를 개선해야한다. 또한 농산물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수준을 제고시키고, 농산물 수출입 관리를 강화해야한다.

(2) 농업무역의 강화는 우수 농산물의 수출 확대, 농민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중국의 노동집약형 및 일부 심가공 농산물은 잠재적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다. 농산물 수출은 농업의 부가가치 증대, 농민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등 측면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으며, 이는 연해지역 등 주요 농산물수출지역과 수산업, 원예산업 등 수출우위산업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중국은 농산물 수출품목이 다양하지만 생산량이 적고, 기업의 수는 많지만 생산비가 비싸고 시장개척능력이 취약하며, 각 국의 보호무역주의에 의해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 생산비 상승, 위안화의 평가절상, 국제 보호무역주의 등이 심화됨에 따라 중국의 농산물 수출도 거대한 도전에 맞서게 되었다. 중국은 무역촉진정책을 통해 농산물의 대외 마케팅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고, 경쟁우위를 창출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것이 시급히 요구된다.

(3) 농업무역의 강화는 중국 농업의 산업안전을 보장하는 객관적인 요건이다.

중국은 인구가 많고 1인당 평균 차지하는 농업자원(특히 수토자원)이 부족하며, 농업경영규모가 작고 노동생산율이 낮아 중국의 주요 농산물은 주요 수출국과 비교하면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다. 시장의 개방화 추세는 일부 외국농산물이 중국시장에 대량 유입되도록 하였다. 이는 국내 농산물의 생산, 관련 제품가격의 시세, 관련 산업의 발전 등을 제약하였고, 농산물 공급 및 산업 안전에 장기적인 잠재리스크를 가져왔다.

식량 안전과 농업의 산업 안전을 보장하려면, 반드시 농업무역을 강화하고 국내산업피해모니터링 및 조기경보체계를 수립하며 “반덤핑·반보조금·보장 조치(兩反一保)” 등 무역구제조치의 실시역량을 확대해야한다. 또한 공정무역을 추진하고, 농산물 수입의 긍정적인 효과를 적극 발휘하여 농산물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해소한다.

(4) 농업무역의 강화는 농업발전방식 전환의 중요한 내용이다.

도시화와 공업화가 심화됨에 따라 중국 농업이 직면한 자원환경적 제약도 점점 심각해지고, 농업의 기초 역할에 대한 경제사회의 요구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또한 조방적인 농업발전방식과 저품질·저효율 문제도 나날이 부각되고, 농업발전방식의 전환과 농업발전의 질과 효율 제고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11·5” 계획시기 말, 중국의 농산물 무역액은 1,200억 달러에 육박하였고, 이는 농업 부가가치의 20%를 차지하여 농업 발전에서 농업무역의 지위가 크게 향상되었다.

농업무역을 강화하고 농업무역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농업 발전 방식을 신속히 전환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공정무역의 기초 상에서 자원집약형 제품을 적당히 수입하는 것은 농업의 산업구조를 조정하고 자원환경적 제약을 완화하는 동시에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데 매우 유

리하다. 또한 농산물 수출은 품질 안전, 표준화 생산, 브랜드 개발 등 측면에서 시범·과급역할을 발휘하고, 농업의 생산경영방식을 전환하여 현대농업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II. 발전 현황

농산물 무역의 발전과 국내외 시장의 상호 연계가 지속적으로 심화됨에 따라 농업무역은 각급 정부와 관련 부처의 관심 대상이 되었고, 관련 업무는 점차 확대·강화되어 초보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1) 농업무역촉진체계가 초보적으로 수립되었다.

중국의 WTO 가입 및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부는 농업무역과 관련된 직무수행능력을 강화시켰고, 농업 국제협력체통의 전문기구를 설치하였으며 농업 무역협상과 정책연구, 무역구제, 대외경제무역정보, 대외마케팅서비스 등 관련 업무를 광범위하게 전개하였다.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수출지향형 농업을 중요시하고 강화하였으며, 관련 기구에서는 농업무역 촉진과 관련된 직무를 확대하였고, 농업무역 촉진업무에 대한 조직영도를 강화하였다. 어떤 기관에서는 농업부가 주도하고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농산물수출 협력 지도조직(領導小組)을 설립하여 농산물수출 부문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협조하였다. 어떤 기관에서는 “농산물수출 촉진 연석회의 제도”를 수립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농산물수출과 관련된 문제들을 연구·해결하였다. 농업무역 촉진업무는 국제무역 분쟁 조정, 업계이익 보호, 거래비용(transaction cost) 감소, 농업경쟁력 증대 등 측면

에서 점점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2) 농산물마케팅 공공서비스가 빠르게 발전하였다.

각급 정부의 지원 하에 다양한 공익성 농산물마케팅활동이 국내외에서 활발히 실시되었고, 이는 농산물 생산자-판매자의 직접 연결 촉진, 유명 브랜드 육성, 유통효율 제고, 외자기업 유치, 농산물 수출 확대 등의 측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였다. 농업무역촉진기구와 농업 주무부처는 국제적인 농산물 전람회·박람회·설명회 개최를 중심으로 무역촉진활동을 조직적으로 실시하였고, 농업기업이 국내외 무역 전람회에 참여하고 해외시장 조사와 제품마케팅을 실시하는데 적극 지원하여 농업기업의 대외협력과 무역을 촉진하였다.

2010년 전국적으로 중간 규모 이상 농업전람회는 260개가 개최되었고, 대규모의 영향력이 있는 국가급 전람회는 농업 컨벤션 업계에서 매우 중요한 시범적 역할을 하였다. 일부 지방의 농업 주무부처에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지역 특색의 농산물 브랜드 개발, 기업 제품의 해외 직판 장려, 수출시장의 무역장벽 대응 등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였다.

(3) 농업무역 정보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10·5” 기획과 “11·5” 기획기간 동안, 국가와 지방에서는 농업 대외경제·무역 정보서비스체계 구축에 잇따라 착수하였고, 각급 농업 주무부처는 자체 업무역량과 정보자원의 우위를 결합하여 대외경제무역정보의 수집·정리·분석·공개체계를 초보적으로 수립하였다.

농업무역정보의 수집 및 공개제도는 지속적으로 정비되었고, 정보가 다양해졌으며, 서비스 내용은 농산물 수출입 통계 및 분석, 국내외 시장 동태, 국내외 농산물 무역 법률·법규, 기술표준, 품질안전, 시장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등을 포함하여 농업무역의 각 핵심영역을 기본적으로 포괄하였다. 무역데이터베이스(DB) 구축에도 진전이 있었다. 국제무역정보DB, 농산물 수출입기업 DB, 제품DB 등을 구축하였고 정보의 투명성과 이용률을 제고시켰다. 농업무역정보에 대한 분석능력과 서비스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정보 분석과 공개는 나날이 제도화 되고 있다.

(4) 농업무역 촉진의 정책적 지원역량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다.

각급 정부는 농업무역부문을 더욱 중하게 여기고 관련 지원정책을 수립·정비하였다. 재정지원 방면에서, 중앙재정은 농산물 수출 관련 세금환급을 확대하였고 농산물 마케팅과 무역촉진 전용자금 항목을 설립하였다. 지방정부는 농산물수출기지 건설, 농산물 브랜드 육성 등에 대한 지원역량을 해마다 증가시키고 있으며, 농산물 수출기업이 면세, 저 세율 적용, 환급 등 국가의 세금우대정책을 우선적으로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신용대출과 보험지원 방면에서, 중국수출입은행의 농산물 수출 측 신용대출업무는 일부지역과 제품에 대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많은 지역에서 수출우위제품과 수출 용두기업에게 저리대출과 일반대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수출신용보험공사에서는 보험을 통한 용자서비스 등을 실시하여 농산물수출기업에 대한 무역자금 조달을 확대하고 있다. 무역의 편리화 서비스 방면에서, 국가에서는 수출농산물의 출입국 검사검역비용 감면 등의 관련 정책을 내놓았고, 각 지역에서는 농산물 수출 검사검역서비스를 강화하되 절차는 간소화하여 농산물(특히 신선 농산물) 수출의 통관속도를 빠르게 하였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중국의 농업무역 촉진업무는 현재까지 일정한 성과를 거두어왔지만 여전히 시작단계에 놓여있으며, 농업무역부문은 아직도 발전상에 커다란 격차가 존재한다.

첫째, 기구가 불완전하고, 직책과 역할이 불분명하며, 조직 내 협력이 취약하다. 직책과 역할이 분명한 농업무역촉진체계가 여전히 수립되지 못하고 있으며 중앙과 지방, 정부와 기업의 상호 연계 및 협력이 아직 제도화·체제화되지 못하였다.

둘째, 자금투입이 부족하고 서비스수단이 다양하지 못하다. 각급 정부가 무역촉진부문에 지출하는 재정자금이 적고, 농산물 마케팅서비스에 대한 경비 보장이 취약하다.

셋째, 불균형 발전과 지역 간 발전 격차가 비교적 크다. 대부분의 중·서부 지역에서는 재정 등 요소의 제약을 받고 있으며 효과적인 농업무역촉진활동수단이 부족하다.

넷째, 전문 인재가 부족하고 기초업무가 취약하다. 현재 중국 농업무역 분야의 전문인재의 수는 업무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농업무역의 기초업무가 비교적 취약하고, 정보서비스와 정책연구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Ⅲ. 지도 사상과 주요 목표

(1) 지도 사상

농업무역 촉진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적 발전관을 관철하여 이행하고, ‘농업생산력 증대, 농민 소득 증대,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전략적 목표로 설정하여 무역환경 개선과 거래비용(transaction cost) 절감을 중심으로 농업무역 협상과 구제, 농산물 마케팅 지원, 대외무역정보서비스, 정책적 수출지원 등에 착수한다. 제품, 기지, 시장, 기업 등 각각의 영역의 발전에 주력하고, 우수 농산물의 수출 확대, 공정무역 추진, 농업의 산업안전보장능력 제고 등

을 실현하여 농업을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발전시킨다. 농업무역 촉진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한다.

- **종합계획 원칙:** 해외자원 활용과 농산물 수입을 통하여 국내 공급을 보장하되, 무분별한 수입과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지양하여 관련 산업에 대한 충격과 피해를 방지한다. 우수 농산물의 수출량을 증가시키고, 농산물 수출의 부가가치와 효과를 증대시킨다.

- **중점부각 원칙:** 잠재 자원, 무역 규모, 산업 안전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점제품, 중점영역, 중점기업, 중점시장을 선정하고, 다양한 무역 촉진방식을 우선적으로 채택함으로써 우수 농산물의 글로벌경쟁력을 높이고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충격을 완화한다.

- **개혁혁신 원칙:** 농업무역 촉진 과정 중의 새로운 문제점들을 신속히 찾아내고, 경험과 교훈을 계속해서 축적해나간다. 기존 체계의 정비, 업무 메커니즘의 혁신, 업무방향 확장, 무역촉진수단 강화 등을 통하여 농업무역 촉진 능력을 제고시킨다.

(2) 주요 목표

농업무역촉진체계를 기본적으로 완비한다. 향후 10년간 ‘조직과 기능 완비, 수단 강화, 고효율 서비스’를 특징으로 하고 중국 국정과 국제 규정에 부합하는 농업무역촉진체계를 구축한다.

농산물 브랜드 개발을 더욱 가속화한다. 수출시범기지 건설, 브랜드 개발, 국제인증 획득, 상호 협력, 브랜드 홍보 등 농업무역 촉진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농산물의 우수품질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글로벌 브랜드로 만들어나가며, 농산물 수출 용두기업과 우수한 품질의 수출제품을 육성한다.

농산물 수출시장을 더욱 다원화한다. 유럽과 북미지역, 그 주변국 등 전통

적 수출시장의 기초 상에서 신흥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남미, 동유럽, 아프리카 등의 농산물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나간다. 글로벌 수출시장을 더욱 확장해나감으로써 수출시장 리스크를 분산시킨다.

농산물 수출량과 품질을 안정적으로 제고시킨다. 농산물 수출량을 안정적으로 증가시키는 동시에 제품의 부가가치와 수출 수익도 안정적으로 증대시킨다. 농산물 수출을 수량형 성장에서 수량과 효익을 함께 중시하는 종합형 성장으로 점진적으로 전환시켜 나간다.

농업의 산업안전보장능력을 크게 향상시킨다. 농업무역정책 연구와 대외무역정보 분석을 더욱 강화한다. 다자·양자 간 농업규정제정능력, 무역규정운용능력, 분쟁해결능력, 국제시장 위기대응능력 등을 현저히 향상시킨다. 산업피해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수출입의 효과적인 통제, 농업의 산업안전 보장 등의 기초를 더욱 견고히 한다.

IV. 중점 임무

(1) 농산물의 대외 마케팅을 강화한다.

1. **농산물 수출 시범기지 건설에 대한 지원을 장려한다.** 우수 농산물의 지역분포규획과 다양한 시범단지, 기지, 표준화 건설 등의 항목을 고려하여 산업 기초와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선정하고,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수출지향형 특색 농산물의 생산·가공기지와 수출시범기지 건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수출농산물의 생산과 가공 방면에서 기지가 시범·선도적 역할을 적극 발휘하도록 한다.

2. **수출농산물 브랜드 개발을 적극 추진한다.** 농산물의 대외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조직하고 지원한다. 광고, 심포지엄, 설명회(fair) 등을 통하여 홍보

를 강화하여 소비자의 관심을 유발하고, 국가 또는 관련 지역의 브랜드 이미지를 수립한다. 우수 농산물 브랜드 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이 국제인증 획득 및 제품 등록에 적극 참여하도록 장려하며, 국제인증과 국제상호인증을 효과적으로 추진한다. 기업 육성을 강화하고, 농산물 생산·가공·수출 각 부문에 대한 관리의 규범화를 추진하며, 수출농산물의 브랜드를 개발한다.

3. 기업의 해외시장개척을 적극 지원한다. 훈련, 교육 등을 통하여 기업이 농산물수출시장 개척능력을 제고시키도록 돕고, 기업이 목표시장의 사전개발 활동(해외시장 조사, 소비자군 육성 등 포함)을 실시하도록 지원·장려한다. 기업의 해외직판 실시, 전담기구 설립 등을 장려한다. 또한 기업이 목표시장 국가 정부와의 소통과 협상을 강화하고 내국민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우며, 기업이 해외직판을 실시하는데 편리성을 제고한다.

4. 농산물 수출 시범기업을 육성한다. 기업의 신제품·신기술 연구개발 및 도입, 농산물 해외가공기업의 기술개조를 지원하여 기업이 품질경영전략을 추진하도록 하고, 수출농산물의 기술함량과 부가가치를 제고시킨다. 농산물 수출기업의 마케팅능력 구축을 중시하고, 훈련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기업의 시장개척능력, 브랜드 개발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고시켜나간다.

5. 글로벌 농업브랜드 홍보의 장을 마련한다. 사회적 편익(social benefit)이 높고 규모와 인지도가 있는 국제적 농업전람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전람회의 국내외 인지도와 영향력을 확대하고 브랜드 홍보의 장을 마련한다. 농업컨벤션기능 인정활동 등을 통하여 기존의 농업 컨벤션자원을 통합하고, 컨벤션 산업의 규범화 수준을 제고시키며, 국내 전람회 개최와 국제 전람회 참여가 상호 결합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홍보구조를 형성하여, 국내외 홍보 효과의 상호 보완 및 홍보자원 공유를 실현한다.

6. 기업과 협회가 국제홍보활동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끈다. 국내 농산물가공·판매기업과 업계 협회가 참여하는 농업부문 해외 전시·홍보활동을 계획한다. 장소임대료, 전시품 운송, 진열대 설치, 공간배치 방면의 지원역량을 확대하고, 국가 전람회 참가대표단을 조직하여 전람회 참여효과를 제고시킨다. 국제 전람회의 전시효과를 추적연구하고, 국제 전람회 등급평가체계를 완비하며, 국제 전람회의 추천·참고지수 공개제도를 수립한다.

(2) 농업무역의 조기경보 및 구제 업무를 추진한다.

1. 농업의 산업피해모니터링 및 조기경보를 강화한다. 농업의 산업피해 조기경보업무기구 설립, 직책과 역할의 명확화, 전문 인력의 배치 등을 강화하고, 업계 협회-기업 간의 연계와 상호작용메커니즘을 수립한다. 산업피해모니터링 데이터의 수집·분석·보고·공개제도를 더욱 정비하고, 무역이 국내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적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산업 피해등급별 조기경보 제도를 수립하고, 중점 농산물에 대한 지역 및 전국적 산업피해 조기경보 발령을 강화한다. 긴급대응제도를 완비하고, 중국 농업이 위협과 피해를 받을 시 농업영역의 반덤핑, 반보조금, 일반 보장조치, 반드시 요구되는 조정조치를 신속히 실시하여 농업의 산업안전을 보장한다.

2. 중점 농산물의 수출모니터링 및 조기경보를 강화한다. 주요 무역상대국의 변경조치(邊境措施)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요 수출상대국의 무역법률·법규, 정책조치, 시장 동태, 무역 분쟁 등과 관련한 정보를 신속히 수집하여 무역장벽 조사를 실시한다. 기업집단(kombinat)과 업계 협회는 중국 농업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수출무역조기경보지수체계를 구축하고, 중점 농산물의 수출리스크 평가보고의 공개를 강화한다. 조기경보 발령을 강화하고, 기타 국가가 중국 농산물 수출과 관련하여 제기한 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

기 위하여 기업 및 업계 협회의 제소, 응소, 무역분쟁 해결 등을 지원하고 지도한다.

3. 다자·양자 간 무역협상을 강화한다. 무역협상의 참여역량을 강화하고,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와 다자·양자 간 무역협상(새로운 WTO 농업협상, 농산물품질표준 기술장벽 협상, 농업 유전자원 및 신품종 지적재산권 협상, 자유무역지대 협상 등을 포함)에 적극 참여한다. 반드시 필요한 메커니즘과 제도를 수립하여, 지방의 농업부처·주산지역·농업전문조직이 원활한 정보전달 경로를 통하여 무역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농업 관련 협상결과가 중국 농업 발전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보장하여 농업의 건강하고 안전한 발전을 도모한다.

(3) 농업무역 정보와 연구업무를 강화한다.

1. 농업무역 정보의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강화한다. 정보 구매, 다자·양자 간 데이터 교환, 외국 주재원들의 정보 보고, 국내 관련기구와 기업의 모니터링 등 다양한 경로와 방식을 통하여 대표성이 강한 정보·데이터를 수집하고, 국내외 농산물 생산, 가격, 가공, 소비, 기술, 무역, 표준, 기업, 정책 등 다방면에서 전국적·지역적 기초 DB를 점진적으로 구축해나간다.

2. 농업무역의 정보서비스수준을 제고시킨다. 농업무역 분야의 정보분석능력을 강화하고, 상황판단수준을 제고시킨다. 농업무역의 일상 모니터링 분석을 강화하고, 정보 보고와 공개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이슈가 되는 문제들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정보서비스의 실효성과 정확성을 제고시키며, 무역 분쟁, 돌발적 사건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한다. 제품의 수급 상황, 협상 동태, 정책 법규 등 기초정보의 공개 경로와 형식을 규범화하고, 정보공유 메커니즘을 수립하여 정보 공유의 범위를 확대시킨다.

3. **농업무역의 연구수준을 제고시킨다.** 농업의 국제화 과정에서 출현하는 새로운 문제점에 대하여 기초성·계통성·예측성 연구를 강화하고, 국내외 주요 농산물의 핵심 산업부문에 대하여 추적분석을 진행한다. 농업무역정책 연구의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여 정책연구수준을 제고시키고, 중점산업별·중점 국가별 연구를 강화한다. 식량, 면화, 유지작물, 식용 당작물, 가축, 가금 등 중요한 농산물에 대하여 모니터링 연구를 실시한다. 주요 수출국, 수입국, 잠재 무역국에 대하여 농업생산, 무역, 정책에 대한 종합 연구를 진행한다.

V. 보장 조치

(1) 조직영도 및 기획 강화

각급 농업부처는 농업무역 촉진업무를 중시하고, 농업무역 촉진업무를 농업·농촌경제업무의 중요한 의사일정(agenda)에 포함시키며, 농업무역 촉진업무에 대한 조직영도를 강화한다. 현지 실정에 부합하는 농업무역촉진기획 실시방안을 제정하고 무역촉진업무에 주력한다.

(2) 농업무역촉진체계 구축 강화

각급 농업부처는 농업무역촉진기구 설립을 강화하고, 담당부서를 명확히 규정하며, 필요인원을 배치해야한다. 또한 반드시 필요한 조건과 경비를 확실히 책임짐으로써 무역촉진업무의 효과적인 추진을 보장해야한다. 각 지역의 농업부처는 농산물 전문협회를 지원하고, 상인연합회와 협회간의 연합과 협력을 장려해야한다. 다양한 상인연합회와 협회들이 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업계단속을 강화하고, 질서있는 경쟁을 촉진시키며, 기업집단(kombinat)이 반덤핑 등 국제무역쟁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

(3) 농업무역 분야의 정책적 지원 강화

중국의 농업무역은 시작이 늦고 기초시설이 심각하게 부족하며 농업무역 촉진수단이 다양하지 못한 편이다. 이러한 형편을 고려하여 WTO규정, 선진국의 경험과 방법을 적극 참고하고, 농업무역 촉진 전용자금의 규모와 농산물 마케팅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역량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중소기업 대외무역발전기금에서 농산물 수출기업에 사용되는 부분을 확대하고, 산업피해조사와 해외 무역장벽조사에 사용되는 자금을 증가시켜 업계 협회와 기업이 스스로의 제소·응소능력을 제고시키도록 지원한다.

(4) 무역촉진 인재풀 강화

자금 투입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조속히 전국 농업무역촉진체계 인재풀 육성을 강화해야한다. 매년 무역촉진 인재육성에 투입되는 자금을 증가시켜 농산물 무역 발전에 기여한다. 무역구제 인재, 무역연구 인재, 무역정보 인재, 무역협상 인재, 마케팅 인재, 전시 컨벤션산업 전문가, 농산물 전문 국제무역상 등을 중점적으로 육성한다.

〈부록 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행 중국농업 관련 연구보고서 및 자료 목록

- 권오복·정정길. 2004. 「중국의 경제성장과 한국 농업·농촌의 새로운 기회-대중국 농산물 수출확대 방안」 R47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경필. 2010. 「중국 감 산업 동향」 해외농업 시리즈 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병률·홍승지·한석호·김성우. 2004. 「중국 산동성의 채소류 생산, 유통, 수출 현황과 전망」 R48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연중·송성환·박영구·진경무. 2006. 「중국 김치·당근의 생산·유통·수출 현황과 전망」 연구자료 D2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문한필·최세균·정태희. 2011. 「한·중 농산물 경쟁력 및 교역장벽 분석」 R649-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서종혁·박현태·김태곤. 2002. 「중국의 사회·경제구조와 농업정책」 D168-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서종혁·박현태·김태곤. 2002. 「중국의 농산물 수급과 생산구조」 D168-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서종혁·박현태·김태곤. 2002. 「중국 농업의 국제화와 발전과제」 D168-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안중운·구기보. 2004. 「중국의 WTO 가입과 한·중 농업협력」 연구자료 D18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어명근·정정길·김배성·이현주·박근필. 2005. 「중국의 농산물 수급 증장기 전망(1/2차년도)」 R5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어명근·정정길·김배성·이현주·리경호. 2006. 「중국의 농산물 수급 증장기 전망(2/2차년도)」 R53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어명근·김연중·김윤식·전형진·리경호. 2007. 「중국 원예산업의 발전과 대응방안」 R55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어명근·전형진·리경호. 2008. 「한·중 FTA 농업부문의 예상 쟁점과 대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03-0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어명근·전형진·김윤식·리경호. 2008. 「한·중 FTA 협상에 대비한 농산물 양허전략 연구」 C2008-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어명근·이대섭·윤형현. 2009. 「한·중 FTA 협상대비 품목군별 대응방안」 C2009-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어명근·최세균·전형진·정대희. 2010. 「FTA 대상국의 농산물 협상 사례분석: 중국의 FTA 사례분석」 R626-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우약봉(牛若峰) 등 지음·지성태 번역. 2006. 「중국의 “三農” 문제 회고와 전망」 D20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계임·이용선·전형진·주현정. 2008. 「한·중·일 청소년의 식품소비 비교분석」 P10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전창곤·조명기·정정길. 2002. 「중국의 농산물유통체계에 관한 연구」 R43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전형진 외. 2008~2011. 「중국농업동향」 E09-2008-01~E09-2011-04, 제1권 제1호 ~ 제4권 제4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전형진·리경호. 2007. 「중국농업동향」 M8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전형진·어명근·리경호. 2008. 「중국의 주요 농산물 주산지 변동에 관한 연구」 R58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전형진 외. 2009. 「중국 동북3성의 중·단립종 쌀산업 구조변화와 생산계열화 실태 조사 연구」 P12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전형진·어명근·홍현표·장홍석·김보경·김진경. 2010. 「중국 농수산물 수출입 관련 제도 분석 및 우리의 수출확대 방안」 C2010-3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전형진·권태진·남민지. 2010. 「중국의 친환경농식품 시장 현황과 전망」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중국 종합연구 협동연구 총서 10-03-0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전형진. 2011. “중국의 농산물 수출입제도와 우리의 수출확대 방안” 「농업전망2011(I): 농업·농촌과 농식품산업: 새로운 시장과 기회」 E04-20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전형진·김영훈·남민지·권나경. 2011. 「중국 농업의 지역별·품목별 성장특성 및 시사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중국 종합연구 협동연구 총서 10-03-4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전형진·최세균·어명근·한석호·문한필·정대희·남민지·승준호. 2011. 「한·중 FTA 대비

- 양국간 농산물 교역구조 변화 전망」 R64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전형진·어명근·남민지. 2011. 「중국 농업의 구조변화와 한·중 농산물 교역 전망」 R649-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정길·김정호·강정일. 2000. 「중국 농업과 농정의 전개과정」 D14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정길·이현주. 2003. 「중국농업연구 초록」 D18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정길·성명환. 2003. 「중국의 쌀 수급 현황과 전망」 R46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정길·이성귀. 2004. 「중국의 중단립종 쌀 생산 수출 잠재력」 P7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세균·어명근·전형진·정대희·최원목·정인교. 2010. 「FTA 대상국의 농산물 협상 사례분석」 R62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지현·박근필·송성환. 2005. 「중국산 수입 농식품의 안전성 확보 방안」 P8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석호·전형진·승준호. 2011. 「한·중 농업정책시뮬레이션모형 구축 연구」 R649-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황윤재·전형진·한재환. 2010. 「한·중·일 농식품 안전관리 체계 비교와 상호협력 방안」 R62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농업시리즈 9: 중국농업 ㉒

중국의 농산물 무역정책과 수출입제도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2. 6.

발 행 2012. 6.

발행인 이동필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3

전화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쇄처 (주)문원사

전화 02-739-3911~5 E-mail: munwonsa@chol.com

ISBN 978-89-6013-334-1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